

발행인: 서울특별시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511

서울시보

제2504호 2003. 8. 30.(토)

(2003. 8.30 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 자 치 법 규

[규 칙]

제3343호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중개정규칙 6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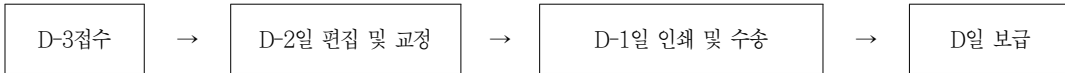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시정정보 → 시정뉴스 → 서울시보 클릭>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511
- 서울시보발간일은 5일, 10일, 15일5일주기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2부)하며, 전자문서나 디스켓 또는 e-mail : sibo2000@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평 일 14:00
 토요일 11: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제3344호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7
 제3345호 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7
 제3346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9
 제3347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11
 제3348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 12
 제3349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13
 제3350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5
 제3351호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중개정규칙 16

[입법예고]

제200373-1021호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35
 제2003-391027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36
 제2003-1043호 서울특별시립직원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37

◎ 고 시

제2003-233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39
 제2003-245호 장안시영2단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40
 제2003-2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작성 41
 제2003-2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작성 51
 제2003-249호 버스전용차로설치 54
 제2003-25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폐지)결정 54
 제2003-251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결정 55

◎ 공 고

제2003-1022,1039호 일반건설업등록반납수리 56
 제2003-1023호 일반건설업등록 56
 제2003-1028호 전기공사업법위반자행정처분을위한청문통지서공시송달 57
 제2003-1029,1030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58
 제2003-1031호 2003년도제9차건축물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결과 58
 제2003-1035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업체행정처분을위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61
 제2003-1036호 일반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수리 64
 제2003-1040호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공시송달 65
 제2003-1041호 전기공사업법위반업체등록취소 65
 제2003-1042호 전력시설물의설계업등록 66

◎ 구 고 시

제2003-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중구) 67

제2003-43호 유어행위의시기·대상·지역등제한(용산구)	69
제2003-44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실시계획변경(용산구)	70
제2003-81호 하천점용허가(성동구)	72
제2003-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광진구)	72
제2003-5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작성(광진구)	74
제2003-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경원제4녹지조성-2차구간)실시계획인가(동대문구)	76
제2003-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실시계획변경인가(중랑구)	80
제2003-117,119,120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구)	82
제2003-12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성북구)	84
제2003-1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구)	85
제2003-74호 미아제2구역주택재개발지형도면작성(강북구)	87
제2003-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강북구)	89
제2003-7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및지형도면작성(강북구)	90
제2003-7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강북구)	91
제2003-61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도봉구)	91
제2003-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도봉구)	92
제2003-65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도봉구)	93
제2003-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및지형도면작성(은평구)	94
제2003-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및지형도면작성(은평구)	94
제2003-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평구)	95
제2003-81호 마포로1구역제22지구도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마포구)	95
제2003-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강서구)	98
제2003-90호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강서구)	101
제2003-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지형도면작성(구로구)	102
제2003-47호 유어행위의시기·대상·지역등제한(영등포구)	102
제2003-94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동작구)	104
제2003-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변경인가)(동작구)	105
제2003-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초구)	105
제2003-9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서초구)	106
제2003-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초구)	107
제2003-73호 도시계획사업(통신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강남구)	107
제2003-7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강남구)	108
제2003-59호 도시계획시설(샛팽이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송파구)	108
제2003-60호 도시계획시설(송파나루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송파구)	112
제2003-8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강동구)	112

◎ 구 공 고

제2003-326호 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수리(종로구)	116
제2003-327호 전문건설업등록(종로구)	116
제2003-330호 전문건설업행정처분내역(종로구)	117
제2003-331호 건설업등록반납수리내역(종로구)	120
제2003-326호 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신고수리(중구)	121
제2003-312호 건설업등록사항(용산구)	121
제2003-313호 전문건설업등록(용산구)	122
제2003-31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광진구)	122
제2003-378,379호 전문건설업등록(동대문구)	124
제2003-37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경원제4녹지조성)실시계획인가(2차)를위한열람(성북구)	125
제2003-373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내역(성북구)	128
제2003-376호 도시정비계획(안)공람(강북구)	129
제2003-339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에따른열람(도봉구)	131
제2003-340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인가에따른열람(도봉구)	131
제2003-493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은평구)	132
제2003-4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은평구)	133
제2003-504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은평구)	141
제2003-346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마포구)	141
제2003-347호 전문건설업등록처리(마포구)	142
제2003-339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수리(양천구)	142
제2003-343,344호 전문건설업등록(양천구)	143
제2003-295호 건설산업기본법등위반업체에대한청문통지서공시송달(강서구)	143
제2003-299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강서구)	144
제2003-303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강서구)	144
제2003-306호 전문건설업반납수리(강서구)	146
제2003-307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강서구)	146
제2003-62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구로구)	146
제2003-210호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수리(금천구)	159
제2003-376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동작구)	159
제2003-356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관악구)	159
제2003-365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관악구)	160
제2003-373호 전문건설업(강남구)	162
제2003-285호 전문건설업등록(송파구)	164

◎ 사업소고시

제2003-123,124호 하천점용허가(한강시민공원사업소)	165
--	-----

◎ 사업소공고

제2003-가-18호 월드컵공원 『역세축제』 행사주관업체모집(공원녹지관리사업소) 166

제2003-33,34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행정처분(동대문소방서) 166

제2003-2호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신규등록(노원소방서) 167

제2003-31호 소방시설설계업신규등록(강남소방서) 167

제2003-51호 소방시설설계업체행정처분(송파소방서) 168

제2003-52호 소방공사감리업체행정처분(송파소방서) 168

제2003-8호 소방시설설계업(영업정지)(강동소방서) 168

◎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수도자재사업소) 169

◎ 기 타

2003년도상반기공무원제안·시민창안심사결과 170

자 치 법 규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343호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중개정규칙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1. 경영기획실장
- 2. 복지·여성정책보좌관
- 3. 환경정책보좌관
- 4. 교통정책보좌관
- 5. 도시관리정책보좌관
- 6. 상수도사업본부장
- 7. 감사관
- 8. 행정국장
- 9. 도시계획국장
- 10. 건설기획국장
- 11. 정책기획관
- 12. 정책회의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 13. 안건을 제출한 국·본부장

제4조제4항중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를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정무부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장 및 정책보좌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실·국·본부장”을 “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책회의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 2. 기획·조직·예산·법무 및 재정분석담당관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시정자문단 구성) 시장은 원활한 정책회의의 운영과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하여 주요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정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기획예산실”을 “경영기획실”로 하고, 제2항중 “정책회의록”을 “정책회의 회의록”으로, “실무조정회의록”을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실무조정회의”를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 및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정자문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4조중 “실무조정회의”를 각각 “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2003. 1. 10)에 따라 정책회의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위원을 추가하고, 정책회의 운영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시정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의 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책회의 구성원(위원)의 변경·조정 (제4조제3항)

- 위원명칭 변경 : 기획예산실장 ⇒ 경영기획실장, 행정관리국장 ⇒ 행정국장
- 위원 추가 : 복지·여성정책보좌관, 환경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도시관리정책보좌관, 건설기획국장, 정책기획관, 정책회의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 위원 삭제 또는 제외 :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시정기획관

나. 의장 직무대행 순위 조정(제5조)

- 의장 유고시 의장직무대행 순위를 “정무부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순으로 조정함.

다. 정책보좌관의 안전제출(제7조제1항)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의 정책보좌관도 정책회의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실무조정회의의 명칭 변경 및 위원 조정 (제10조)

- 실무조정회의 ⇒ 실무조정위원회
- 시정기획관 ⇒ 정책회의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 조직제도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재정분석담당관(추가)

마. 시정자문단 구성(제10조의3)

- 정책회의 운영과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정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규칙 제3344호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인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주관기관이 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가 폐지(2003. 1.10)되었기 그 존치실익이 상실된 동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규칙 제3345호

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인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개발용역”을 “컨설팅·개발용역”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된사업”이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 사업

제5조제1항중 “예산검토요구서”를 “예산 타당성검토요구서”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정보전략계획에는 사업대상 업무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모델 및 관련 소요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표준품셈 등의 회계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안요청서작성)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 3. 사업범위
- 4. 사업수행조직
- 5. 시스템요구사항
-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타당성검토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월 이내에 당해부서에 통보한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사업이 예산타당성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타당성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시 제안요청서의 검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관부서의 장은 규격 또는 제안서 평가에”를 “규격 또는 제안서 평가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를 “정보화기획단 소속 공무원 등 중에서 사업평가에 적절한 자로 구성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서명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단서중 “토목, 건축 등 주된 사업에 부수된 사업”을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총괄부서의 장에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일”을 “5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4일”을 “2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감리보고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로 한다.

제21조의제목 “(시스템운영)”을 “(최종성과물 제출)”로 하고, 동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스템공급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기타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최종검사 완료 후”를 “용역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종 산출물 일체가 수록된 CD 1부”를 “각종 산출물 전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사업주관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 총괄부서의 예산타당성검토를 받도록 하되, 총괄부서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 라 사업발주 금액 중 정보통신설비공사비의 산정기준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표준품셈 등을 추가함.(제10조제1항)
- 마. 제안요청서에 대한 총괄부서의 기술검토 대상사업을 단위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모든 발주사업으로 확대함.(제11조)
- 바. 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검토하기 전에 예산타당성 검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 검토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제12조)
- 사. 정보화사업 시행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화기획단 소속 공무원을 추가함.(제13조제2항)
- 아. 감리 및 검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제18조 등)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우리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정보화정책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미흡한 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정보화사업에 컨설팅을 추가함.(제2조제1호)
- 나. 사업주관부서에서 자체개발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총괄부서인 정보화기획단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제4조제1항)

◎서울특별시규칙 제3346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인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4. “수급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자를 말한다.
- 5. “최저생계비”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규정의 금액을 말한다.

<p>6.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 규정의 금액을 말한다.</p> <p>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최초로 선정된 자”를 “최초로 선정된 자(임대료를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p> <p>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미만인자</p> <p>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p> <p>가.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세대</p> <p>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자</p> <p>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p> <p>라.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주민등록상 3월이상 등재)</p>	<p>마.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p> <p>바.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월이상 등록된 65세이상 독거노인</p> <p>사.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포함)</p> <p>제16조제2항중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한다.</p> <p>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중 “심의를 거쳐”를 “심의를 거쳐 다음 기준에 의하여”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이 경우 현황은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대상자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p> <p>1. 1순위 :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예산액이 부족한 때에는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의한 총점수가 높은 순위부터 결정한다.</p> <p>2. 2순위 :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의한 총점수가 높은 순위부터 결정한다. 별표 2제2호 및 제3호의 배점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세대별 소득인정액 (30점)</p>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이상 ~ 120%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0%이상 ~ 130%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5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0%이상 ~ 140%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0%이상 ~ 150%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점</td> </tr> </table>	100%이상 ~ 120%미만	30점	120%이상 ~ 130%미만	25점	130%이상 ~ 140%미만	20점	140%이상 ~ 150%이하	15점	<p>○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함</p>
100%이상 ~ 120%미만	30점									
120%이상 ~ 130%미만	25점									
130%이상 ~ 140%미만	20점									
140%이상 ~ 150%이하	15점									
<p>○ 월 임대료를 연이율(도시개발공사 적용이율)로 환산한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 ※무상임대거주자는 지급제외</p>										

별지중 신청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자격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모·부자 세대, 재해로 인한 세입자, 철거민 등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대상자에 대한 임대료 지급시기) ①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한 신규대상자에 대하여는 2003년 10월분부터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신규 임대료보조대상자를 2003년 9월 30일까지 결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시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 임대보증금대출 및 임대료보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초로 선정된 자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대출 지원대상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자’를 ‘150%이하인 자’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임대료를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제1항)

나.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저소득시민에게 보조지원하고 있는 주택임대료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150%이하인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함(제15조제2항)

-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월이상 등재)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
-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월이상 등록된 65세이상 독거노인
-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주민등록표상 3월이상 동일세대이거나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서울특별시규칙 제3347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등의정비에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1조(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환경관리실장”을 “환경국장”으로, “폐기물시설과 시설운영담당

사무관”을 “청소과 기금사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환경관리실장”을 “환경국장”으로, 동조제4항중 “폐기물관리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3. 1.10) 및 동조례시행규칙(2003. 1.15)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국 소관 규칙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부서 명칭, 직명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비대상 규칙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나. 직명 및 부서명칭 정비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중 공무원 직명 및 과명 정비(제6조)
 - 환경관리실장 → 환경국장
 - 폐기물시설과 시설운영담당사무관 → 청소과 기금사무 담당사무관
-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공무원 직명 정비(제15조)
 - 환경관리실장 → 환경국장
 - 폐기물관리과장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규칙 제3348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통관리실장”을 “교통정책보좌관”으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을 “교통계획과장”으로 하며, 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과장·운수물류과장·교통운영담당관·도로관리과장·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1부장·지하철건설본부 공무부장·지하철공사 안전관리실장 및 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실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장
4. 교통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제5조중 간사는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 업무담당사무관”에서 “교통계획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장을 “교통관리실장”에서 “교통정책보좌관”으로, 부위원장을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에서 “교통계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의 직명을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함(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과장·운수물류과장·교통운영담당관·도로관리과장·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1부장·지하철건설본부 공무부장·지하철공사 안전관리실장 및 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실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장
- 교통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규칙 제3349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승강장의 너비)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장 너비를 기준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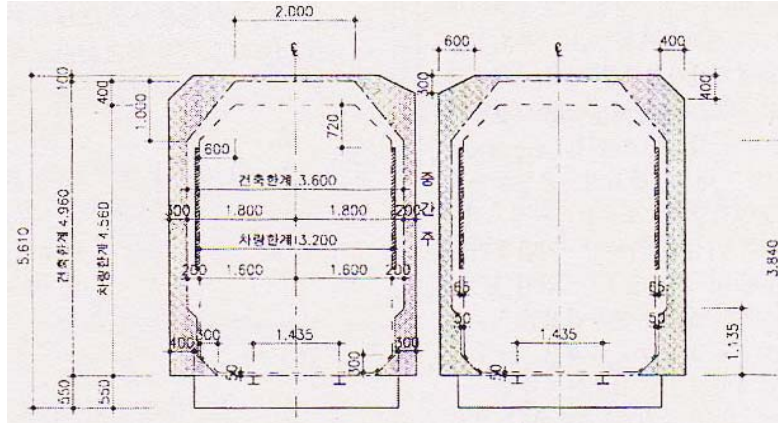
1. 하차와 승차인원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본선과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쌍섬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5장(제19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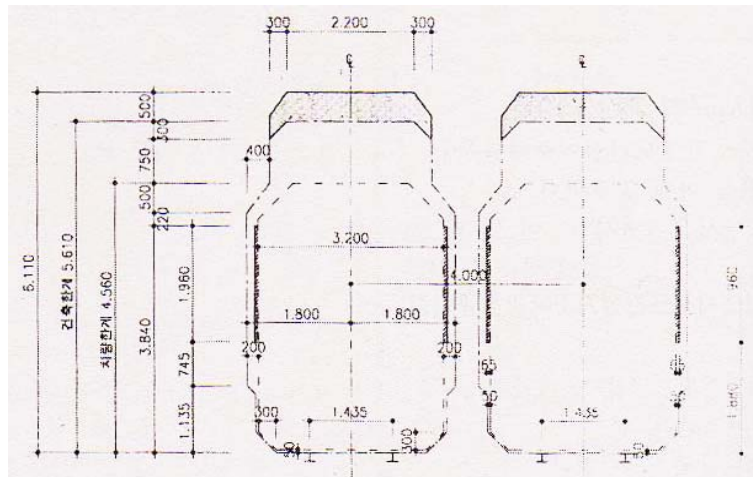
별표 2에 다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 9호선

- 지하부분 건축한계도(직선)





- 지상부분 건축한계도(직선)



- 무정차 정거장의 승강장 연단거리(직선구간) :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역에서는 무정차 통과열차 차량측면과 승강장 연단간의 이격너비를 70밀리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

범례

구분	내용
-----	건축한계(단 전차선 및 현수장치 제외)
- - - - -	차량한계(단 판타그래프를 접은 높이 포함)
	표시 및 표지등에 대한 한계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완행과 급행열차의 운행을 위한 지하철 건설 시 쌍섬식 승강장(본선과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의 너비를 정함에 있어 현행의 기준 적용시 정거장 부지 점유의 과다로 불합리하게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상의 너비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함.(제16조)
- 나. 도시철도건설규칙(건설교통부령)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차량 설계기준을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의 제정(2000.3.18.)에 따라 삭제함. (제19조 내지 제22조)
- 다. 지하철 9호선의 건축한계도를 추가함. (별표 2)

소 “4”를 “5”로 하고, 기능 8급 사무원 필기란중 총계 “28”을 “29”로, 사업소 “11”을 “12”로 하며, 기능 8급 조무원 조무란중 총계 “214”를 “213”으로, 사업소 “212”를 “211”로 하고, 기능 9급 소계란중 총계 “1,553”을 “1,552”로, 본청 “238”을 “239”로, 직속기관 “89”를 “90”으로, 사업소 “1,203”을 “1,200”으로 하며, 기능 9급 토목원란중 총계 “12”를 “11”로, 사업소 “12”를 “11”로 하고, 기능 9급 전기원란중 총계 “150”을 “146”으로, 사업소 “139”를 “135”로 하며, 기능 9급 기계원 기계란중 총계 “265”를 “263”으로, 사업소 “249”를 “247”로 하고, 기능 9급 운전원란중 총계 “114”를 “115”로, 본청 “29”를 “30”으로 하며, 기능 9급 농림원(원예)란중 총계 “24”를 “25”로, 사업소 “22”를 “23”으로 하고, 기능 9급 위생원 사역란중 총계 “98”을 “99”로, 직속기관 “25”를 “26”으로 하며, 기능 9급 사무원 필기란중 총계 “57”을 “56”으로, 사업소 “18”을 “17”로 하고, 기능 9급 조무원 조무란중 총계 “306”을 “312”로, 사업소 “299”를 “305”로 하며, 기능 9급 전산원란중 총계 “51”을 “49”로, 사업소 “33”을 “31”로 하고, 기능 10급 소계란중 본청 “116”을 “114”로, 직속기관 “79”를 “78”로, 사업소 “723”을 “726”으로 하며, 기능 10급 전기원란중 총계 “134”를 “133”으로, 사업소 “119”를 “118”로 하고, 기능 10급 운전원란중 총계 “87”을 “85”로, 본청 “9”를 “7”로 하며, 기능 10급 농림원(원예)란중 총계 “16”을 “15”로, 사업소 “14”를 “13”으로 하고, 기능 10급 위생원 사역란중 총계 “80”을 “79”로, 직속기관 “27”을 “26”으로 하며, 기능 10급 조무원 조무란중 총계 “125”를 “130”으로, 사업소 “114”를 “119”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규칙 제3350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능 7급 소계란중 본청 “22”를 “23”으로, 사업소 “176”을 “175”로 하고, 기능 7급 전기장란중 총계 “51”을 “50”으로, 사업소 “44”를 “43”으로 하며, 기능 7급 운전원란중 총계 “5”를 “6”으로, 본청 “1”을 “2”로 하고, 기능 8급 소계란중 총계 “1,000”을 “1,001”로, 사업소 “816”을 “817”로 하며, 기능 8급 건축원란중 총계 “6”을 “7”로, 사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중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2003년 8월 31일까지 해소하기 위하여 총정원 범위 안에서 기능직 정원 17명의 직렬·직급을 상계 조정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규칙 제3351호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7조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2.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 3.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 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별표1의 배

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 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 6. “특수차량”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 2 장 차량정수의 관리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안에서 시장이 배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 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요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사업소의 정수기준 범위내에서 배정할 수 있음.
-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시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차량정

수를 배정받으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

④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차종·차형변경) ①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 1. 운행기간이 별표 1의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
- 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

리사용이 불가능한 차량(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의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차량(승용차·중형 이하 승합·화물차 및 구급차에 한한다)

4.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차량

5. 그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 3. 그밖에 시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차량의 등록 및 기록관리

제11조(차량의 등록) ①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관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함
- 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함
- 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함
- 4.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함
-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시장은 각 기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당해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15조(차량관리 부서) ①관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청 - 청사관리반
 - 2. 시의회 - 의정담당관
 - 3. 소방방재본부 - 방호과
 - 4.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총무담당부서
- ②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당해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차량의 사용) ①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입고) ①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을 당해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운전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④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관용차량에 한하여 당해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유류지급) ①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메타 및 유류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유류정산) ①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km/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제 5 장 운전원 의무 및 책임

제21조(차량의 점검) ①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의 음주
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 6 장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제27조(차량의 운행)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차량반납 등) ①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그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 또는 교체승인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차종별 차형 · 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기관	내구연한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회의의장 • 서울특별시부시장 • 시립대학교 총장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5년간
	중형승용차 (배기량 1,500cc이상 2,0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대학교 부총장 	
승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본청 	
	중형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본청 • 서울특별시 의회 • 서울특별시시장의 공관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본청 • 3급이상의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강사초빙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 • 도시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기관의 고속도로 순찰차량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다만, 고속도로 순찰차량은 5년간
	소형승용차 (배기량 800cc이상 1,5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시의회 	
	경형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다목적 및 기타형)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기 관	내 구 연 한		
승 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의 차량)	• 서울특별시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시의회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				
	경형승합차 (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				
화 물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	• 서울특별시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시의회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차량)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				
	경형화물차 (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				
특 수	이동수리차, 트럭트레타, 청소차, 분뇨차, 구급차, 진료차, 택카차, 트레일러,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 서울특별시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시의회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화재진압소방차 (소방펌프·물탱크소방펌프·무인방수소방펌프·화학소방펌프·소방제독·지휘소방 및 화재조사소방자동차)			• 소방방재본부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인명구조소방차 (사다리·굴절탑소방펌프자동차 및 구조·구급소방자동차)				
	예방·점검소방차 (재난발생 예방·점검·홍보차량)				
	현장지원보조소방차 (화재진압·인명구조소방차를 지원 보조하는 차량)			• 소방방재본부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다만, 대형승합은 8년간
	기타소방차				

※ 자동차등록증의 차형과 상이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의 차형을 따른다.

[별표2]

기관별 차량정수기준(제5조관련)

1. 승용차량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정수	차 형 별		
		대 형	중 형	소형 및 다목적
서울특별시의 본청	49대	6대(의전용 2대, 시장전용 1대, 부시장전용 3대)	22대(의전용 4대, 업무용 18대)	21대
1급 기관장 사업소	6대		2대	4대
2급·3급 기 관 장 사 업 소	정원 200명 이상	4대		2대
	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3대		2대
	정원 100명 미만	2대		1대
4급기관장 사 업 소	정원 100명 이상	2대		2대
	정원 100명 미만	1대		1대
5급 기관장 사업소	1대			1대
교육훈련 기관 및 기 타	시립대학교	4대	1대(총장전용)	2대(부총장전용 1대, 업무용 1대)
	공무원교육원	4대		2대
	의료기관	1대		1대
시 의 회	3대	1대(의장전용)	2대(의전용 1대, 업무용 1대)	

2. 승합차량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 등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근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 육 훈 련 용	지방공무원교육원·수련원·농민교육원·소방학교·자연학습원 등 : 교육인원·교육횟수·운행거리 등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 타 사 업 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차량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산림·녹지 및 식량증산 사업용	산림·녹지·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	기타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4. 특수차량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소방 지휘용 및 순찰용	소방본부·소방서의 본청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중형이하 승용·다목적 승용 또는 승합용 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용	기타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13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종별	차 형 별	분류번호
승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승용차 · 중형 승용차 · 소형 승용차 · 경형 승용차 · 다목적 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승합차 · 중형 승합차 · 소형 승합차 · 경형 승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화물차 · 중형 화물차 · 소형 화물차 · 경형 화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용도 사용 및 제작된 차량 · 화재진압소방차 · 인명구조소방차 · 예방·점검소방차 · 현장지원보조소방차 · 기타소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1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상수도본부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하는 경우

상수도본부 - 다1 - 3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①

제 목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서
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서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계	승 용				승 합				화 물				기타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차 종	차 형	차 명	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	요 청 정 수	확보된 차량구입비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비고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대, 중, 소 경형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과 차형(대, 중, 소, 경)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차량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현 차 량							교체할 차량			확보된 차량구입비
차종및 차 형	차 명	등록번호	최초등록 일 자	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	내구 연한	사용기간 (주행거리)	차종및 차 형	차 명	교체예정년월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운행거리
 - 차량의 지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정수 배정 승인
 임시차량정수 배정 승인
 차종 변경승인 확인서 송부
 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등록할 차량		등록말소할 차량	
구 분	차량의표시	구 분	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		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		⑨차 형	
③차 종		⑩차 종	
④차 명		⑪차 명	
⑤연 식		⑫연 식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		⑬등록 번호	
⑦비 고		⑭비 고	

※처리요령

-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①

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1.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기 관 번호	⑥ 등 록 번호	⑦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일자	⑧ 비 고

비고 :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별지 제4호서식] (제16조 관련)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신청자	직 성명		근무부서	
배차요구	업무용, 직접운전		답 승 자	직명 성명 외 명
사용목적			운행구간	~
직접운전자 기재사항	면허증No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2종보통, 1종보통, 대형		연락처(H.P)
배차승인	차 명		차량번호	
	승인관 직위 성명			

운행결과보고

출발운행구간 (시청→목적지)	~ ~	운행시간	: ~ :
주행거리	km	메타지침	~
전문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원	서명	도착운행구간 (목적지→시청)	~ ~ ~
차량상태확인 (운행전, 중, 후)			
	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관련)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결 재		년월일	사 용 부 서				차 량 번 호	전 일 잔 량 (ℓ)	급유량 (ℓ)	잔 량 (ℓ)	수령인 서 명
계	물 품 출납원		사 용 실·과	용 무	행선지	운 행 시 간					

[별지 제6호서식-앞면] (제12조 관련)

차 량 운 행 일 지

담 당	담당사무관	과 장	결 재

년 월 일

차량번호	서울 호	운 행 상 황	운 행 계	km	유 류 수 불 현 황	유 종	
			전일누계	km		전일잔량	ℓ
운 전 원 (인)	금일누계		km	급 유 량		ℓ	
				소 비 량		ℓ	
						잔 량	ℓ

승 차 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행(km)	운행확인
			출발	도착		

[별지 제6호서식-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기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유무는?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 × 교환		

[별지 제7호서식] (제12조 관련)

차 량 관 리 대 장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종) : 서울

() 배기량 : cc

용 도 (사용부서)	차대번호	사용연료	최초등록일	취득구분	취득가격(원)

정비기간		정 비 내 역	정비업체	정비금액 (단위:천원)	비고
입고	출고				

[별지 제8호서식] (제12조 관련)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

정수 번호	승인 구분	문서번호	차종	차 명	등록번호	차대번호 (연료)	년식	취득구 분	용 도	취득가격 (원)
		승 인 일	차형	규 격	등 록 일				사 용 부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규칙의 폐지(2003. 7.14)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을 정함.(제4조 및 별표 1)
- 나. 기관별 차량정수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범위안에서 차량정수를 배정토록 하되, 사무소가 분산 배치되었거나 차량이 필요한 한시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및 별표 2)
 - 대상기관별 대형 및 중형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상한선을 삭제함
 - 본청의 보유차량 총 대수 49대는 변동 없이 차형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함 (대형 5대→6대, 중형 20대→22대, 소형 24대→21대)
- 다. 시장은 보유차량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차량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 라. 차량의 정수는 기관장의 배정요청에 의해 시장이 배정하며 차종·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6조)
- 마.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통·폐합되거나 배정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이 직접 차량정수를 감축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바. 시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별 차량관리·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사.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차량의 사용·입고 등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5조 내지 제17조)
- 아. 다음의 차량에 한하여 출·퇴근용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전용차량
 -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중인 통제관에게 배치된 차량
 -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치된 차량
- 자. 운전원의 복무와 책임에 관하여 정함 (제21조 내지 제25조)
 - 운전중 처분된 과태료·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함
 - 차량관리 의무 및 운전중 금지사항 등을 정함
- 차. 운전원이 아닌 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직접차량을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복무와 책임은 운전원의 복무와 책임 규정에 의하도록 함 (제26조 내지 제28조)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21호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

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에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을 추가함
- 나. 환경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책무에 친환경 제품의 생산·구매확대, 서울의제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다.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의 책무에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지방의제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라. 서울특별시(지방공사 및 자치구를 포함한다)는 각종 물품을 구매·임차하거나 용역·공사등을 발주하는 경우 친환경 제품이 선택·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마.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민을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교육 및 시민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 9.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청(참조 : 환경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우편번호 : 100-744, ☎6321-4097, FAX : 3707-9529, E-mail : jjungh@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27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시립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조례 3개를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통합·제정함에 따라 동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관련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통합·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환자의 진료 및 진료비 납부 등에 관하여 정함.
 - 시립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이 정하는 진료권을 교부받아야 함.
 - 각 진료과의 의사는 해당 입원환자 전원에 대하여 매일 1회이상 회진하되, 회진시에는 소속 수련의와 간호사를 대동하여야 함.
 - 전염성환자가 입원한 때에는 환자의 피복, 침구, 식기 등 비품을 일반환자의 것과 엄격히 분리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 진료비 등의 납입의무자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받거나 납입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p>때에는 6월이내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의 납입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실은 원무과장이 관리하되, 진료시간외에는 당직의사와 당직간호사 중 선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의 미납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 야간 진료센터는 응급실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타 병원의 당직 근무 및 환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는 병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p>나. 환자의 입원절차, 입원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원허가신청서와 입원환자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환자면회는 원칙적으로 1일 2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환자상태에 따라 더 제한 할 수 있음. ○ 보호자는 규정된 면회시간 이외에는 병실에 입실 또는 체류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중환자로서 주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실에 체류할 수 있음. ○ 환자, 간병인 또는 면회인이 병원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함. <p>다. 효율적인 병원운영과 환자진료를 위하여 병원운영, 환자의 진료 및 감염대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p>	<p>하기 위한 진료위원회를 각 병원에 두되, 진료위원회 위원은 각 과장 및 병원장이 지명한 자로 함.</p> <p>라.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립병원병동관리규칙을 폐지함.</p> <p>3. 의견제출</p> <p>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9. 2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보건과장, 전화 3707-9131, FAX 3707-91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이유 및 그 사유)</p> <p>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p> <p>◎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43호</p> <p>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p> <p>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p> <p>1. 개정이유</p> <p>교육훈련생의 훈련비 지원기준을 정부 위탁훈련실시규정과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을 병행 적용하여 왔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일원화 하고, 2002년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표준훈련비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2. 주요내용</p>
--	--

가. 교육훈련생의 표준훈련비 지원기준을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의 표준훈련비기준인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과,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을 병행적용하여 왔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함.

나. 외국인·재외동포 훈련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담당직원중 분임경리관을 총무과장으로 규정하였으나 표준훈련비제도의 도입으로 수탁자가 인력 및 직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분임경리관을 학교별 직명에 맞게 학교장이 지정하도록 함.

라. 시립직업전문학교에 표준훈련비제도를 도입하면서 수탁자가 당해 학교의 교직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직업전문학교별 교직원 정원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은 2003. 9.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고용안정과장, 전화 3707-9373~4, FAX : 3707-9389, E-mail : jwcha53@mai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대표자명) 및 연락처 등.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33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36(2000. 2.25) 호, 같은 고시 제2001-146(2001.5. 7) 호, 같은 고시 제2001-294(2001. 9.10) 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변경) 수립된 서울특별시 화곡아파트지구 제2주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362(2003. 3.19)호로 공람·공고를 거쳐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지구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서울특별시 화곡아파트지구 제2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
 - 나. 위치 : 강서구 화곡동 일대
 - 다. 면적 : 121,911.7㎡
2. 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기정)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21,911.70	100.0	121,911.70	100.0		
사 유 지	소 계	107,659.60	88.31	107,659.60	88.31	
	주택용지	103,839.10	85.18	102,957.80	84.45	(감)881.30㎡
	주구중심(1)	2,776.10	2.27	3,048.80	2.50	(증)272.70㎡
	주구중심(2)	1,044.40	0.86	1,653.00	1.36	(증)608.60㎡
공 공 용 지	소 계	14,252.10	11.69	14,252.10	11.69	변경없음
	도 로	9,375.60	7.69	9,375.60	7.69	
	공 원	4,876.50	4.00	4,876.50	4.00	
	학 교					
	기 타					

3. 변경사유 : 화곡아파트지구 제2주구의 주택용지 881.3㎡를 축소하고, 강서구 소유 구유지 1,091.3㎡와 2-2주구 중심 시설면적 1,653㎡를 상계 처리하고, 차이면적 561.7㎡를 화곡아파트지구 제2주구주택정비조합에서 무상으로 기부 채납 후 구립 도서관 및 유아원 용지를 확보하고자 함.

4. 개발계획(변경)도서의 비치 및 열람 방법

가. 개발기본계획(변경)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나. 열람장소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3707-8293~4)

(2)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 2260-6827)

(3) 화곡 제5동 사무소(☎ 2607-2870~3)

다. 열람방법 : 비치장소에서 열람.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45호

장안시영2단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29-2번지 장안시영2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장안시영2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장안동 329-2	-	증) 38,026	38,026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동대문구 장안동 329-2	38,026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하고자 함

다. 결정도서(지형도면등)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3707-8297) 및 동대문구 도시정비과(☎ 2127-4946)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작성

1.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3-37호(2003. 6. 5)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879(2003. 7.25)호로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공고한 "삼일로 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계획(안)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삼일로도로구조개선공사
- 2) 사업시행구간 :
 - 가) 이면도로확장 : 충무로2가51-3 ~ 충무로2가53-1
 - 나) 퇴계로2가구간 확장 : 충무로2가53-8 ~ 충무로2가52-15
- 3) 사업의 규모
 - 가) 이면도로확장 : B=10m→12m, L=110m
 - 나) 퇴계로2가구간 도로확장 : B=35m→37m, L=105m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중구 예전둘레길 12번지)
 -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
- 5) 사업의 기간 : 고시일 ~ 2004. 7.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영업권조서 : 별첨
-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 8)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 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건설1부(☎ 3708-2422)와 중구청 건설관리과(☎ 2260-401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의명칭 : 삼일로 도로구조개선사업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중구 충무로 2가 53-23	대	92.7	13.0	대지	종로구 구기동 138-1 동성빌라 2동202호	정행자	중구 남대문로1가 14 (응암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 당권	
2	중구 충무로 2가 53-31	대	192.9	15.0	대지	동대문구 신설동 산8-1	유증남	중구 남대문로1가 14 (응암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 당권	
						성북구 돈암동 485-29	이용하				
						중구 충무로 2가 53-1	강미운				
						중구 필동 3가 28-19	이정자				
						강남구 압구정동 산5-10 한양(A)61동706호	정행자				
						중구 명동 2가 51-8	나경옥				
중구 충무로 2가 53-1	우복희										
3	중구 충무로 2가 53-32	대	180.1	12.9	대지	중구 충무로 2가 53-1	강미운	중구 남대문로1가 14 (응암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중구 충무로 2가 53-1	우복희				
4	중구 충무로 2가 53-29	대	84.2	5.4	대지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A)2-106	호종일	미합중국 콜로라도주 80112 잉글우드 드라이그리로드수트에 이 871901	호봉일	가처분	
5	중구 충무로 2가 53-18	대	63.8	3.7	대지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A)2-106	호종일	미합중국 콜로라도주 80112 잉글우드 드라이그리로드수트에 이 871901	호봉일	가처분	
6	중구 충무로 2가 53-27	대	25.7	1.2	대지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A)2-106	호종일	미합중국 콜로라도주 80112 잉글우드 드라이그리로드수트에 이 871901	호봉일	가처분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7	중구 충무로 2가 53-30	대	65.4	4.9	대지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A)2-106	호종일	미합중국 콜로라도주 80112 잉글우드 드라이그리로드수트에이 871901	호봉일	가처분	
8	중구 충무로 2가 53-24	대	148.8	12.0	대지	중구 충무로 2가 53-16	호성홍업 주식회사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9	중구 충무로 2가 51-26	대	152.7	10.9	대지	송파구 잠실동86 아시아선수촌(A)2-1101	도동환				
	0.7			대지	송파구 잠실동86 아시아선수촌(A)2-1101	도동환					
10	중구 충무로 2가 51-23	대	204.0	10.3	대지	중구 충무로 4가 120-3 진양(A)1154	서춘자				
						강남구 압구정동 369-1현대(A)10-1301	송한철				
11	중구 충무로 2가 51-25	대	199.6	7.7	대지	중구 충무로 2가 51-13	이상빈	중구 태평로2가 120 (광화문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	
								영등포구 영등포동94-267(강남지사)	근로복지 공단	압류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세무과)	서울특별 시	압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59-21	이신주	근저당권	
								서초구 반포동75-4 청광아트빌라 가-402	신현균	근저당권	
12	중구 충무로 2가 51-27	대	32.4	3.9	대지	강남구 신사동 626-80	신두호	중구 회현동1가 203 (중부지점)	주식회사 한빛은행	근저당권	
								중구 회현동1가 203 (가계여성센터)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13	중구 충무로 2가 51-28	대	29.8	3.4	대지	성동구 자양동 227-234	나채승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14	중구 충무로 2가 51-24	대	594.8	26.9	대지	종로구 평창동 495-8	문영근				
15	중구 충무로 2가 52-23	대	438.3	93.2	대지	중구 충무로 2가 52-15	주식회사신민상 호저축은행				
16	중구 충무로 2가 52-20	대	113.4	17.0	대지	종로구 청진동 87	김춘수				
17	중구 충무로 2가 52-21	대	51.9	8.4	대지	대전시 서구 전민동 501	광산김씨허주공 파종중				
18	중구 충무로 2가 52-19	대	90.0	14.0	대지	대전시 서구 전민동 501	광산김씨허주공 파종중				
19	중구 충무로 2가 52-22	대	148.8	9.1	대지	종로구 구기동 230-27	장회운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20	중구 충무로 2가 53-25	대	430.8	42.7	대지	종로구 관훈동 118-2	이남권	중구 태평로2가 120 (인천기업금융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	
						마포구 서교동 407-14	염기봉	중구 남대문로 2가 9-1(안산중앙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중구 충무로 2가 53-16	호성홍업(주)				
						은평구 응암동 596-23	이인자				
21	중구 충무로 2가 53-26	대	265.8	39.5	대지	강남구 청담동 54-5	최광숙	중구 남대문로2가9-1 (안산중앙지점)	주식회사국 민은행	근저당권	
						마포구 서교동 407-14	염기봉				
							국 (재무부)				
						관악구 신림동 95-75	조성희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의명칭 : 삼일로 도로구조개선사업

일련 번호	물 건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1	중구 충무로2가 53-1	근린 생활시설	연와조기와 지붕, 세멘벽돌조	13.5	종로구 구기동138-1 동성빌라 2-202	정행자	중구 남대문로 1가14	조흥은행	근저당권	지상 1층	
				13.5						지상 2층	
				13.5						지상 3층	
				13.5						지상 4층	
				13.5						지상 5층	
2	중구 충무로2가 53-20	근린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슬 래브지붕	13.9	노원구 중계동 363 대림벽산(A)105-401	이정자				지상 1층	
				13.9						지상 2층	
				13.9		종로구 명륜동 2가 86-10				나경욱	지상 3층
				13.9							지상 4층
3	중구 충무로2가 53-21	근린생활 시설	벽돌조, 슬래브지붕	12.1	중구 충무로 2가 53-1	우복희				지상1	
				12.1						지상2	
4	중구 충무로2가 51-15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슬래브	0.8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선(A) 2-1101	도동환					지하1
				0.8							지상1
				0.8							지상2
				0.8							지상3
				0.8							지상4
0.8	지상5										

일련 번호	물 건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5	중구 충무로2가 51-13	근린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스 라브,연외조	8.7	중구 충무로 2가 51-13	이상빈	중구 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근저당권	지하1			
				8.7						지상1			
				8.7						지상2			
				8.7						지상3			
				8.7						지상4			
6	중구 충무로2가 51-22	점포, 미장원	벽돌조, 기와지붕	4.6	강남구 신사동 626-80	신두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빛은행	근저당권	지상1			
				4.6						중구 회현동1가 203	우리은행 (가계여신 센터)	근저당권	지상2
				4.6									지상3
7	중구 충무로2가 51-21	근린생활 시설	목조, 기와지붕	4.7	성동구 자양동 227-234	나채승				지상1			
				4.7						지상2			
				4.7						지상3			
8	중구 충무로2가51-3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7	종로구 평장동 495-8	문영근				지하1			
				4.7			지하2						
				4.7			지상1						
				4.7			지상2						
				4.7			지상3						
				4.7			지상4						
				4.7			지상5						
				4.7			지상6						
				4.7			지상7						

일련 번호	물 건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9	중구 충무로2가 52-15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3.3	중구 충무로 2가 52-15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				지하1
				73.3						지상1
				87.9						지상2
				87.9						지상3
				87.9						지상4
				87.9						지상5
				87.9						지상6
				87.9						지상7
10	중구 충무로2가 52-9	근린 생활시설	세멘브릭조, 스래트즙	15.1	중로구 청진동 87	김춘수				지상1
11	중구 충무로2가 52-6, 10	점포, 도서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2.1	대전시 서구 전민동 501	광산김씨허주공파 종중				지하1
				22.1						지상1
				22.1						지상2
				22.1						지상3
				22.1						지상4
				22.1						지상5
12	중구 충무로2가 53-7	점포	벽돌조, 슬래브지붕	20.5	은평구 응암동 596-23	이인자				지상1
13	중구 충무로2가 53-8	근린 생활시설	세멘벽돌조, 스래트	14.4	강남구 청담동 54-5	최광숙				지상1
14	중구 충무로2가 53-8	"	부록조, 스래트지붕	13.1	관악구신림동95-75 서호빌라 401호	조성희				지상1
15	중구 충무로2가 53-8	"	벽돌조,브룩조, 슬래브지붕	9.3	관악구신림동95-75 서호빌라 401호	조성희				지상1
				9.3						지상2
				9.3						지상3

영 업 권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의명칭 : 삼일로 도로구조개선사업

일련 번호	영 업 지 (지번)	업 종	상 호	영 업 주		비 고
				주 소	성 명	
1	중구 충무로2가 53-1호	제조(양복)	첼탈양복점	중구 충무로2가 53-1호	조병선	지상1
2	중구 충무로2가 53-1호	제판	동성그래픽	중구 충무로2가 53-1호	이상현	지상2
3	중구 충무로2가 53-1호	인쇄	고려엡스스텝	중구 충무로2가 53-1호	양용채	지상3
4	중구 충무로2가 53-1호	인쇄	에드센스	중구 충무로2가 53-1호	김희순	지상4
5	중구 충무로2가 53-1호	광고물 상업사진제작	월드와이드	중구 충무로2가 53-1호	이현영	지상5
6	중구 충무로2가 53-1호	제조,인쇄	아미	중구 충무로2가 53-1호	전강만	지상5
7	중구 충무로2가 53-20호	한식	본가집(설농탕)	중구 충무로 2가 53-20	유 남	지상1
8	중구 충무로2가 53-20호	제판,복사,인화, 슬라이드필름현상,대여	(주)크레온	중구 충무로 2가 59-22 영한빌딩 별관1층	장영준	지상2
9	중구 충무로2가 53-20	사진, 인쇄	샤프 스튜디오	성북구 돈암동 552-25 동소문 현대(A)101-404	이천호	지상3
10	중구 충무로2가 53-20	임대업	명동사무실	서초구 서초동 1333 신동아APT 1동 803호	원영준	4층사무실 5개 전대
11	중구 충무로2가 53-21	인쇄	(주)동진프린텍	중구 충무로 2가 53-21	현경남	지상1,2
12	중구 충무로2가 53-16	구두수선		동작구 상도2동 59-250	민창선	지상
13	중구 충무로2가 53-2	서비스(주차장)	호성홍업(주)	중구 충무로 2가 50-6	김인재	지상
14	중구 충무로2가 51-15	유흥주점	로얄	중구 충무로 4가 진양(A) 1동952호	장지이	지하1
15	중구 충무로2가 51-15	호프	바투	종로구 낙원동 284-6	강 선	지상1

일련 번호	영 업 지 (지번)	업 종	상 호	영 업 주		비 고
				주 소	성 명	
16	중구 충무로2가 51-15	영화제작	(주)대동홍업	중구 충무로 2가 51-5	도동환	지상5
17	중구 충무로2가 51-15	영상물 제조	(주)비전기획	경기도 안산시 사동1344 우길(A) 503-1306호	김갑의	지상3
18	중구 충무로2가 51-15	경인쇄옵셋인쇄	신한에드컴	노원구 상계동 666번지 주공(A) 1007-503	김주용	지상4
19	중구 충무로2가 51-15	영화제작	(주)대동홍업	중구 충무로 2가 51-15	도동환	지상5
20	중구 충무로2가 51-13호	대중음식점	성 전	중구 충무로 2가 51-13호	이상빈	지상1,2, 3
21	중구 충무로2가 51-13호	대중음식점 (사무실)	성 전	중구 충무로 2가 51-13호	이상빈	지상4
22	중구 충무로2가 51-13호	대중음식점 (창고)	성 전	중구 충무로 2가 51-13호	이상빈	지하1
23	중구 충무로2가 51-22호	양복점	신두호양복점	중구 충무로 2가 51-22호	신두호	지상1
24	중구 충무로2가 51-22호	양복점(재단실)	신두호양복점	중구 충무로 2가 51-22호	신두호	지상2
25	중구 충무로2가 51-22호	양복점(공장)	신두호양복점	중구 충무로 2가 51-22호	신두호	지상3
26	중구 충무로2가 51-21호	사진 및 시청각 기자재	(주)대진월드 충무로지점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406호	김완묵	지상1
27	중구 충무로2가 51-21호	광고물제조,간판 컴퓨터 그래픽	감애드	강서구 화곡동 370-20	김진석	지상2
28	중구 충무로2가 51-21호	서비스	덕구안마	중구 오장동 139-1 지하1층	장인복	지상3
29	중구 충무로2가 51-21호	신사복제조	에딘버러	은평구 역촌동 9-28번지	공광택	지상4
30	중구 충무로2가 51-3	사진재료외	한국후지필름(주)	중구 충무로 2가 51-3	김영재	지상1
31	중구 충무로2가 51-3	개발자문의	쌍용신금정보(주)	중구 충무로 2가 51-3	윤인중	지상2
32	중구 충무로2가 51-3	시디서적기록매체	이미지시디컴	중구 충무로 2가 51-3	강중수	지상3

일련 번호	영 업 지 (지번)	업 종	상 호	영 업 주		비 고
				주 소	성 명	
33	중구 충무로2가 51-3	직물류 무역	세라트레이딩	중구 충무로 2가 51-3	이연재	지상4
34	중구 충무로2가 51-3	컴퓨터주변기기외	에스퍼테크 놀로지(주)	중구 충무로 2가 51-3	이희태	지상5
35	중구 충무로2가 51-3	영화배급외	하니영화사	중구 충무로 2가 51-3	조만현	지상6
36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쇄,컴퓨터외	(주)휴먼그래픽스	중구 충무로 2가 51-3	김태복	지상7
37	중구 충무로2가 51-3	기타,인쇄상업사진	반도상업사진연구소	중구 충무로 2가 51-3	이규화	지하1
38	중구 충무로2가 52-15	금융업	신민상호 저축은행	중구 충무로 2가 52-15	라태관	지상1,2,3
39	중구 충무로2가 52-15	도매,서비스,제조	(주)엠엘오프레이딩	중구 충무로 2가 52-15	오승환	지상4
40	중구 충무로2가 52-15	서비스,제조	(주)그라피카	중구 충무로 2가 52-15	신혜일	지상5
41	중구 충무로2가 52-15	제조 (읍쇄인쇄,스크린)	티에프터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A) 2동 1205	임부섭	지상6
42	중구 충무로2가 52-15	제조,서비스	홍지기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767 무원마을 507-304호	홍순자	지상6
43	중구 충무로2가 52-15	광고대행	솔빛광고기획	중구 충무로 2가 52-15	박춘배	지상7
44	중구 충무로2가 52-15	인쇄,광고기획	디자인예술	노원구 상계동 765	안상수	지상7
45	중구 충무로2가 52-9	인쇄	한양정밀인쇄	중구 충무로 2가 52-9호	채희중	지상1,2
46	중구 충무로2가 52-9	일반음식점	대가추어탕	중구 충무로 2가 52-9호	송백화	지상1,2
47	중구 충무로2가 52-10	표구및표구제품표구점	그린아트	중구 충무로 2가 52-10호	유재연	지상1
48	중구 충무로2가 52-10	서적판매	포토박스	중구 충무로 2가 52-10호	김주혁	지상1
49	중구 충무로2가 52-10	상업사진	태스튜디오	서대문구 홍재동 460-2 인왕산파크빌 210호	권봉용	지상2
50	중구 충무로2가 52-10	인쇄	글씨를 만드는 사람	동대문구 휘경동 293-36 부남빌라 지하1호	최현풍	지상3
51	중구 충무로2가 52-10	기념사업회	사계신독재 기념사업회	중구 충무로2가 52-10호	최근덕	지상4
52	중구 충무로2가 52-10	기타위생및유사서비스	우진용역공사	중구 충무로2가 52-10호	조금환	지상5
53	중구 충무로2가 52-10	인쇄	우양상사	중구 충무로2가 52-10호	황인찬	지상5
54	중구 충무로2가 52-10	사진갤러리	그린아트	중구 충무로2가 52-10호	유재연	지하1

일련 번호	영 업 지 (지번)	업 종	상 호	영 업 주		비 고
				주 소	성 명	
55	중구 충무로2가 53-7	주차장	삼영사	종로구 효자동 164-6호	허명자	지상 주차장
56	중구 충무로2가 53-7	목재,합판제작	삼신목재상사	중구 충무로 2가 53-7	박대선	지상1
57	중구 충무로2가 53-7	액자제작	현ART	중구 충무로 2가 53-7	길근우	지상1
58	중구 충무로2가 53-8	피자체인점	도미노피자 명동점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A) 103-1003	오재경	지상1
59	중구 충무로2가 53-8	자동차판매	노아자동차판매(주)	서대문구 연희3동 1-34(3층)	황인석	지상1
60	중구 충무로2가 53-8	보험대리	남산카보험대리점	서대문구 연희3동 1-34(3층)	황지연	지상1
61	중구 충무로2가 53-8	액화석유가스	유공가스	서대문구 홍은2동 풍림 아이원(A) 106동702호	조충환	지상1
62	중구 충무로2가 53-20	임대업	명동빌딩	금천구 시흥동 249-12	신봉섭	2,3층사무실 16개 전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작성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16호(1997.1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성북구고시 제1997-81호(1997.10.21)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72호(2003. 6.25)로 실시계획 작성된 『보국문길 도로확장공사(2차구간)』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작성하였기에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소문별관 2동 3층, ☎3707-8133) 및 성북구청 토목과 (☎920-340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다. 사업시행 규모 : 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금회에 변경되는 분만 기재하였으며, 기타는 변경없음)
- 사.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도 협의.

토 지 조 서(변경분)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장
 사업시행지주소 :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사업의명칭 : 보국문길 도로확장공사

연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변경사항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1	정릉동 407-28	도	10	10	김용주	종로 효자동 172-1	김규성	종로 묵인동 47-20	가등기	인가 포함	인가제외
2	정릉동 407-29	대	31	31	정릉2재개 발조합	성북 정릉동 161-17				인가포함	인가제외
3	정릉동 404-5	대	68	68	이석형	성북 정릉동 307-4				인가포함	인가제외
4	정릉동 403-40	대	28	28	문희경	성북 정릉동 402-26				정릉동 403-40, 28㎡	정릉동 403-39, 21㎡
5	정릉동 413-45	대	13	13	정영섭	성북 정릉동 413-13	성북구 신택은행 서울은행	성북 삼선동5가 411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압류 근저당 근저당	인가누락	인가포함
6	정릉동 416-46	대	17	17	윤을순	성북 정릉 809 중앙하이츠A 3-410				인가누락	인가포함
7	정릉동 411-23	대	3	3	권명순	관악 동작동 307				정릉동 411-23	정릉동 397-55
8	정릉동 409-40	대	225	225	이홍복	성북 정릉동 422-3				인가포함	인가제외

건 물 조 서(변경분)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자주소 : 중구 태평로1가 31

사업의명칭 : 보국문길 도로확장공사

연번	물건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변경사항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1	정릉동 401-02	건물(지하) 건물(1층) 건물(2층) 건물(3층) 계단	철근 /슬래브	25 25 25 8 3		이병무	성북 정릉동 401-2	국민은행 농신켈로그 주식회사	중구 남대문로2가 9-1 경기도 안산시 신소현동 142	근저당 근저당	건물(지하) 25 건물(1층) 25 건물(2층) 25 건물(3층) 8 계단 3	건물(지하) 25 건물(1층) 25 건물(2층) 25 건물(3층) 25 옥탑 8 계단 3	
2	정릉동 409-38	건물(1층) 건물(2층)	벽돌 /슬래브	14 14		이영근 유문자	성북 정릉 432-1				건물(1층) 14 건물(2층) 14	건물(1층) 15 건물(2층) 15	
3	정릉동 397-13	건물(1층) 건물(2층) 건물(3층)	벽돌 /슬래브	14 5 5		이원철 김영희	광진 광장동 567 광나루 현대A 102-304	주택은행	영등포 여의도동 36-3	근저당	건물(1층) 14 건물(2층) 5 건물(3층) 5	건물(지하) 14 건물(1층) 5 건물(2층) 5	
4	정릉동 397-39	건물(지하) 건물(1층) 건물(3층) 옥탑 가건물	철근 /슬래브	16 16 16 3 8		정재원	성북 정릉동 333-1 경원그린빌라 에이 402	세계일보 조흥은행	용산 한강로3가 63-1 중구 남대문로1가 14		건물(지하) 16 건물(1층) 16 건물(3층) 16 옥탑 3 가건물 8	건물(지하) 6 건물(1층) 16 건물(2층) 16 건물(3층) 16 옥탑 3 가건물 8	
5	정릉동 397-41	건물(지하) 건물(1층) 건물(2층) 건물(3층)	철근 /슬래브	7 33 33 15		황인철	노원 중계동 440-66 양지대림A 205-404	농협협동 조합 중앙회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	전세권누락 김영철 광진구 화양동33-3	
6	정릉동 407-12	건물(지하) 건물(1층) 건물(2층) 가건물	철근 /슬래브	13 13 13 4		정릉2구 역재개 발조합	성북 정릉동 416-24				인가포함	인가제외	

연번	물건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변경사항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7	정릉동 420-6	계단 건물(지하) 건물(1층) 건물(2층) 건물(3층)	철콘 슬래브/	2 15 15 15		백승기 정지현 정지민 정태웅	성북 정릉동 420-6				인가포함	인가제외	
8	정릉동 401-46	지하입구 계단	철콘 /슬래브	13 41		박경수	은평 불광동 8-185 우식빌라 403호	제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계당	지하입구 계단 계단	13 18 23	
9	정릉동 411-3	간판 지주간판 담당		1식 1식 1식		이화승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01-2002호				인가누락	인가포함	
10	정릉동 413-33	철대문 담장		1식 1식		김동용	정릉동 413-33				인가누락	인가포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49호
버스전용차로설치**

경부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구간) 및 남부순환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에 따라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 도로구분 : 자동차전용도로
- 구간 : 서초구 양재IC → 서초IC(도심방향)
- 가로명 : 경부고속도로
- 연장 : 1.5km
- 전용차로 종류 : 중앙버스 전용차로
- 기간 : 2003. 9. 1부터 2003. 9.30까지
- 통행시간
 - 평일 07:00~09:00
 - 토요일 12:00~21:00
 - 공휴일 08:00~23:00

- 도로구분 : 일반도로
- 구간 : 서초구 우면삼거리 ~ 양재역사거리(양방향)
- 가로명 : 남부순환로
- 연장 : 2.3km
- 전용차로 종류 : 가로변버스 전용차로
- 기간 : 2003. 9. 1부터 2003. 9.30까지
- 통행시간
 - 평일 07:00~10:00
17:00~21:00
 - 토요일 07:00~10:00
 - 공휴일 제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5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폐지) 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50-19,20번지 상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폐지)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가.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 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폐지)결정.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폐지)결정 조서
 - 폐지
 - 시설명 : 자동차 정류장
 - 위치 : 강남구 삼성동 150-19,20번지
 - 면적
 - 기정 : 1,268㎡
 - 변경 : 감 1,268㎡
 - 변경후 : 0
 - 최초결정일 : '76. 2.20

다.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731-6346) 및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2104-183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 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 광진구 노유동 및 성동구 성수2가동 일대는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수해예방을 위하여 방수설비(빗물펌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장, 도로와 중복 결정함.

2.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 조서

- 신설
 - 시설명 : 방수설비
 - 위치 : 광진구 노유제2동 159번지일대 및 성동구 성수2가제1동 159번지 일대
 - 면적
 - 변경 : 증)13,721㎡
 - 변경후 : 13,721㎡
 - 비고 : 광장 및 도로 중복결정

3. 관계 도면 : 생략

4.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731-6746), 광진구 도시개발과(☎ 450-1385)에 관계도면을 비치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51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결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제2동 159번지 일대 및 성동구 성수2가제1동 159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대하여 방수설비와 중복으로 설치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22호

일반건설업등록반납수리

일반건설업의 등록 반납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 상호 : (주)한세계이십일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65929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8
- 대표자 : 이춘기
- 업종 : 토목공사업
- 등록번호 : 01-0424
- 반납사유 : 자진반납
- 반납수리일자 : 2003. 8.2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39호

일반건설업등록반납수리

일반건설업의 등록 반납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 상호 : 한성하이빌주택(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2001090
-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응암동 603-53
- 대표자 : 한성송, 명노문
- 업종 : 건축공사업
- 등록번호 : 01-0341
- 반납사유 : 자진반납
- 반납수리일자 : 2003. 8.26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23호

일반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임원	등록일	비고
조경공사업 -01-0138	강산건설(주) 110111-0337653 박재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4 ☎ 561-7301	최웅진 430726 _*****	2003.8.21	.
건축공사업 -01-1818	(주)경신종합건설 110111-2822058 김민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 15-3 ☎ 573-0083	김준건 401106 _*****	2003.8.21	.
건축공사업 -01-1819	(주)한국구조물보강 110111-1620734 김국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49-11 ☎ 595-7370	김의수 550223 _*****	2003.8.21	.
건축공사업 -01-1820	(주)동화씨앤씨건설 110111-2076291 김정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0-29 ☎ 517-4737	남은숙 661105 _*****	2003.8.21	.
건축공사업 -01-1821	(주)에반아이엔건설 110111-1657513 김태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12 ☎ 557-8940	변상희 680430 *****	2003.8.21	.
건축공사업 -01-1822	(주)등극건설 110111-2824210 김왕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4-3 ☎ 2203-0826	박형재 461126 _*****	2003.8.2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28호

**전기공사업법위반자행정처분을위한청문통
지서공시송달**

다음 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행정 처분을 위한 청문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소재지이전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통지서를 공시 송달하니 기한 내 청문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대전전력(주) 대표 이승일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7-33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때)			
6. 청문 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소비자보호과	
	주 소	중구 태평로1가 31 (서소문별관 1동901호)		전화번호	3707-9338
	일 시	2003년 09월 23일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장 소	소비자보호과내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급		소비자보호과, 지방행정주사	
성 명		박 만 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3707-9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29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사항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가. 등록변경사항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512호
 - 상호 : 골든커뮤니티(주)
 - 대표자 : 이재순
- 변경내용
 - 변경전
 - 상호 : 윌파인드림넷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5-2
 - 전화 : 02-523-7798
 - 변경후
 - 상호 : 골든커뮤니티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3
 - 전화 : 02-558-4740

나. 변경일자 : 2003년 8월 23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02)3707-9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30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사항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가. 등록변경사항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439호
 - 상호 : (주)지엔드지종합유통
 - 대표자 : 정낙모
- 변경내용
 - 변경전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14
 - 전화 : 02-561-7338
 - 변경후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삼호물산A동 3층
 - 전화 : 02-589-1201

나. 변경일자 : 2003년 8월 23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02)3707-9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31호
2003년도제9차건축물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할 경우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평가와 관련 「2003년도 9차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p> <p>가. 심의일시 : 2003. 8.21(금) 14:00~17:30</p> <p>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회의실</p> <p>다. 참석위원 : 10명 ○허영, 양주혜, 최덕교, 최병상, 여운홍석창, 정현이, 금누리, 김훈근, 하중현</p> <p>라. 심의작품 : 16건 20작품 ○조각17, 기타 3</p> <p>마. 심의결과 ○승인 : 18 작품(조각 15, 기타 3건) ○재심 : 조각 2작품</p> <p>바. 작품별 심의결과 : 별항</p> <p>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과(☎02)3707-94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미술장식품별 심의결과

연번	설치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신청인
1	동대문구 장안동 374-1,10	조각	사유공간 1,2	재심	예술적내용, 형식미, 조형성, 가격 부적절	종로구 계동 140-2 (주)현대건설 이지송
2	동작구 상도동 산64-89외104	조각	강변(江邊)-2003	승인		전북 전주시 덕진군 금암동 482-14(주)중앙건설 조승규
3	양천구 목동 920	조각	Relatum, 1984	승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주)SBS 송도균
4-1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조각	mode of life-III	승인	작품형식미, 내용미, 조형성 부족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주)대우건설 남상국
4-2		조각	eve- I	재심		
4-3		조각	eve-II	승인		
5	송파구 가락동 166-2,5	조각	삶의 共存	승인		송파구 가락동 167-5 (주)이도디엔씨 전영달
6	마포구 용강동 121-1	조각	왕과 비	승인		마포구 용강동 122-16 대교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이호걸
7	성동구 성수1가2동 650-408	조각	대화(對話)-마주보기	승인		성동구 성수1가동 8-1 성수동뜰섬1지역주택조합 권석훈
8	구로구 오류동 312-2,77-5	조각	성공의 문	승인		구로구 오류동 77-19 동선종합건설 안희성
9	양천구 신정동 733-29외2	조각	늘 푸른 꿈	승인		양천구 신월6동 559-2 신대양·효창연립재건축주택조합 윤찬호
10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73	조각	화성의 나무	승인		강남구 도곡동 544-5 스펙코B 401호 네오테크 고금선
11	강서구 등촌동 635-2	조각	카오스의 내면	승인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94-1 (주)대동이엔씨 박인환

연번	설 치 위 치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사 유	신 청 인
12	구로구 신도림동 437-1외3	조각	지(知)와 성공의 결정	승인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3 우신B 5층 (주)국천산업 김향숙
13	동대문구 용두동 33-1외 12	조각	아름	승인		강남구 역삼동 701-2 (주)삼성테스코 이승환, 케빈그레이크
14-1	강서구 등촌동 산15-1외17	조각	정오의 만남 2003-1	승인		강남구 역삼동 679-4 (주)현대산업개발 이방주
14-2		조각	공간-2003 (춤)	승인		
14-3		벽화	Sleeping city-hidden garden	승인		
15	양천구 신월동 560-8외 9(1단지)	부조	환상공간	승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주)벽산건설 정종득
16	양천구 신월동 560-5외 4(2단지)	부조	환상공간	승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주)벽산건설 정종득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35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업체행정처분을
위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공시
송달

- 아래 청문대상업체는 방문판매등에관
한법률 제34조 및 동법부칙 제2조 제
2항을 위반한 업체로 동법 제2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직권등
록 취소)코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
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미
거주(이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시 송달하오니 아래 청문기한내
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
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3707-
93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청문대상업체(당사자)

청 문 대 상 업 체(당사자)			비 고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베네트멤버스	천태준	송파구 방이동 39-12호 보룬빌딩 3,4층	
파파진주쇼핑	김영대	강남구 삼성동 143-38호 대종빌딩 10층	
바이온큐	조규대	서초구 서초동 1340-6호 남강빌딩 3층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위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취소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소비자피해보
상계약 미체결 등 등록사항 보완신
고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직권)
-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법제1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
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동법부칙 제2조제2항(등록사항 보완신고)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직권등록취소) ③법제13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바. 청문실시

- 기관명(부서명) :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과)
-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소문별관1동 9층(☎ 3707-9335)
- 일시 : 2003. 9.24(수) 14:00부터 15시까지(1시간)
- 장소 : 소비자보호과
- 주재자 : 소비자보호과 지방전기주사이재석

사. 유의사항

- 1) 청문참석자(대표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가능)는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이권 처리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가 될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2) 귀하는 상기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3707-93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36호

일반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에 대하여 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임원	신고수리일	비고
건축공사업 01-0289	티에이치건설(주) 110111-1968853 곽병목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1동 292-8 ☎ 2667-0134	강철원 391229 -*****	2003.8.26	.
건축공사업 01-0306	연보종합건설(주) 110111-1966814 최현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41 ☎ 412-5903	박원오 530421 -*****	2003.8.26	.
토목공사업 01-0094	국정종합건설(주) 110111-2012386 김현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동 3-85 ☎ 911-2440	이창주 371014 -*****	2003.8.26	.
건축공사업 01-0337	(주)한성이엔씨 110111-2017823 박원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5-3 ☎ 3446-2330	박원명 421117 -*****	2003.8.26	.
건축공사업 01-0345	태진건설(주) 110111-1980542 윤태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27 ☎ 3281-8721	김태환 311202 -*****	2003.8.26	.
건축공사업 01-0356	(주)금보산업개발 110111-2034679 이경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109-17 ☎ 3442-6181	서진길 460219 -*****	2003.8.26	.
건축공사업 01-0299	(주)삼우씨엔씨 110111-2014077 소순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77-27 ☎ 336-4645	김해남 271002 -*****	2003.8.26	.
건축공사업 01-0316	씨엠테크종합건설(주) 110111-1950123 홍광성·이순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1동 186-2 ☎ 412-6411	홍광성 511001 -*****	2003.8.26	.
건축공사업 01-0320	(주)리룩스 110111-2019556 김석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5-2 ☎ 582-2477	김석재 370911 -*****	2003.8.26	.
건축공사업 01-0349	동양도시개발(주) 110111-2019366 주봉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406-108 ☎ 2652-7872	김종원 430313 -*****	2003.8.2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40호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하고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1. 일반건설업 등록말소처분 내역

연번	상 호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처분 일자
1	거현종합건설(주) 민승기	건축 010069	광진구 자양2동 662-13	건설업 등록말소	주기적신고의무위반 사업자등록폐업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11호	2003.8.12
2	정우건설산업(주) 장무웅	건축 1171	마포구 성산동 40-2 대경빌딩4층	"	"	"	"
3	삼우진흥(주) 이인범	건축 1343	성동구 성수2가1동 275-6	"	"	"	"
4	우람공영개발(주) 정경주	건축 010092	성동구 홍익동 315-1 동림빌딩4층	"	"	"	"
5	기안종합건설(주) 임종오	건축 10049	성북구 종암1동 81-4	"	"	"	"
6	(주)백안종합건설 박태원	건축 1745	종로구 명륜동1가 5-9	"	"	"	"
7	신안도시산업(주) 박순명	토목 627	중랑구 중화동 281-1 감로빌딩2층	"	"	"	"
8	성림토건(주) 유배기	건축 010190	용산구 한남동 262-1 청산빌딩3층	"	"	"	"
9	선홍아이앤씨 종합건설(주)	건축 010723	종로구 혜화동 15-51	"	등록기준미달 관할구청장 말소요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10호	"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41호

전기공사업법위반업체등록취소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다음의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 등록번호 : 서울-00418
- 업체명 : 대원전설(주)
- 대표자 : 조재희
- 소재지 : 강남구 포이동 224
- 위반내용 :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기술인력부족,사무실미보유)
- 행정처분 : 등록취소
- 등록취소일 : 2003. 8.27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42호

전력시설물의설계업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 등록번호 : 제서울E-2-254호
- 업체명 : (주)극동파워테크
- 대표자 : 배철한
- 법인등록번호 : 110111-2273110
- 소재지 : 마포구 합정동 393-18
- 종류 : 전문설계업(1종)
- 등록일자 : '03. 8.26

구 고 시

◎중구고시 제2003-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

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2-15(2002. 4.15)호 및 제2003-19(2003.3.2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고시(변경)되고 중구고시 제2003-53(2003.7.16)호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아래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9~432-811간
-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신당2동432-9~432-787간 도로개설 공사
- 사업규모
 - 폭원 : 6m
 - 연장 : 290m
- 시설결정고시
 - 서울시고시제59호('68. 7.16)
 - 중구고시제2001-87호(2001.11.30)
 - 중구고시제2003-11호(2003. 2.18)
 - 중구고시제2003-53호(2003. 7.16)
- 지형도면고시

- 서울시고시제59호('68. 7.16)
 - 중구고시제2001-87호(2001.11.30)
 - 중구고시제2003-11호(2003. 2.18)
 - 중구고시제2003-53호(2003. 7.16)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중구 예관동 120-1)
 - 다.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간
 - 라. 변경사유 :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결정에 따른 토지·물건변경.
 -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 : 별첨
 - 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공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목과 (☎ 2260-4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공 사 명 : 신당2동432-9~432-787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신당2동 432-49	도로	695	건설교통부					신당2동 432-49	도로	666	건설교통부						
2	신당2동 432-2833	도로	6.0	건설교통부					신당2동 432-2833	도로	5.0	건설교통부						
3									신당2동 432-2844	대	2.0	한영숙	은평구 대조동195-2	근저당	갈현동 새마을금고	은평구 갈현동 432-18		
4									신당2동 432-2845	대	24	채형석 채동석 채승석	강남구 압구정동193-3 현대① 85-604 용산구 서빙고동 241-2 1신동아② 14동 중구 신당2동 432-1692					
5									신당2동 432-2846	대	18	채형석 채동석 채승석	강남구 압구정동193-3 현대① 85-604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②14동 중구 신당2동 432-1692					

변 경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공 사 명 : 신당2동432-9~432-787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용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용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신당2동 432-1113	화 단 수 목	적벽돌 1식	1식	한영숙	은평구 대조동 195-2	근저당 전세권 전세권 전세권	갈현동새마을금고 전 용 훈 최 영 락 이 건 순	은평구 갈현동432-18 서초구 방배동964-14 성동구 옥수동18-3 중구 신당동 432-1113			

◎용산구고시 제2003-43호

유어행위의시기·대상·지역등제한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 등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칭 : 용산구 한강내수면 유어행위 제한지역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 호 안 및 내수면

※ 불입도면 참조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 사항

가.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 2003년 9월 1일 ~ 2008년 8월 31일

나. 제한되는 유어행위

1) 유어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아래구역에서의 유어행위 금지

○이촌지구 유어행위금지구역

- 위치 : 이촌동 거북선선착장(한강 대교북단 상류 900m)(①)~②~③~이촌동 한강철교 북단 상류 200m(④)를 연결한 한강 호안 및 내수면(불입도면 참조)

- 면 적 : 274,000m²

- 금지구역 직각좌표

번 호	X	Y
①	197,245	446,065
②	197,155	445,880
③	196,070	446,405
④	196,103	446,597

○반포지구 유어행위금지구역

- 위치 : 용산동6가 동작대교남단 상류 500m(인공섬(서래섬) 하류부

100m)(①)~②~③~서초구 반포동 동작대교남단 호안에서 북쪽으로 27m(④)~용산동6가 동작대교남단 상류250m(⑤)를 연결한 한강 호안 및 내수면(불입도면 참조)

- 면적 : 216,000m²

- 금지구역 직각좌표

번 호	X	Y
①	198,698	444,965
②	198,698	445,400
③	198,220	445,400
④	198,220	444,927
⑤	198,469	444,927

※ 좌표 판독기준

- 투영원점 : 중부원점(동경 127도, 북위 38도)

(*원점의 좌표는 X=200,000미터, Y=500,000미터임.)

- 도법 : 직각좌표(TM : Transverse Mercater)

- 독취지형도 : 1/1000, 도엽명 : 서울

2) 유어행위로 은어를 포획·채취하는 행위 금지

3) 유어행위 도구(어구)를 1인당 4개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4) 갈고리 모양의 도구(어구)를 사용한 낚시행위(일명 훔치기) 금지

다. 유어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1)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2)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 서식지 조사 등은 제외

-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 가. 금지행위 위반자 :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나. 근거규정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가. 관리기관 : 용산구청(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 나. 기타 :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제한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 또는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생태기획과(☎ 02-3780-0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고시 제2003-44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실시계획변경

- 1.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3-12호(2003. 3.27)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3-18호(2003. 5.10)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실시계획 고시된 「보광빛물펌프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제1항 규정 및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 2. 관련 도서는 용산구청 하수과(☎ 710-3414) 및 건설관리과(☎ 710-340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83-2번지 주변(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
 - 사업의 명칭 : 보광빛물펌프장 증설 공사
-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배수펌프 : 460HP×4대
 - 흡수정 : 2,300㎡
 - 건축 : 지상3층 1동
 - 면적 : 498.3㎡(연면적 816.67㎡)
- 사업 시행자 주소,성명 : 용산구 원효로1가 25번지 용산구청장(변경없음)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 일로부터 ~ 2004. 12. 31(변경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영업권)소재지,지번,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토지 및 물건(영업권)조서 참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도협의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보광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보광동 75-35	전	149	149	주차장	장기창외 4인	용산구 보광동 75-1	-	-	-	변경없음
2	보광동 75-37	전	315	315	"	"	"	-	-	-	변경없음
3	보광동 75-38	전	308	308	"	"	"	-	-	-	변경없음
4	보광동 70-11	전	6	6	"	"	"	-	-	-	변경없음
5	보광동 83-12	구거	287	287	쓰레기 적환장	용산구	용산구 원효로1가 25	-	-	-	변경없음

물 건(영업권)조 서

□ 사업명 : 보광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연번	소재지 주소	물건의 종류	상호 및 영업의 종류(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보광동 70-11	마당	바닥콘크리트	6	장영환	보광동 75-1	-	-	-	변경(추가)
		담장	브릭	12*1.8						
		대문	철재	3.5*2.3						
2	보광동 70-35	주차장	바닥콘크리트	149	장기창	보광동 75-1	-	-	-	변경(추가)
		담장	철망파이프	14*1.8						
3	보광동 70-37	주차장	바닥콘크리트	315	상동	상동	-	-	-	변경(추가)
		컨테이너	접수대	4*2.2*2.2						
		차고	파이프천막	7*5*4						
		담장	철망파이프	20*1.8						
			합석파이프	11*2.3						
대문	철재	5*2								
4	보광동 70-38	주차장	바닥콘크리트	308	상동	상동	-	-	-	변경(추가)
		정화조	50인조	1식						
5	보광동 70-11.37	컨테이너	접수대	3*1.5*2.5	조대생	보광동 359	-	-	-	변경(추가)
		고물	잡화							
6	보광동 70-35,37,38	영업권	강변 주차장	1식	장기창	보광동 75-1	-	-	-	변경없음
7	보광동 70-11.37	영업권	보광 고물상	1식	조대생	보광동 359	-	-	-	변경(추가)

◎성동구고시 제2003-8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 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 허가일 : 2003. 8.25.
- 수허가자 : 성도건설산업(주) 도문길
- 허가내역
 - 목적 : 청계천복원제3공구현장사무실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5
 - 면적 : 192㎡
 - 지목 : 하천(제방)
 - 점용기간 : 2003. 8. 1.~2004.12.31.

- 도로개설 : 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 마. 사용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 450-1405~7) 및 건설행정과 (☎ 450-1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고시 제2003-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3-45호 (2003. 7.25)로 작성고시한 『능동 37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 450-1405~7)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변경없음
 -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다. 규모

능동 372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
(자양동 777번지)
 3.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토지조서 : 변동없음
- 물건조서

당 초										변 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능동	372	건물 1층	시멘트 연외조	77㎡		광 흥 수	성 동 구 능 동 372			1	능동	372	건물 1층	시멘트 연외조	77㎡		광 기 영	광 진 구 능 동 170						
			출입문	알미늄 (3.0×1.7)	1개									출입문	알미늄 (3.0×1.7)	1개									
			출입문	알미늄 (1.0×1.7)	2개	주출입문 + 기둥2개								출입문	알미늄 (1.0×1.7)	2개	주출입문 + 기둥2개								
			보일러실	알미늄 (3.0㎡)	1식									보일러실	알미늄 (3.0㎡)	1식									
			보일러		2개									보일러		2개									
			정화조		1식									정화조		1식									
			전기 계량기		1식									전기 계량기		1식									
			담장	콘크리트	H=2.0m L=3.0m									담장	콘크리트	H=2.0m L=3.0m									
담장	콘크리트	H=1.0m L=1.0m		담장	콘크리트	H=1.0m L=1.0m																			
2	능동	198-4	담장	콘크리트	H=1.0m L=8.0m		박 중 엽	광 진 구 능 동 174		2		변경	없음												
3	능동	373-1	담장	콘크리트	H=1.8m L=1.5m		이 우 명	광 진 구 능 동 371-1		3		변경	없음												

◎광진구고시 제2003-5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작성

- 1.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3-9호(2003. 3.31)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한 “구의동 124-1호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실시계획 일부 변경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기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 (☎ 450-1405) 및 건설행정과(☎ 450-1400)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광진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바. 변경작성 내용 : 착오정정
- 사. 기타사항 : 이상없음
-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구의동 124-1호 주변 도로개설공사

1.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77
3.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토지조서 : 변경없음
 - 물건조서

당 초										변 경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명세			비 고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	광진구 화양동	124-1	건물	스라브 /벽돌	2㎡	방	송성호	광진구 구의동 414-1				광진구 구의동	124-1	건물	스라브 /벽돌	2㎡	방	장재남	광진구 구의동 414-1										
				가건물	샷시/ 샷시	4㎡	거실	장재남	광진구 구의동 414-1							가건물	샷시/ 샷시	4㎡	거실										
			계량기		1식	한전	송동수	광진구 구의동 414-1						계량기		1식	한전												
				담장	적벽돌	1.5× 5.9		송명수	강동구 암사동 298							담장	적벽돌	1.5× 5.9											
			대문	목재	2.3× 2.6									대문	목재	2.3× 2.6													
					정화조	30인용	1식									정화조	30인용	1식											
			수도		1식									수도		1식													
			출입문	샷시	0.85× 1.85									출입문	샷시	0.85× 1.85													
					수도		1식									수도		1식											
			계량기		1식	한전								계량기		1식	한전												

구의동 124-1호 주변 도로개설공사

당 초										변 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건물	스라브/벽돌	2㎡	부엌									건물	스라브/벽돌	2㎡	부엌																														
			건물	스라브/벽돌	2㎡	화장실									건물	스라브/벽돌	2㎡	화장실																														
			대문	목재	2.6x3.3	장독대/대문									대문	목재	2.6x3.3	장독대/대문																														
			출입문	샷시	0.85x2.05										출입문	샷시	0.85x2.05																															
			건물	스라브/벽돌	2㎡	주방									건물	스라브/벽돌	2㎡	주방																														
			수도		1식										수도		1식																															

Ⓞ동대문구고시 제2003-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경원제4녹지조성-2차구간)실시계획인가

1. 건고제41호(1977. 3.16)로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되고, 서고제429호(1978. 8. 26)로 지적 고시된 우리구 이문동 213-2번지 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제2003-314(2003. 7.15)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경원제4녹지조성-2차구간)실시계획인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2127-477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13-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경원제4녹지 조성 - 2차구간)

- 다. 사업시행면적 : 1,484㎡
-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 ~ 2004.12.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별첨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2127-4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 영업권조서

가. 토지조서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이문동 208-2	대	83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608-38	임운빈				
이문동 208-7	답	55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20-2	김영해				
이문동 209-15	답	294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20-2	임형근		동대문구 용두동 39-9 도정58550-13576(2001. 12. 20)호에 의거 압류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장)	
이문동 211-7	대	25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405 코오롱(아)106-1603	조문교				
이문동 212-3	전	205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106 효성화운트빌308-401	권성철				
이문동 212-5	전	43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6-48	정군석				
이문동 212-6	답	1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106 효성화운트빌308-401	권성철				
이문동 212-9	잡	17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8-6 초원아파트 304/1403호	이은희				
이문동 212-10	답	26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6-215	현정순	2/15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6-215	정군선	6/15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1029-3	정유숙	2/15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135-8	정인숙	1/15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225-39	정유수	1/15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월문리 120	정호자	1/15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16-8	정유자	1/15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6	정유선	1/15			
이문동 213-2	전	3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106 효성화운트빌308-401	권성철				
이문동 213-4	답	2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106 효성화운트빌308-401	권성철		동대문구 용두동 39-9 도정58554-15650(2002. 10. 16)호에 의거 압류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장)	

나. 물건조서

연번	지번	물건의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이문3동 209-015	화장실	브릭/스레트	2	동대문구 이문동 320-2	임형근	충북 제천시 청천동 482-73	엄광용	
2	이문3동 208-007	사무실	브릭/스레트	21	동대문구 이문동 320-2	임형근	노원구 월계동 930 우남APT 101/603	김정구	
3	이문3동 208-009	사무실	브릭/스레트	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20-2	임형근	도봉구 방학동 720 현대APT 108/1801	서정선	

다. 영업권 조서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1	이문3동 209-015	제조	브릭/스레트		광흥금속	김정구	노원구 월계동 930 우남APT 101/603	209-37-65061	
2	이문3동 209-015	제조	브릭/스레트		정우수출포장	서정선	도봉구 방학동 720 현대APT 108/1801	205-02-65432	
3	이문3동 211-007	제조	브릭/스레트		동원기계	조문교	성북구 석관동 405 코오롱APT 106-1603	209-37-72714	
4	이문3동 212-005	제조	브릭/스레트		대성도장	유정선	노원구 월계동 774 청백APT 101/1003	204-07-19963	
5	이문3동 212-009	수리	브릭/스레트		이문बाट데리	전병률	동대문구 이문동 237-24	205-51-13062	
6	이문3동 212-003	제조	브릭/스레트		청운에스티	김종운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283-28	210-81-29980	
7	이문3동 213-002	청소대행	브릭/스레트		용마산업	권성철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106 효성화운트빌308-401	205-81-04672	
8	이문3동 213-002	청소대행	브릭/스레트		동양용역	권성철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106 효성화운트빌308-401	205-81-05201	
9	이문3동 208-002	제조	브릭/스레트		이문고물상	엄광용	동대문구 이문동208-2	204-07-57744	
10	이문3동 209-15	창고	브릭/스레트		자연화학	박연수	동대문구 이문동209-13		

◎중랑구고시 제2003-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10호(2003. 5.10)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2003-63호(2003. 8.1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한 중랑구 면목동 120-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중랑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랑구 면목동 120-3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2) 사업의 명칭 : 면목역 만남의 광장 조성

다. 사업의 면적 : 1,357.8㎡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아. 관련 도서의 비치 장소 : 중랑구 공원녹지과 (☎ 490-3396)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적(㎡)		지목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변경 없음	면목동 120-1	85.8	85.8	대지	도로	서울시					
2	변경 없음	면목동 120-30	291.6	291.6	대지	도로	서울시도시 철도공사	성동구 용답동 223-3				
3	변경 없음	면목동 120-44	29.5	29.5	대지	도로	서울시					
4	변경 없음	면목동 120-2	87.9	87.9	대지	대지	김창일	중랑구 면목동 120-2				
5	기정	면목동 120-3	1904.3	560	대지	대지	학교법인 세방학원	중랑구 면목동 49-3	축협중앙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전세권 (10억원)	
	변경	면목동 120-3	1904.3	863	대지	대지	학교법인 세방학원	중랑구 면목동 49-3	축협중앙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전세권 (10억원)	

수용할 물건조사서 (변경사항 없음)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면목동 120-2	건물 (계)	콘크리트/ 슬라브	231.02	근·생	김창일	중랑구 면목동 120-2				
		건물 (1층)	콘크리트/ 슬라브	47.74	점 포						
		건물 (2층)	콘크리트/ 슬라브	47.74	미용실						
		건물 (3층)	콘크리트/ 슬라브	47.74	사무실						
		건물 (4층)	콘크리트/ 슬라브	47.74	사무실						
		건물 (지층)	콘크리트/ 슬라브	40.06	인쇄소						
		건물 (옥탑)	콘크리트/ 슬라브	5.76	계단실						
2	면목동 120-3	건물 (계)	콘크리트/ 슬라브	1,806.5	근·생	학교법인 세방학원	중랑구 면목동 49-3	축협 중앙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전세권 (10억원)	
		건물 (1층)	콘크리트/ 슬라브	449.28	은행점포						
		건물 (2층)	콘크리트/ 슬라브	453.97	학교 실습실						
		건물 (3층)	콘크리트/ 슬라브	453.97	학교 실습실						
		건물 (지층)	콘크리트/ 슬라브	449.28	학교 실습실						

◎성북구고시 제2003-117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1. 우리구 관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고려대학교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건축과(☎ 920-339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성북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호외 2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 2) 사업의 명칭 : 고려대학교 외국인기숙사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 내용

구분	도시계획 결정(㎡)	대지면적 (㎡)	건축시설				건축율 (%)	용적률 (%)
			기존건물(㎡)	기허가건물(㎡)	금회증축(㎡)	총계		
계	640,260	640,260	동 수:93동 -연면적:482,670.31	동 수:신설7동 증설3동 -연면적:75,313.38	동 수:신설1동 -연면적:8,228.42	동 수:101동 -연면적:566,212.11	19.80	68.87
본교 캠퍼스		213,434	동 수:33동 -연면적:192,260.15	동 수:신설2동 증설2동 -연면적:48,632.20		동 수:35동 -연면적:240,892.35		
자연계 캠퍼스		158,573	동 수:28동 -연면적:139,325.28	동 수:신설5동 -연면적:26,584.62		동 수:33동 -연면적:165,909.90		
녹지 캠퍼스		268,253	동 수:32동 -연면적:151,084.88	동 수:증설1동 -연면적:96.56	외국인기숙사(신설) 연면적:8,228.42 지하2층/지상5층	동 수:33동 -연면적:159,409.86		

라. 시행자

- 1)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호
 - 2) 성명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병관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2003. 8. ~ 2005. 8.
-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성북구청 건축과 비치
- 사. 사용할 토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호외 26필지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성북구고시 제2003-119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1. 우리구 관내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의 서경대학교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건축과(☎ 920-339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 16-1 외 2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2) 사업의 명칭 : 청운관, 시설과 증축 공사 다. 사업시행내용					
구분	도시계획 결정(㎡)	대지면적 (㎡)	건 축 시 설				건폐율 (%)	용적률 (%)
			기존건물 (㎡)	기허가건물 (㎡)	기허가건물 설계변경(㎡)	총계		
계	41,746.00	39,822.84	-동수:11동 -연면적:87,098.80	-동수 신설1동(시설과) 증설1동(청운관) -연면적4,029.38	-신설1동(시설과) 연면적증가209.02㎡ -증설1동(청운관) 연면적감소103.99㎡ o총 연면적증가 105.03㎡	-동수:12동 -연면적:91,233.21	28.46	164.04
라. 시행자 1)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16-1 외 27필지 2) 성명 : 학교법인 서경대학원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2000.12. . ~ 2004. 6.30.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성북구청 건축과 비치 사. 사용할 토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6-1외 27필지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서경대학원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건축과(☎ 920-339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2 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2) 사업의 명칭 : 고려대 병설 보건대학 정의관 증축공사					
<p>◎성북구고시 제2003-120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p> 1. 우리구 관내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의 서경대학교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 계획변경인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고시 합니다.								

다. 사업시행내용							
구분	도시계획 결정(㎡)	대지면적 (㎡)	건축시설			건폐율 (%)	용적률 (%)
			기존건물(㎡)	금회증축(㎡)	총계		
계	36,611.00	36,611.00	-동수:5동 -연면적:19,790.94	-신설1동 정의관7,465.95	-동수:6동 -연면적:27,256.89	13.20	66.85

<p>라. 시행자</p> <p>1)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2 외 4필지</p> <p>2) 성명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2003. 8.30. ~ 2005. 8.30.</p> <p>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성북구청 건축과 비치</p> <p>사. 사용할 토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2 외 4필지</p> <p>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p> <p>◎성북구청시 제2003-12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p> <p>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30-2호 외7필지 지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8월 30일 성 북 구 청 장</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p> <p>2. 사업위치 : 성북구 정릉동 830-2호 외 7필지</p> <p>3.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p> <p>○성명 : 청수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김 영 배</p> <p>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30-2번지</p>	<p>○성명 : 영남건설(주) 대표자 배 대 순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83-14</p> <p>○성명 : (주)모스트씨앤디 대표자 배찬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15</p> <p>4.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 1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p> <p>5. 사업시행기간 : 2003.10 ~ 2005.12.</p> <p>6. 사업계획변경 승인내역</p> <p>○변경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성북구 정릉동 830-2외 7필지 - 사업주체 : 청수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김영배 (주)토다건설 대표자 윤병목 - 연면적 : 15,749.76㎡ - 대지면적 : 3,746.17㎡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4층 <p>○변경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성북구 정릉동 830-2외 7필지 - 사업주체 : 청수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김영배 영남건설(주) 대표자 배대순 (주)모스트씨앤디 대표자 배찬수 - 연면적 : 15,749.76㎡ - 대지면적 : 3,746.17㎡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4층 <p>7. 변경내용 및 기타 관련 도서는 성북구청 주택과(☎920-3380~4)에 비치함</p>
--	---

◎성북구고시 제2003-1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시설,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2-96호(2002. 8.30)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제2003-68호(2003. 5.30)로 변경인가 고 시된 “장위간이빗물펌프장 신설 및 유입관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하천시설,도로)실시 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치수방재과(☎ 02-920-341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
시설, 도로)

나. 사업시행내역

- 시설명 : 하천시설
- 위치 : 장위3동 270-396외 2필지
- 사업규모
 - 면적 : 198㎡
 - 펌프용량 : 40HP×2대
- 도시계획시설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제2002-22호(2002. 4.19)
- 지형도면(승인)고시 : 서울특별시 노
원구고시 제2002-22호(2002. 4.19)

- 시설명 : 도로
- 위치 : 장위동270-84~ 월계동51-33
- 사업규모
 - 연장 : 146m
 - 폭원 : 4~8m
- 도시계획시설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제2002-22호(2002. 4.19)

- 지형도면(승인)고시 : 서울특별시 노
원구고시 제2002-22호(2002. 4.19)
- 다.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전 : 2002. 8.30 ~ 2003. 8.31.
 - 변경후 : 2002. 8.30 ~ 2003.12.31.
- 마.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건물소재지,지
번,지목,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주소,성명 :
별첨.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 성북구 삼선동 5가 411번지

사업의종류 : 장위간이빗물펌프장신설

성북구청 치수방재과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	
1	성북구 장위동 270-396	대	7	2.7	대지	성북구					
2	노원구 월계동 479-33	천	302	137.8	도로	노원구					
3	노원구 월계동 479-4	천	1,309	104.5	대지	노원구					
4	노원구 월계동 476-22	천	7,070	9.9	도로	서울특별시					
5	노원구 월계동 491-6	전	25	25	대지	서울특별시					
6	노원구 월계동 50-27	답	97	97	대지	서울특별시					
7	노원구 월계동 492-9	전	202	202	대지	서울특별시					
8	노원구 월계동 495-1	도	5	2		서울특별시					
9	노원구 월계동 495-31	대	1	1	도로	박정숙	중랑구 망우2동 464-3	이종석	중구 신당동 432-1631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주)송파철강	송파구 삼전동 53-9	가압류	
								가평군	가평군청	압류	
								남양주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압류	
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미아동지점)	근저당권									
10	노원구 월계동 495-30	대	15	15	도로	양용순	노원구 월계동 495-21				
11	노원구 월계동 50-33	답	1	1	도로	서울특별시					
12	노원구 월계동 50-34	대	13	13	도로	허용범	노원구 월계동 50-15 화진연립 D동 3층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		
13	노원구 월계동 51-33	전	51	51	도로	서울특별시						
14	노원구 월계동 50-9	전	5657	57		서울특별시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명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 성북구 삼선동 5가 411번지
 사업의 종류 : 장위간이빛물펌프장 신설
 성북구청 치수방재과

연번	소재지 주소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실제이용 현 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 리종류및내용	
1	노원구 월계동 492-9	담 장	블럭	11.8	담장	서울특별시					
2	노원구 월계동 492-9	대 문		1식	대문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3-74호

미아제2구역주택재개발지형도면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89호(2003. 6. 25)로 구역지정 고시된 미아제2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하여 고시 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과 (☎ 901-2339)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미아제2구역주
 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결정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신규	미아제2주택재개발구역	강북구 미아2동 791번지 일대	18,837.3	

다. 사업계획결정 내용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건축시설 계획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m) 층수(층)
신규	미아제2구역주택 재개발사업	18,837.3	택지1	14,167.74	미아동 791번지 일대	공동주택 (분양아파트)	22% 이하	225% 이하	40.75M 이하 15층 이하
			택지2	1,581.00	미아동 791번지 일대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30% 이하	225% 이하	25.3M 이하 9층 이하
			택지3	251.60	미아동 79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16.5M 이하 5층 이하
			합계	16,000.34			30% 이하	225% 이하	

라.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m ²)	비율(%)	비고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반주거	18,837.30	100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4종)	745.90	3.96		
택지	합계	16,041.93	85.16		
	택지	소계	16,041.93	85.16	
		(1)	14,167.74	75.21	조합, 분양아파트
		(2)	1,581.00	8.39	임대아파트
		(3)	251.60	1.34	상가
	(4)	41.59	0.22	보류지(교환대지)	
공공시설	합계	2,795.37	14.84		
	공원 및 녹지	소계	999.33	5.30	
		녹지(1)	251.60	1.34	
		녹지(2)	95.06	0.50	
		공원	652.67	3.46	
	도로	소계	1,796.04	9.54	
		(1)	300.46	1.60	폭10M확보
		(2)	764.64	4.06	폭 6M
		(3)	603.55	3.20	폭 6M
	(4)	127.39	0.68	폭 4M	

마.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로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노형	세분류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 정	소로	2	111	8	구획 도로	일반 도로	132	미아동 791-563	미아동 791-778	재개발사업 부지측 (L=132M) 폭원 확정 (8→10M)
변 경	소로	2	111	10	구획 도로	일반 도로	132	미아동 791-563	미아동 791-778	
폐 도	소로	3	153	6	구획 도로	일반 도로	190	미아동 773-5	미아동 791-813	사업지구 내 도로
신 설	소로	3	1	6	구획 도로	일반 도로	93	미아동 777-987	미아동 791-56	
신 설	소로	3	2	4	구획 도로	일반 도로	30	미아동 791-853	미아동 791-841	

2) 공공공지결정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고
	명 칭	세 분 류			
합 계				999.33	
신설	공공공지	녹 지 (1)	미아동791-814번지 일대	251.60	
		녹 지 (2)	미아동791-854번지 일대	95.06	
		공 원	미아동791-845번지 일대	652.67	

바. 건축시설계획 : 관계서류 열람 장소에서 열람
사. 관계서류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과(☎ 901-2339) 및 지적과(☎ 901-2220)에 관련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고시 제2003-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제89호(1972. 6.3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 제2호 규정

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 제5호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901-2353)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형여건상 선형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 선형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류		6m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60	우이동 30-19	우이동 148	일부구간 선형변경 (L = 100m)
변경	소로	3류		6m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60	우이동 30-19	우이동 148	

다. 관계도면 : 별첨 (계재생략)

◎강북구고시 제2003-7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및지형도면작성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5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 제2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 제5호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901-2353)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조서

○신설

- 시설명 : 주차장
- 위치 : 강북구 미아9동 133-4번지 외 12필지

- 면적 : 1,301㎡

○신설

- 시설명 : 주차장
- 위치 : 강북구 수유6동 348-65번지 외 12필지

- 면적 : 1,529㎡

다. 관계도서 : 별첨 (계재생략)

◎강북구고시 제2003-7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및지형도면 작성

- 1. 강북구고시 제2003-42호(2003. 6.1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3 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를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901-2350)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 가. 변경 결정취지 : 주차장 건설시 불필요한 부지 일부 제척
-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조서
 - 변경
 - 시설명 : 주차장
 - 위치 : 수유2동 252-36번지 외 19필지
 - 면적
 - 기정 : 1,173㎡
 - 변경 : 감)14㎡
 - 변경후 : 1,159㎡
 - 최초결정일 : 2003. 6.10
 - 다. 관계도서: 별첨(계재생략)

◎도봉구고시 제2003-61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제2003-44호(2003. 7. 5)호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

제2003-272호(2003. 7.21)로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한바 있는 도봉구여성복지센터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기타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가정복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306-10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 2) 사업의 명칭 : 도봉구여성복지센터 건립
 - 3) 사업의 면적
 - 가) 기정 : 1,284㎡
 - 나) 변경 : 증) 855㎡
 - 다) 변경후 : 2,139㎡
-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마. 사업기간 : 2001. 1 ~2004. 12. 31
- 바. 변경사유 : 부지확장
- 사. 사용할 토지 조서 : 별첨
- 사. 기타내용 : 변경없음
- 아. 기타 자세한 것은 도봉구청 가정복지과(☎ 901-54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도봉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 사업명 : 도봉구여성복지센터 건립

연번	재산의 표시(㎡)			편입 (㎡)	소유자		이해관계인		
	물건	지번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
1	대지	방학동 306-10	1,284	1,163	창동320	도봉구			
2	임야	방학동 313-63	787	787	창동320	도봉구			
3	구거	방학동 306-31	987	168	창동320	도봉구			
4	도로	방학동 306-40	21	21	창동320	도봉구			

◎도봉구고시 제2003-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지형도
면승인**

1.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제2003-29(2003. 4.30)호 및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제 2003-54(2003. 7.18)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901-5385~9) 및 지적과(☎ 901-5498~9)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도봉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가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198	6	국지 도로	127	쌍문동 424-2	쌍문동 422-137	일반 도로	-	'78.8.23	
기정	소로	3	201	6	국지 도로	106	쌍문동 505-2	쌍문동 422-139	일반 도로	-	'72.6.30	
변경	소로	3	201	6	국지 도로	30	쌍문동 505-2	쌍문동 422-1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폐지 (연장 76m)
기정	소로	3	354	6	국지 도로	60	쌍문동 334-6	쌍문동 388-45	일반 도로		'72.6.30	
변경	소로	3	354	6	국지 도로	8	쌍문동 111-1	쌍문동 111-1	일반 도로	-	-	일부구간폐지 (연장 52m)

나. 관계도서 : 별첨(계재생략)

◎도봉구고시 제2003-65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 제2003-44호(2003. 6.27)로 도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 토지,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의 시행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 방학동446-7 일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회복지시설
- 규모 : 1,320㎡
- 시설결정고시 : 도봉구고시제2003-44호 (2003. 6.27)
- 지형도면승인 : 도봉구고시제2003-44호 (2003. 6.27)

-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다. 고시기간 : 2003. 8.26 ~ 2003. 9.15
-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마.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 바. 위치도 : 도봉구청 사회복지과에 비치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901-53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위 치(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 명	주 소
	소 계		1,320		
1	방학동 446- 5	대	91	황서운	성동구 응봉동 191-16
2	방학동 446- 7	대	595	도봉구	
3	방학동 446-14	대	373	전주이씨 오산군계 종 중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46
4	방학동 446-15	입	7		
5	방학동 453-12	대	254	도봉구	

물 건 조 서

지 번 (방학동)	면 적	도시계획사항	소유자	사용현황	비 고
446- 7	595㎡	일반주거지역	도봉구	구립경로당	조립판넬식건물
453-12	254㎡	“	도봉구	나대지	카센터공간점유 (201㎡)
446- 5	91㎡	“	황서운	카센터	연와조 (54.12㎡)
446-14	373㎡	“	전주이씨임녕대군과 오산군계종중	나대지	주차장활용
446-15	7㎡	“	전주이씨임녕대군과 오산군계종중	나대지	주차장활용

⊙은평구고시 제2003-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지형도면작성**

1.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2-405호(2003. 7. 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결정(공공공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면은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350-138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신설

- 시설명 : 공공공지

- 위치 : 역촌2동 62-21 일대

- 면적

• 변경 : 증) 395.7㎡

• 변경후 : 395.7㎡

나. 결정사유 : 도심 대로변에 위치한 고 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대화 와 휴식, 만남의 장소인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의한 도 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코자 함.

다. 관련도서 : 게재생략

⊙은평구고시 제2003-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및지형도면작성**

1.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2-391호(2003. 7. 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하 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 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결정(사회복지시설)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시

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련도면은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350-138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신설

- 시설명 : 사회복지시설
- 위치 : 역촌2동 67-9 일대
- 면적
 - 변경 : 증) 552.7㎡
 - 변경후 : 552.7㎡

나. 결정사유 : 현재 단순 오락기능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로당으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어려워,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복지 센터화된 시범경로당을 건립하여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갈수록 다양화하고 높아지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코자 함.

다. 관련도서 : 게재생략

◎은평구고시 제2003-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 1. 사업명 : 서린연립재건축사업
- 2. 사업주체 주소 및 성명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143 서린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최성순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15-24호 주식회사 자선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종례

3. 사업시행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치 : 은평구 응암동 379-143 외17필지
- 대 지 면적 : 4,426.00㎡
- 건 축 면적 : 2,466.71㎡
- 연 면 적 : 10,734.19㎡
- 규모 : 지하1층,지상9층 1개동 아파트 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03. 6 ~ 2005. 1

5. 변경사항

구 분	변경내용		비 고 (도면No.)	
	변경 전	변경 후		
건축	대지면적	1,967.00㎡	4,426.00㎡	2,459㎡증가
	건축면적	692.60㎡	2,466.71㎡	1,774.11㎡증가
	건폐율	35.21%	55.73%	20.49%증가
	용적율	240.87%	220.29%	20.58%감소
	세대수	48세대	96세대	48세대증가

6.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및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 주축법 제33조의4항에 의한 의제 사항

7. 기타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주택과에서(☎ 350-1380~3)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마포구고시 제2003-81호

마포로1구역제22지구도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 1. 건설부고시 제1979-345('79. 9.21)호 및 제1980-412('80. 5.19)호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6-924('86.12.23)호로 재개발사업시

행인가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48('00. 3.13)호로 재개발구역변경 결정되고 마포구고시 제2000-75('00. 8.30)호로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된 마포로제1구역제2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 (주) 대표 임승남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제 34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이를 같은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의 명칭 : 마포로1구역 제22지구 도심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및 면적
 - (가)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23-3번지외 135필지
 - (나) 시행면적 : 11,347.5㎡ (대지 : 8,904.3㎡, 공공용지 : 2,443.2㎡)
- (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0-2 롯데건설(주) 대표 임승남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3. 8.30
- (5) 사업시행기간 : 1986.12.23 ~ 2003.12.31
-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건축면적 : 3,558.78㎡(건폐율 : 39.97%)
 - (나) 연면적 : 156,850.84㎡(용적률 : 1,029.67%)
 - (다) 층수 : 지상40층, 지하8층
 - (라) 용도 : 업무, 주거, 숙박, 판매
 - (마) 분양, 보류시설의 규모
 - 조합원분양 : 92,510.936㎡
 - 일반분양 : 64,339.904㎡

(바) 신설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서
1)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내역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1,335.7	1,335.7		
공덕동 257-21	대지	733.7	733.7	서울시	
공덕동 394-64	도로	351.0	351.0	서울시	
공덕동 409-10	도로	251.0	251.0	서울시	

2)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내역							
연번	지 번	지목	공공시설면적 (㎡)		소유자	공공시설 종 류	비 고
			공부상	편입			
	계		2,443.2	2,443.2			
1	공덕동 257-12	대지	85.0	85.0	롯데건설(주)	공원	
2	공덕동 257-13	“	15.5	15.5	롯데건설(주)	공원	
3	공덕동 257-14	“	56.9	56.9	롯데건설(주)	공원	
4	공덕동 257-15	도로	16.5	16.5	롯데건설(주)	공원	
5	공덕동 257-16	“	18.5	18.5	롯데건설(주)	공원	
6	공덕동 257-17	“	17.9	17.9	롯데건설(주)	공원	
7	공덕동 257-18	“	50.9	50.9	롯데건설(주)	공원	
8	공덕동 257-20	대지	42.3	42.3	롯데건설(주)	공원	
9	공덕동 257-28	“	87.9	87.9	롯데건설(주)	공원	
10	공덕동 257-31	“	127.4	127.4	롯데건설(주)	공원	
11	공덕동 257-32	“	8.5	8.5	롯데건설(주)	공원	
12	공덕동 257-34	“	33.9	33.9	롯데건설(주)	공원	
13	공덕동 257-35	“	130.3	130.3	롯데건설(주)	공원	
14	공덕동 257-36	“	57.9	57.9	롯데건설(주)	공원	
15	공덕동 257-37	“	155.9	155.9	롯데건설(주)	공원	
16	공덕동 257-38	“	4.0	4.0	롯데건설(주)	공원	
17	공덕동 257-82	“	62.7	62.7	롯데건설(주)	공원	
18	공덕동 257-83	“	5.0	5.0	롯데건설(주)	공원	
19	공덕동 257-84	“	146.0	146.0	롯데건설(주)	공원	
20	공덕동 257-85	“	4.6	4.6	롯데건설(주)	공원	
21	공덕동 396-47	“	43.0	43.0	롯데건설(주)	공원	
22	공덕동 396-114	“	49.0	49.0	장덕재	공원	
23	공덕동 396-115	“	37.0	37.0	롯데건설(주)	공원	
24	공덕동 396-116	“	69.0	69.0	롯데건설(주)	공원	
25	공덕동 423-34	“	1,108.6	913.6	롯데건설(주)	공원	
				195.0	강영수		
26	마포동 305-12	“	9.0	9.0	박성욱	공원	

◎강서구고시 제2003-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3-3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한 『 화곡본동 산37~58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의 저촉 보상토지 중 누락된 물건을 반영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 화곡본동 산37~58간 도로개설공사
-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61의184~58의14간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B)=8m, 연장(L)=47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6호
-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 일로부터 2년간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자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참조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조서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에 의함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토목과 (☎ 2600-6405 담당 : 공영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공사명 : 화곡본동 산37~58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화곡동 58-28	대	25	25	이만승	강서구 화곡동 58-10				
2	화곡동 58-30	도	1	1	이만승	강서구 화곡동 58-10				58-22 분할
3	화곡동 58-27	대	38	38	이종규	강서구 화곡동 58-11	우리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신정동지점)	근저당권	
4	화곡동 58-24	대	37	37	도현섭	강서구 화곡동 58-14				
5	화곡동 58-6	도로	868		강서구					
6	화곡동 748-4	구거	72		(국)	재정경제원				
7	화곡동 58-29	도로	2	2	이덕배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135 아주 A 106-501				
8	화곡동 58-25	대	25	25	이덕배	강서구 화곡동 58-14				
9	화곡동 58-26	대	23	23	양희두	영등포구 당산동2가164 현대아파트 101-1104	서울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1(당산동지점)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 공사명 : 화곡본동 산38~58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화곡동 58-28	대문	샷시및철재	1식		이만승	강서구 화곡동 58-10						
		담장	벽돌	H=2m L=8.1m									
		간판		1개									
		장미	관목류	6주									
		간판		1개									
		개나리	관목류	1주									
		대추나무	"	1주									
		조경석	"	4m									
2	화곡동 58-27	담장	벽돌	H=1.5m L=4m		이종규	강서구 화곡동 58-11						
		대문	철재류	1식									
		담장	벽돌	H=1.5m L=3m									
				라일락		D=14cm		이종규	강서구 화곡동 58-11				
				개나리		D=16cm							
				개나리		D=6cm							
				사철나무		D=10cm							
				회양목	관목류	6주							
				사철나무	"	1주							
				장미	"	1주							
				목련		D=23cm							
				조경석		4.5m							
3	화곡동 58-24	건물	스라브 /벽돌(1층)	3㎡	주거	도현섭	강서구 화곡동 58-14						
			스라브 /벽돌(지하)	3㎡	창고								
			계단	1식	계단								

물 건 조 서

□ 공사명 : 화곡본동 산38~58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	화곡동 58-24	대문	철재류	1식		도현섭	강서구 화곡동58-14				
		담장	벽돌	H=2.4m L=8m							
		담장	벽돌	H=1.7m L=1.5m							
		향나무		D=13cm							
		자목련		D=12cm							
		모과		D=14cm							
		백목련		D=16cm							
		리일락		D=16cm							
		사철나무	관목류	3주							
		회양목	관목류	5주							
		넝쿨장미	관목류	1주							
		개나리	관목류	1주							
조경석		11m									

◎강서구고시 제2003-90호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공고 제152호(1982. 4. 3)에 의
해 최초 결정된 우리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 같은법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 같은
법시행령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
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가. 취지 : 기능이 다소 미약한 도로를
폐지하고 폐지된 도로에 인접된 도
로를 확장하며 도로주변 지역을 정
비하기 위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4	국지도로	226	등촌동 639-15	등촌동 639-15	일반 도로	82.4.3	
기정	소로	1		10	집산도로	208	등촌동 666-9	등촌동 666-32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2		15	집산도로	208	등촌동 666-9	등촌동 666-32	일반 도로	"	

다. 관계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정비과(☎2600-6387)에 관련도서 비치)

◎구로구고시 제2003-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지형도면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44호(2000. 8. 2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변경결정된 구로구 개봉본동 136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 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860-2954~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구로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지형도면작성 조서

- 변경
- 시설명 : 주차장

- 위치 : 구로구 개봉본동 136번지 일대

- 면적
- 기정 : 1,789㎡
- 변경 : 증)2,001㎡
- 변경후 : 3,790㎡

- 최초결정일 : '99. 5. 1

나. 관계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영등포구고시 제2003-47호

유어행위의시기·대상·지역등제한

내수면어업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등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영등포구청장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 가. 명칭 : 영등포구 한강내수면 유어행위 제한지역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강호안 및 내수면

※ 붙임도면 참조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가.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 2003년 9월 1일 ~ 2008년 8월 31일

나. 제한되는 유어행위

1) 유어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아래구역에서의 유어행위 금지

○여의도 유어행위금지구역

- 위치 : 여의도동 원효대교남단(①)~②~③~④~서강대교남단(⑤)를 연결한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붙임도면참조)

- 면적 : 1,774.000m²
- 금지구역직각좌표

번호	X	Y
①	194,609	446,861
②	195,375	447,371
③	194,715	448,225
④	193,420	448,540
⑤	193,118	447,961

○선유도 유어행위 금지구역

- 위치 : 선유도주변(당산동(①~②)~양화동(③~④))한강 호안 및 내수면(*서측 및 동측, 남측은 호안에서 50m거리까지,북측은 마포구와의 구계 까지)(붙임도면 참조)

- 면적 : 187.000m²
- 금지구역 직각좌표

번호	X	Y
①	191,330	448,665
②	191,440	448,835
③	190,900	449,510
④	190,610	449,155

○양화 유어행위 금지구역

- 위치 : 양화동성산대교남단상류 350m(①)~②~③~④~안양천 합류부 상류150m(⑤)를 연결한

한강 호안 및 내수면(붙임도면 참조)

- 면적 : 453.000m²
- 금지구역 직각좌표

번호	X	Y
①	190,373	449,314
②	190,670	449,670
③	190,025	449,985
④	189,645	450,305
⑤	189,431	450,021

※ 좌표 판독기준

- 투영원점 : 중부원점(동경127도, 북위38도)
(*원점의 좌표는 X=200,000미터, Y=500,000미터임)

- 도법 : 직각좌표(TM : Transverse Mercater)

- 독취지형도 : 축척 1/1000, 도엽명 : 서울

2) 유어행위로 은어를 포획·채취하는 행위 금지

3) 유어행위 도구(어구)를 1인당 4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금지

4) 갈고리 모양의 도구(어구)를 사용한 낚시행위(일명홀치기)금지

다. 유어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 서식지 조사등은 제외

3. 제한사항을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

가. 금지행위 위반자 :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나. 근거규정 : 내수면어업법제18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유어질서를 위반
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관리기관 : 영등포구청(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나. 기타. 유어 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제한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
항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또는 서울특별시한강시
민공원사업소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
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생태기획
과(☎ 02-3780-0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고시 제2003-94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

1. 우리구에서 입안한 아래 도시계획시설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
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820-981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형
도면 조서

○신설

- 시설명 : 하수도
- 위치
 - 기점 : 신대방동 362-21
 - 종점 : 신대방동 362-4
 - 주경과지 : 동작우체국

- 연장 : 100m
- 면적 : 300㎡
- 비고 : 폭3m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
도면 조서

○신설

- 시설명 : 공공공지
- 위치 : 노량진동 329-12호
- 면적
 - 변경 : 증184㎡
 - 변경후 : 184㎡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조서

○기정

- 규모
 - 등급 : 중로
 - 류별 : 2류
 - 폭원 : 15m
- 기능 : 국지도로
- 연장 : 866m
- 기점 : 노량진동 310-148
- 종점 : 노량진동 215-334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비고 : 시·종점 변경 없이 시설(도
로)의 일부구간 선형조정(일부 폐지)

○변경

- 규모
 - 등급 : 중로
 - 류별 : 2류
 - 폭원 : 15m
- 기능 : 국지도로
- 연장 : 866m
- 기점 : 노량진동 310-148
- 종점 : 노량진동 215-334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비고 : 시·종점 변경 없이 시설(도
로)의 일부구간 선형조정(일부 폐지)

라.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동작구고시 제2003-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제33조 제1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주체
 - 가. 대방·우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박기회(동작구 신대방동 697-30)
 - 나. (주)현진종합건설 대표 전상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6)
3. 시공자 : (주)현진종합건설 대표 전상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6)
4. 사업위치 및 변경 내용.
 - 가. 사업위치 : 동작구 신대방동 697-28호 외5필지
 - 나. 사업계획변경 내용
 -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변경 및 조경 식재, 수량 변경
 - ※ 사업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 : 2001. 8. ~ 2003. 9
6.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 생략(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 ☎ 820-9776)

⊙서초구고시 제2003-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3조 제1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명 : 방배2-4지구재건축사업
2. 사업주체 : 방배2-4지구재건축주택조합 (대표 김순중)
 - 사무소소재지 : 서초구 방배본동 788-16번지
3. 시공자 : 현대산업개발(주) 대표 이방주 (공동사업주체)
 - 사무소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679-4번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위치 : 서초구 방배본동 788-12번지의 66
 - 나. 대지면적 : 7,955.40㎡
 - 다. 건축면적 : 2,216.464㎡
 - 라. 연 면 적 : 29,327.546㎡
 - 마. 건설규모 : 지하 2층, 지상 9~15층, 아파트 2개동 1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각호의 해당관계법규
6.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무 상 양도자	귀속 관청	비 고
	등급	류별	폭원 (M)									
기정	소로	3류	6~8	국지 도로	97	194	방배1동 788-1	방배1동 2111	일반 도로	방배2-4지구 재건축조합	서초구	사업부지에 한함
변경	소로	2류	8~10									
기정	소로	3류	6	국지 도로	62	124	방배1동 788-1	방배1동 788-14	일반 도로	방배2-4지구 재건축조합	서초구	사업부지에 한함
변경	소로	2류	8									
기정	소로	3류	6	국지 도로	114	114	방배1동 788-14	방배1동 788-39	일반 도로	방배2-4지구 재건축조합	서초구	사업부지에 한함
변경	소로	3류	7									

7. 사업시행기간 : 2003.10. ~ 2005. 1. (예정)
 ※ 관계도면 : 서초구청 건축과(☎570-6390~3)에 비치하고 보입니다.

◎서초구고시 제2003-9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초구 방배동 327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동법률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률 제91조, 동법률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 도시정비과(☎570-6385)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3274 외 2필지

나.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사업(사회복지시설)

다.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방배종합사회 복지관

라. 사업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변경없음) : 11,953.6㎡
- 건축연면적(변경없음) : 3개동 14,817.63㎡
- 용도변경(172.20㎡) : 복지관동 지하1층 주차장 일부→사회복지시설

마.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323번지 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이사장 위 정

바.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02. 8. 5 ~ 2003. 7.31
- 변경 : 2002. 8. 5 ~ 2003.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아.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 생략 (서초구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서초구고시 제2003-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33조제1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1. 사 업 명 : 우성4차 재건축사업
2. 사업주체 : 우성4차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최세형(서초구 서초1동 1444-7) LG건설주식회사 대표 김갑렬(중구 남대문로5가 537)
3. 시공자 : LG건설주식회사 대표 김갑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위치 : 서초구 서초1동 1444번지 7호
 - 나. 대지면적 : 11,878.60㎡
 - 다. 건축면적 : 2,440.87㎡
 - 라. 연 면 적 : 49,152.78㎡
 - 마. 건설규모 : 지하 2층, 지상 12~18층, 아파트 4개동 184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각호의 해당 관계법규
6. 사업시행기간 : 2003. 6 ~ 2006. 8. (예정)
 - ※ 관계도면 : 서초구청 건축과(☎ 570-6390~3)에 비치하고 보입니다.

◎강남구고시 제2003-73호

도시계획사업(통신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1. 수서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서고시 제65호('90. 3.1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1996-207호('96. 7.27)호로 완료공고 되

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01-109(2001.12.10)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건축허가 의제 처리된 시설이나, 용도변경이 수반됨으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강남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 도시계획사업(통신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수서동 734번지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사업(통신시설)
 - 명칭 : 수서전화국
 -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 성명 : (주)케이티 대표 이용경
 - 라. 사업시행규모
 - 당초
 - 건축면적 : 1,674.22
 - 연면적 : 14,865.38
 - 층수 : -2/7
 - 건폐율 : 33.37%
 - 용적률 : 201.90%

○ 변경

- 건축면적 : 1,674.22
- 연면적 : 14,865.39
- 층수 : -2/7
- 건폐율 : 33.37%
- 용적률 : 201.90%

- 사유
 - 연면적 : 소수점이하 계산착오

- 용도변경 : 엘리베이터실 삭제로 기존 층별 용도면적 증가되나 실 건축면적 증가는 없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1.12.10~2004. 1.31

바. 공사설계도서 : 강남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강남구고시 제2003-7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2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28호, 2003. 7.29)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722일대
- 용도지역
 - 지정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변경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면적 : 4,946.2㎡
- 비고 : 2003.7.1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다. 열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2104-1834) 및 지적과(☎ 2104-157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고시 제2003-59호

도시계획시설(셋팽이어린이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건설부고시 제364호(1981. 9.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6호(1989. 3. 8)로 조성계획 결정된 송파구 가락동170-6번지 셋팽이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셋팽이어린이공원
2.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0-6번지
3. 면적 : 1,500.7㎡
4. 도시계획시설(셋팽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별항
5. 도시계획시설(셋팽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도면 : 게재 생략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410-3395~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셋팽이어린이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송파구 가락동 170-6)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500.70	1,500.70				15	1,500.70	1,500.70	1	73.0	146.0	12	시설율59.46%
기 반 시 설	소계	461.75	461.75				314.12	314.12					감122.63㎡
	도로	55.93	55.93				122.38	122.38					증66.45㎡
	광장	405.62	405.62				191.74	191.74					감189.08㎡
조경시설						1							감1개소
휴양시설						8	220.28	73.00	1	73.0	146.0	6	공작물 감2개소
유희시설	357.90	357.90				1	357.90	357.90				1	
운동시설						1						1	
관리시설						4						4	
녹지 및 기타	681.25	681.25					608.4	608.4					감72.85㎡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총계				1,500.7	1,500.7					15			1,500.7	1,500.7				73.0	146.0	12		
기반 시설	소계			436.75	436.75								411.15	411.15								
	도로		가락 170-6	55.93	55.93							가락 170-6가	122.38	122.38								
	광장	가	가락 170-6	380.82	380.82						가	가락 170-6	318.77	318.77								
조경 시설	소계									1												
	파고라	①	가락 170-6							1												
휴양 시설	소계									8			220.28	73.0				73.0	146.0	6		
	경로당										1	가락 170-6	220.28	73.0	RC	지상2		73.0	146.0			
	벤치	②	가락 170-6			목재				8	②	가락 170-6			목재					5		
	사각 정자										⑨	가락 170-6			목재					1		
유희 시설	소계			357.90	357.90					1			357.90	357.90						1		
	어린이 놀이터	나	가락 170-6	357.90	357.90						나	가락 170-6	357.90	357.90								
	조합늘 이대	③	가락 170-6	47.50	47.50	목재				1	③	가락 170-6	47.50	47.50	목재					1		
	사장	④	가락 170-6	310.40	310.40	모래					④	가락 170-6	310.40	310.40	모래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소계								1									1		
	평행봉 ⑤	가락 170-6				철재			1	⑤	가락 170-6			철재				1		
관리 시설	소계								4									4		
	공원등 ⑥	가락 170-6				철재			2	⑥	가락 170-6			철재				2		
	안 내 표지판 ⑦	가락 170-6				목재 철재			2	⑦	가락 170-6			목재 철재				2		
	웬스 ⑧	가락 170-6				철재	140.8m			⑧	가락 170-6			철재	140.8m					
녹지 및기타	소계			681.25	681.25									608.4	608.4					
	녹지대 다	가락 170-6		681.25	681.25					다	가락 170-6			608.4	608.4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소 로	계			(15.53)	(55.93)				
변 경					36.39	122.38				
당 초		3류	1	(3.2)	(3.8)	(12.16)	진 입 로	7.8m도로	광 장	
변 경		3류	1	3.2	28.96	92.66	진 입 로	7.8m도로	5.8m도로	
당 초		3류	2	(3.2)	(4.3)	(14.05)	진 입 로	5.8m도로	광 장	
폐 지										
당 초		3류	3	4.0	7.43	29.72	진 입 로	5.8m도로	늘이터	

◎송파구고시 제2003-60호

**도시계획시설(송파나루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15호(2003. 7.25)호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송파나루공원의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1.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송파나루근린공원 - 서호)
2. 면적 : 168,648.5㎡
3. 지형도면 승인조서

(단위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비 고
		바닥연적	연면적	바닥연적	연면적	바닥연적	연면적	
유희시설	잃어버린대륙	1,322	4,212	1,103.4	3,404.55	감 218.6	감 807.45	건축면적 감소
교양시설	인도의 성	396	814	396	877.51	-	증 63.51	금회추가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비치도서와 같음)
5.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410-3395~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 암사동 135~132-2간
- 나. 사업명 : 구암서원진입도로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 폭 6m, 연장 123m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자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따로붙임)
-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및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 아. 관계도서는 및 서류 비치 : 도시계획도로과(☎ 480-1405~6).

◎강동구고시 제2003-8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 제2003-21호(2003. 3.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되고 서울특별시강동구 공고 제2003-109호(2003. 4.25)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 열람·공고, 강동구고시 제2003-38호(2003. 5.26)로 실시계획인가고시한 강동구 암사동 135~132-2간(구암서원진입도로개설공사)의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률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행차

자 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0

○사업의 종류 : 구암서원진입로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강동구 암사동 135	전	212	전	정영	서울시 관악구 봉천3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02-404				
	변경	강동구 암사동 135-4	전	212	전	정영	서울시 관악구 봉천3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02-404				
2	기정	강동구 암사동 255-1	전	19	전	김진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9-12 상록빌라 201호	김진옥	분당구 수내동 27 양지마을 522-901	근저당	(김진옥:케이 저산업에 근저당설정)
								김진술	인천 남구 주안동 19-2 대동아파트 나-206	근저당	
								김태봉	경기도 이천군 신둔 면 인후리 67	근저당	
								정휴상	도봉구 쌍문동 401-15	근저당	
								김정녀	둔촌동 70-106 케이 아이디아파트 413	근저당	
								김준환	성동구 중곡동 150-185	근저당	
	은건기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54 파크타운 117-301		1/4 소유							
	박균형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335 장미마을 825-1801		1/4 소유							
김혜숙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0-1502		1/4 소유								
변경	강동구 암사동 255-3	전	19	전	김진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9-12 상록빌라 201호	대한보증보 험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	전부 가압류	1/4 소유	
							역삼 세무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90-1	전부압류		

일련 번호	구분	지목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2					김진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9-12 상록빌라 201호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1		압류	1/4 소유
							카이저산업 (주)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8-1(69브릭2롯데)		근저당	
							김진옥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21-6 가락2차 쌍용아파트 101-703		근저당	
							김진술	인천시 연수구 옥련2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09-301		근저당	
							김태봉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67		근저당	
							정휴상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695-12		근저당	
							김정녀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555 둔촌신동아파트 102-1608		근저당	
							김준한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609 삼민아파트 405		근저당	
					은전기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54 파크타운 117-301			1/4 소유		
					박균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5 장미마을 825-1801			1/4 소유		
김혜숙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0-1502			1/4 소유							
3	기정	강동구 암사동 134	전	71	전	최광동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9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0	압류	
	변경	강동구 암사동 134-4	전	71	전	최광동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9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0	압류	
4	기정	강동구 암사동 133-3	전	242	전	맹무제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66 라이프중계동아파트 108-1005				1/2 소유
						임성택	서울시 은평구 갈현1동 276-40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0	압류	1/2 소유
	변경	강동구 암사동 133-12	전	242	전	맹무제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66 라이프중계동아파트 108-1005				1/2 소유
						임성택	서울시 은평구 갈현1동 276-40				1/2 소유

수용 및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사

- 사업시행자 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0
- 사업의 종류 : 구암서원진입로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및수량 (㎡,㎡,개)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기정	강동구 암사동 134-2	건물 건물 수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나무	3㎡ 2㎡ 2주	창고 창고 관상수	-					
	변경	강동구 암사동 134-2	농업용 비닐하우스	쇠파이프조 보온덮개줍입구:목재	3㎡	창고	김관태	서울시 강동구 암사3동 267-11				
		강동구 암사동 134-2	농업용 비닐하우스	쇠파이프조 보온덮개줍입구:목재	2㎡	창고	이정상	서울시 강동구 암사4동 486-34				
		강동구 암사동 134-2	아카시아 나무	50년생 H:35m B:0.6m W:15m	4주		서울시					
2	기정	강동구 암사동 134	수목	나무	3주	관상수	최광동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9				
	변경	강동구 암사동 134-4	아카시아 나무	50년생 H:35m B:0.6m W:15m	1주		최광동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9				
3	기정	강동구 암사동 134-1	건물 수목	비닐하우스 나무	5㎡ 8주	농작물재배 관상수	-					
	변경	강동구 암사동 134-1	농업용 비닐하우스	쇠파이프조 보온덮개줍	20㎡	농막	오덕영	서울시 강동구 암사1동 468 대덕하이츠빌 301호				
		강동구 암사동 134-1	아카시아 나무	15년생 H:5m B:0.4m W:3m	8주		강동구					
4	추가	강동구 암사동 135-4	아카시아 나무	20년생 H:12m B:0.25m W:10m	1주		정 영	서울시 관악구 봉천3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02-404				
5	추가	강동구 암사동 133-12	작물 (들깨)		242㎡		이정상	서울시 강동구 암사 4동 486-34				

구 공 고

◎종로구공고 제2003-326호

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수리내역을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종 로 구 청 장

가. 건설업등록 사항 주기적 신고 수리내역

- 상호 : 동양방수공업(주)
- 대표자 : 허은구
- 소재지 : 관철동 252번지
- 보유업종 : 미장방수공사업
- 등록번호 : 서울-76-3-05
- 처리일자 : 2003. 8.20

- 상호 : 동성기업사
- 대표자 : 정남식
- 소재지 : 관수동 162번지
- 보유업종(등록번호)
 - 난방시설시공업2종(종로-00-28-2-68)
 - 가스시설시공업3종(종로-02-27-3-01)
- 처리일자 : 2003. 8.20

- 상호 : 효자건축
- 대표자 : 김해열
- 소재지 : 누하동 36-1
- 보유업종 : 난방시설시공업2종
- 등록번호 : 종로99-28-2-24
- 처리일자 : 2003. 8.20

- 상호 : 타이가구조건설(주)
- 대표자 : 이연근
- 소재지 : 연건동 187-1

- 보유업종 : 강구조물설치공사업
- 등록번호 : 94-서울-21-50
- 처리일자 : 2003. 8.20

- 상호 : 삼표산업(주)
- 대표자 : 김 호
- 소재지 : 수송동 80 코리안리빌딩9층
- 보유업종(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92-서울-10-44)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92-서울-07-08)
- 처리일자 : 2003. 8.20

◎종로구공고 제2003-327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등록되었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종 로 구 청 장

가. 등록일자 : 2003. 8.21.

나. 전문건설업 등록발급 내역

- 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등록번호 : 종로03-10-01
- 상호 : (주)일원건설
- 대표 : 박일령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54658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296-1 7층
- 등록일 : 2003. 8.21

- 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등록번호 : 종로03-10-02
- 상호 : (주)동일에스알씨
- 대표 : 김명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2821927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94-1 4층

○ 등록일 : 2003. 8.21

2003년 8월 30일

종 로 구 청 장

◎종로구공고 제2003-330호

전문건설업행정처분내역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행정심판법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내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행정처분건설업체: 남일설비외31개소
(행정처분내역참조)

나. 행정처분내역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1	남일설비 (최승환)	신영동 10-14	· 난방시설시공업 2종 · 종로82-28-3-134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2	대립정수설비 (김영일)	홍파동 10-14	· 난방시설시공업1종 · 종로9-28-12-3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3	대진설비 (황용희)	창신2동 643	· 난방시설시공업2종 · 종로99-28-2-04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4	대한설비 (송익재)	이화동 11-2	· 난방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종로99-28-2-54 · 종로99-27-3-15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5	대흥설비 (김성환)	화동 118-1	· 난방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종로93-07 · 종로248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6	독립문난방 (임병환)	무악동 47-9	· 난방시설시공업2종 · 종로99-28-2-20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7	동명설비 (현인섭)	창신2동 583-48	· 난방시설시공업2종 · 종로99-28-2-32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8	동신엔지니어링 (김채근)	승인2동 206-1	· 난방시설시공업1종 · 종로97-28-1-309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9	미래설비 (함영호)	송인동 682	· 난방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종로99-28-2-60 · 종로99-27-3-17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10	범은설비 (박범희)	홍지동 122-23	· 난방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종로85-28-1-177 · 종로98-27-3-17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11	봉산석재 (신현기)	관수동152-1	· 석공사업 · 종로98-04-01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12	부국개발(주) (김호영)	전지동 68-5 서흥빌딩15층	· 보링그라우팅 · 비계, 구조물해체 · 상하수도 · 철근콘크리트 ·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종로99-1401 · 종로98-07-01 · 종로99-13-06 · 종로98-10-01 · 전남82-02-223 · 종로99-16-02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건설업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 · 지방세계납으로인한 면허취소요청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13	부암설비 (박광수)	부암동 251-4	· 난방시설시공업 2종 · 종로99-28-2-08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14	부암설비공사 (조재성)	부암동 251-4	· 난방시설시공업 2종 · 종로99-28-2-07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15	빌텍스 (윤관준)	공평동 100 제일은행 빌딩20층	· 실내건축공사업 · 경남-99-01-33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16	삼양종합설비 (강명수)	통인동 158	· 난방시설시공업2종 · 종로99-28-2-18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17	삼연건설 (조종연)	송인동 682	· 난방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종로99-28-2-60 · 종로99-27-3-17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18	선경종합설비 (김무송)	청진동 285-1	· 난방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종로99-28-1-49 · 종로93-11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19	신광기업 (오상연)	관철동 37-2	· 난방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시공업 · 종로301호 · 종로96-4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20	신일설비 (최상진)	누하동 220	· 난방시설시공업 2종 · 종로99-28-2-19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21	원빛건설 (최성구)	신문로 1가 7-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토공사업 · 96-서울-10-106 · 96-서울-02-85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기술자 퇴직및취업사항미보고 · 지방세 체납으로인한 면허취소 요청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22	이화보일러 (박관권)	이화동 10-12	· 난방시설시공업2종 · 종로99-28-2-22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23	정신기공사 (김덕배)	송인2동 204-11 송인상가@310호	· 난방시설시공업 1종 · 종로89-28-1-247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24	성신보일러 (김광태)	부암동 254-2	· 난방시설시공업2종 · 종로99-28-2-21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25	진웅건설 (변관출)	홍파동 52-28	· 토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94-서울-02-307 · 종로-00-10-01 · 94-서울-07-98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기술자 경력허위신고 · 지방세 체납으로 면허 취소요청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26	한국설비공사 (김만복)	평창동 290-6	· 난방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시공업3종 · 종로94-6 · 종로280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27	한양가스 (김영치)	관수동 130-1	· 가스시설시공업 2종 · 종로97-27-2-16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28	현대종합설비 (조창준)	무악동 46-915	· 난방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시공업3종 · 종로264 · 종로94-12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29	협신상사 (김성근)	관철동 35-2	· 난방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시공업3종 · 종로9 · 종로97-2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30	협진설비 (전민수)	승인2동 1401 장학사 빌딩 302호	· 난방시설시공업2종 · 종로98-28-03-320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31	형제설비 (윤태양)	신영동 131-1	· 난방시설시공업2종 · 종로99-28-2-05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32	태릉기전 (최미민)	청진동 6 대명빌딩 701호	· 기계설비공사업 · 95-서울-12-38	·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 소재불명	· 2003.08.25 건설업등록말소

다. 위반사항 :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미 이행

라.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동법 제83조 제6호

◎종로구공고 제2003-331호
건설업등록반납수리내역
 전문건설업등록 반납수리 내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종로구청장

가. 전문건설업등록 자진반납 수리내역

- 업종 및 등록번호
 - 실내건축공사업(95-서울-01-71)
- 상호 : (주)플랜아트
- 법인등록번호 : 110111-1325326
- 대표 : 민경률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신영빌딩4층
- 등록말소수리사유 : 자진반납
- 수리일자 : 2003. 8.26
- 업종 및 등록번호
 - 실내건축공사업(91-서울-01-04)
- 상호 : (주)오실내건축
- 법인등록번호 : 110111-0754534
- 대표 : 최문희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
- 등록말소수리사유 : 자진반납
- 수리일자 : 2003. 8.26
- 업종 및 등록번호
 - 가스시설시공업1종(종로20-27-1-13)
- 상호 : 거영가스산업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63837
- 대표 : 허미숙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12번지
- 등록말소수리사유 : 자진반납

- 수리일자 : 2003. 8.26
- 업종 및 등록번호
 - 시설물유지관리업(서울97-30-07)
- 상호 : 삼표산업(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73314
- 대표 : 김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146-1
- 등록말소수리사유 : 자진반납
- 수리일자 : 2003. 8.26

나.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82조

◎중구공고 제2003-326호

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수리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중 구 청 장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수리내용
 - 업종 : 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번호 : 중구00-20-01
 - 업체명 : (주)태양성
 - 소재지 : 중구 신당동 67-166
 - 대표자 : 김준환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92753
 - 신고수리일자 : 2003. 8.25
-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번호 : 91서울-01-163
- 업체명 : (주)유니온프로세스
- 소재지 : 중구 필동1가 21-8
- 대표자 : 윤찬용
- 법인등록번호 : 110111-0400468
- 신고수리일자 : 2003. 8.25

- 업종(등록번호)
 - 시설물유지공사업(중구03-29-01)
 - 실내건축공사업(중구99-01-08)
 - 철물공사업(중구01-11-03)
- 업체명 : (주)신성건축디자인
- 소재지 : 중구 장충동2가 112-27
- 대표자 : 김윤중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69442
- 신고수리일자 : 2003. 8.25

- 업종 : 난방시공업제2종
- 등록번호 : 98-28-3-3
- 업체명 : 약수종합공사
- 소재지 : 중구 신당2동 386-75
- 대표자 : 남기원
- 주민등록번호 : 470116-*****
- 신고수리일자 : 2003. 8.25

-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번호 : 중구99-01-12
- 업체명 : (주)덕양티앤에스
- 소재지 : 중구 정동 34-7
- 대표자 : 노경춘
- 법인등록번호 : 110111-1558258
- 신고수리일자 : 2003. 8.25

◎용산구공고 제2003-312호

건설업등록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 등록사항
 - 업체명 : (주)헨디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0398572
 -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번호 : 부산-01-01

- 대표자 : 손석진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 수리일 : 2003. 8.26

- 업체명 : (주)레노시스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1537616
-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번호 : 용산99-01-8
- 대표자 : 김대환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4-14
- 수리일 : 2003. 8.26

◎용산구공고 제2003-313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처리 하였기에 동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 등록처리 내역
- 업종 : 가스시공업 제1종
- 등록번호 : 용산 03-27-1-1
- 등록연월일 : 2003. 8.25
- 상호 : 삼우엔지니어링
- 대표자 성명 : 김용기
- 주민등록번호 : 610225-*****
- 영업소재지 : 서울 용산구 후암동 131-2

◎광진구공고 제2003-31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
열람**

1. 서울시 광진구고시제15호(2001. 5. 7.)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광장동 530-2호 주변(위 커힐길 진입 가각정비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 450-1405)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내용

-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 : 광장동531-2 ~530-1호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 광장동 위커힐길 진입 (광장동 531-2호주변) 가각정비공사
- 사업의 규모 : 폭 15m, 연장 34m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5년간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다.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 450-1405~7)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 업 명 : 위키힐길 진입(광장동 531-2호 주변) 가각 정비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모지번)
					성명	주 소	주소	성명	고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광장동 531-2	전	43.0	43.0	김 성 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28 장성마을 101-902	중구 을지로2가 181 (남대문 지점)	한국외환은행	근저당	
2	광장동 530-96	대	114.0	114.0	김 성 휘	"	"	"	"	광장동 530-3
3	광장동 531-3	전	2.0	2.0	이 영 복	광진구 구의동 23-3				
4	광장동 530-95	대	41.0	41.0	이 영 복	"				광장동 530-1
5	광장동 530-78	도	684.0	440.0	서울시					
6	광장동 530-76	도	31.0	31.0	광진구					

물건(지장물)조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 업 명 : 위키힐길 진입(광장동 531-2호 주변) 가각 정비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용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주소	성명	고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530-96	담장	세멘 브릭	h=1.8m L=25m		김성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2228 장성마을101-902	중구 을지로2가 181 (남대문 지점)	한국의 환은행	근저당	
		오동나무	R15	1주		"	"	"	"	"	
2	530-95	계단	철평석	B=1.0m L=6.0m		이영복	성동구 구의동 23-3				
		외등	철재	1등		"	"				
		화단	적벽돌	h=0.4~0.9m b=0.6×8.8m		"	"				
		배수맨홀	Ø648	1식		"	"				
		회양목	W 0.3×0.3	30주		"	"				
		자산홍	W 0.4×0.4	40주		"	"				
		바닥재 (타일)	오나멘 트타일	36㎡		"	"				

Ⓞ동대문구공고 제2003-378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동 대 문 구 청 장

○ 등록현황

- 업종 : 난방시공업2종
- 등록번호 : 동대문-03-28-2-8
- 상호 : 고허종합설비
- 법인등록번호 : 550806-*****
- 대표자 : 이홍천
- 영업소소재지 : 동대문구 회기동 45-70
- 등록일자 : 2003. 8.20

◎동대문구공고 제2003-379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동 대 문 구 청 장

○등록현황

- 업종 : 난방시공업1종
- 등록번호 : 동대문-03-28-1-2
- 상호 : 한화엔지니어링
- 주민등록번호 : 671205-*****
- 대표자 : 정채원
- 영업소 소재지 : 동대문구 답십리4동 16-18
- 등록일자 : 2003. 8.20

◎성북구공고 제2003-37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경원제4녹지조성)실시
계획인가(2차)를위한열람**

1. 서고 제429호('78. 8.30)로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되고, 서고 제497호('78. 9.22)로 지적고시되었으며 성북구고시 제2002-139호(2002.12.16)로 1차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도시계획사업(경원제4녹지 조성)에 대하여 석관동 80-2 일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저촉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920-3395) 및 석관제1동사무소에 (☎ 957-4011) 비치하고 있으며, 동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

시면 열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80-2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경원제4녹지 조성)
- 다. 사업시행면적 : 총 7,000㎡중 금회시행면적 1,417㎡
-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 ~ 2004.12.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영업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별첨
- 사. 열람기간 : 공고일 ~ 2003. 9.15
- 아. 열람장소 : 성북구 공원녹지과(☎ 920-3395~8), 석관1동사무소(☎ 957-4011~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 및 영업권 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사업(경원제4특지 조성)

가. 토지조서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석관동 80-2	대	164	164	조우현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18 한진그랑빌@ 110-2502			
석관동 81-2	대	25	25	김점성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94	성북구청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411번지	압류
석관동 82-5	대	940	940	조우현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18 한진그랑빌@ 110-2502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석관동 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석관동 83-5	도로	288	288	조우현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18 한진그랑빌@ 110-2502			

나. 물건조서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석관동 83-5외 3필지	정비소	스리트지붕	238	조우현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18 한진그랑빌@ 110-2502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석관동 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우란 자동차
	정비소	브릭조 천막지붕	83						
	화장실	브릭조 판넬지붕	9						
	정화조	FRP25인용	1식						
	사무실	브릭및경량철골조 스리트지붕	77						
	포 장	콘크리트	2,458						
	담 장	브릭	1식						
	정비공장	철골조선라이트 및 합석지붕	726						
	식 당	브릭조 슬레이트위 천막	68						
	부란자실	브릭조 합판위 천막	25						
	창 고	판넬조 판넬지붕	25						
	창 고	브릭조슬레이트지붕	8.8						
	탈의실	브릭조슬레이트지붕	10						
	검사실	sus기둥및판넬조	32						
	간이정비실	철골조천막지붕	40						
대 문	철 재	2식							
지하수		1식							

다. 영업권 조서

영업장소	물건의 종류	수량	상호	영업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석관동 83-5외 3필지	열처리실	1식	우란 자동차	조우현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18 한진그랑빌@ 110-2502	209-22-95178	
	도장실	1식					
	검사대	1식					
	용접기	1식					
	자재및부품창고(조립식)	1식					
	검사통제실및전자제어기계	1식					
	컴퓨터사	4식					
	흡진기	3식					
	열풍기	3식					
	프레스	1식					
	카리프트	4식					
	대형에어리카	1식					
	화장실(조립식)	1식					
	출고사무소	1식					
	간판	5식					
	기타 기계	1식					
동력	1식						

◎성북구공고 제2003-373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내역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 행정처분내역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법인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토공사업 (성북-98-02-0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성북-99-13-0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성북-99-10-05)	가현건설(주) (110111-1598270)	김행용 외 1인	성북구 길음동 543-75	등록말소 (2003.08.25)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2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6호
토공사업 (92-서울-02-140)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양천-98-07-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2-서울-10-197)	대훈건설(주) (110111-1254195)	정대성 (560313-*****)	성북구 보문동4가 20 통광빌딩 405호	등록말소 (2003.08.25)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2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6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성북-98-30-1)	우일건설	하정학 (670630-*****)	성북구 삼선동5가 272	등록말소 (2003.08.25)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2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6호
창호공사업 (성북-97-08-2)	일영유리판매 (주)	노동섭 (410208-*****)	성북구 정릉동 888-1	등록말소 (2003.08.25)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2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6호
토공사업 (92-서울-02-311)	보광실업(주) (110111-0651011)	김범수 (770519-*****)	성북구 보문동6가 183 1층	영업정지 6개월 (2003.8.25~ 2004.2.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2호
<p>◎강북구공고 제2003-376호 도시정비계획(안)공람 1. 미아제10-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안)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 합니다.</p>			<p>2. 정비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에 강북구청 주택과, 미아5동사무소, (가칭)미아제10-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위원회사무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 2003년 9월 18일</p>			

나. 공람내용
1) 주요내용

사업명칭	구역위치	구역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임대주택 건설계획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강북구 미아 5동 476번지 일대	16,659.09㎡	60% 이하	211.73% 이하	최고높이 33.1m	최고층수 12층	해당없음

- 2)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 이내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도로 등) 정비에
관한 계획 :
가) 도로 결정내역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사용형태	연장(m)	위 치		비 고
	노 형	세분류	번 호	폭원(m)				기 점	중 점	
신설	소로		1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261-652	476-244	미아10구역 계획도로연계
신설	소로		2	8	국지도로	일반도로		476-125	476-146	인접도로확보

나) 공공시설 결정내역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 분 류			
신설	공공용지	녹지 1	1261-158번지 일대	630.00	
신설	공공용지	녹지 2	1261-223번지 일대	210.00	

4) 기존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미아제10-1 주택재개발	16,659.09	-	-	미아5동 476번지일대	128	-	-	-	128	

- 5) 분할시행계획 : 없음
 - 6)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도서 참조
 - 7) 건축부지의 정비에 관한 계획 : 관계도서 참조
 - 8) 세입자 공급용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9) 주택의 규모 및 비율에 관한 계획 : 관계도서 참조
- 다. 관계도서 : 강북구청 주택과, 미아5동 사무소, (가칭)미아제10-1구역주택재개발사업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공고 제2003-339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에 따른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91호(2003. 4. 1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3-24호(2003. 4.18)지적승인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이용및계획에 관한법률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물건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시는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기타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 가. 사업의 시행지 : 도봉구 창동 산48-4번지 일대
-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초안산근린공원조성)시행
- 다. 면적 또는 규모 : 편입지역내 물건보상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4.12.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및 소유권의 권리명세
 - 재산의 표시
 - 물건 : 임야
 - 지번 : 창동 산48-4 (구지번 산 107-222)
 - 지적 : 17,645㎡
 - 편입 : 영업시설 1식(공장 84.357㎡내)
 - 소유자
 - 성명 : 오흥인
 - 주소 : 도봉구 창동 628-18 원산빌라 401호
-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아.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901-5395)

◎도봉구공고 제2003-340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인가에 따른열람

1.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1-66호(2001. 10.15)로 공공공지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제 2002-149호(2002. 4.10)공람공고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제2002-26호(2002. 5. 6)로 실시계획인가한바 있는 도봉구 도봉동 4번지일대의 공공공지에 대하여 일부 물건에 대한 누락 및 오기 사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조성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 같은법 시행령제99조에 의거 별첨 공고문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물건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시는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기타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의 시행지 :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봉동공공공지)조성

다. 면적 또는 규모 : 일부 물건 누락 및 오기사항 정정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4.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및 소유권의 권리명세

(지상물건으로서 물건을 설치 및 경작하고 있는 소유자의 변경물건 임)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위치	물건 종류	구조	수량 (㎡)	소유자		위치	물건 종류	구조	수량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도봉동 4-4외 15필지	비닐 하우스	아연도강관/비닐	22동 (9,542)	김문곤	노원 공릉110 공릉A602-802호	도봉동 4-4외 15필지	비닐 하우스	아연도강관/비닐	14 동 (5,402)	김문곤	노원 공릉110공릉A 602-802호
		관정	2HP	6개				관정	2HP	2개		
		관정	1HP	1개				관정	2HP	4개	김석구	강북구 미아4동54-261
3	도봉동 17-1	비닐 하우스	아연도강관/비닐	4동 (1,920)	김석구	강북구 미아4동54-261	도봉동 17-1	비닐 하우스	아연도강관/비닐	6 동 (1,903)		
		관정	2HP	3개				관정	2HP	3개		

※ 상기 물건의 기 인가된 물건 변경사항 없음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아.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 901-5395)

◎은평구공고 제2003-493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에 대해 신규등록처리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처리 내역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
난방시공업제2종	은평03-27-2-42	한국설비	이순길	430309-*****	녹번동 80-8	2003.8.22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은평03-27-3-55					
난방시공업제2종	은평03-28-2-41	부산설비	이호열	540930-*****	진관외동 280-1	2003.8.22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은평03-27-2-7					
난방시공업제1종	은평03-28-1-19	우진설비	정광진외1인 (정광식)	540930-***** 620116-*****	갈현2동 509-1	2003.8.22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은평03-27-3-54					
난방시공업제2종	은평03-28-2-43	대성종합집수리	박종필	430207-*****	응암동 240-57	2003.8.22
난방시공업제2종	은평03-28-2-44	월드건설	신연식	641214-*****	응암동 616-5	2003.8.22

<p>⊙은평구공고 제2003-4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5호(2001. 6.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53호(2002. 5.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되고, 은평구고시 제2003-16호(2003. 4.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대조동 14의22 ~ 대조동 15의3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에게 보이며 관계서류는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합니다.</p>	<p>2. 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 공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보하고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8월 30일 은 평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4의22 ~ 대조동 15의3간</p> <p>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p> <p>(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사업(도로)</p> <p>(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조동 14의22 ~ 대조동 15의3간 도로개설공사</p>
--	---

다. 사업시행규모(변경없음)

○규모

- 등급 : 소로
- 류별 : 1
- 번호 : 1
- 폭원 : 10.5m
- 기능 : 국지도로
- 연장 : 69m
- 기점 : 대조동14-22
- 종점 : 대조동15-3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최초고시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5호(2001. 6.21)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변경없음) :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인가일로부터 ~2004.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

시정비과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02-350-3828)로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대조동 14의22 ~ 대조동 15의3간 도로개설공사

소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지권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대조동 14-350 (14-20에 서분할)	대	5	5	상가 부지	이운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송두동 361-104					17.8/404
					김금자	종로구 창신동 404-5					8/404
					임낙한	은평구 대조동 74-7 서안맨션403호	(주)우리은행 불광동지점	중구회현동1가203	근저당	24/404	
					추정식	은평구 역촌동 27-37				7.2/404	
					채봉순	은평구 역촌동 27-37				6.8/404	
					이창환	은평구 불광동 280-32	은평구		압류	14/404	
					오정숙	은평구 갈현동 407-30	이문일	갈현동504-6	가등기	7.2/404	
					최병택	은평구 대조동 14				6.8/404	
					김종례	은평구 대조동 14-64				14/404	
					안혜경	서대문구 홍제동 455 현대그린아파트 102-609	(주)국민은행 불광동지점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14/404	
					박형순	은평구 불광동 8-239				14/404	
					강영만	강남구 신사동 521-11, 3층	(주)국민은행 불광동지점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7.2/404	
					김영희	은평구 대조동 28-5	강완식	종로구 율내동 24-2	전세권	14/151	
					이호영	은평구 대조동 259-46				7.2/151	
					이근우	서대문구 홍제동 312-73 호텔그린빌라101호				1.7/151	
					이택우	종로구 통의동 26-2				1.7/151	
					이계화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17-209				1.7/151	
					이연우	종로구 통의동 26-2				1.7/151	
					박경흠	은평구 대조동 15-77				9.4/151	
					문이슬	은평구 녹번동 17-3				30/151	
					장영지	은평구 대조동 33-44				8.4/151	
					정규복	은평구 대조동 15-79	윤용호	은평구대조동 15-65	전세권	7.6/151	
					김옥희	은평구 대조동 74-7 서안맨션403호	(주)우리은행 불광동지점	중구회현동1가203	근저당	10/19	
					송철수	강동구 상일동121 주공아파트 367-303				11.2/151	
					한범수	은평구 대조동 59-64				12/404중2/10	
					한희숙	"				12/404중1/10	
					한상인	"				12/404중2/10	
					한상봉	"				12/404중2/10	
					한희옥	"				12/404중1/10	
					한상궁	"				12/404중2/10	
김상윤	은평구 대조동 12-28				16/404						
김춘옥	은평구 대조동 9-28				13.6/404						
권순이	은평구 대조동 9-11				8/404						
김청기	은평구 대조동 9-28				20.4/404						

소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지권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대조동 14-350	대	5	5	상가부지	박대식	서대문구 홍제동 174-1				7.7/404
					맹순옥	마포구 아현동 654-20				7.7/404
					유수지	은평구 역촌동 7-1				6/404
					오유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1				12.2/404
					민명희	은평구 대조동 35-2	(주)신영	구로구가리봉동345-54	근저당	2.56/404
					심언녕	파주군 월동면 도내리 557-1				5/404
					이대임	은평구 녹번동 151-21				5/404
					박정옥	서대문구 홍은동 394-7				5/404
					이희석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마정4리 209				5/404
					심희순	은평구 불광동 280-848				5/404
					신우현	관악구 봉천동 산81				10/404
					이상수	은평구 녹번동 121-7	송재철	대조동 88-447	가등기	20/404
					김동준	강서구 등촌동 691-3 부영아파트 107-602				10/19
최중하	은평구 녹번동 118-16				10/151					
대조동 14-22	대	189	189	상가부지	강금석	은평구 대조동 14-68				지분 1/11
				상가부지	고복순	은평구 대조동 89-251				"
				상가부지	한몽실	은평구 대조동 64-7				"
				상가부지	박영천	은평구 대조동 14-320				"
				상가부지	이중열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162-6 한솔1차아파트 103-1007				"
				상가부지	정성욱	은평구 대조동 64-7				"
				상가부지	(주)태완디앤시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12층				지분 5/11
대조동 14-352 (14-26에 서분할)	도로	15	15	도로	조주현	은평구 불광동 230-20				지분 1/14
					김형식	은평구 대조동 29-18				"
					김원호	은평구 대조동 14-101				"
					홍관현	은평구 대조동 14-24				"
					박봉석	은평구 대조동 14				"
					김천주	은평구 대조동 14-24				"
					오순모	은평구 불광동 산42-58				1/100

소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지권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대조동 14-352	도로	15	15	도로	이호영	은평구 불광동 259-46					1/100
					홍주선	은평구 역촌동 48-28					"
					김무현	은평구 대조동 14-25					"
					문이순	은평구 녹번동 17-3					"
					박경흠	은평구 대조동 15-77					"
					권봉태	은평구 녹번동 139-13					"
					오옥희	은평구 대조동 14-1					"
					김순이	은평구 진관내동 476-20					"
					이옥련	은평구 불광동 281-10					"
					임낙한	은평구 불광동 291-96					"
					이인숙	은평구 불광동 238-82					"
					이창환	은평구 불광동 280-312					"
					김상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76					"
					김청기	은평구 대조동 12-6					"
					심희순	은평구 불광동 280-848					"
					김종례	은평구 대조동 14-64					"
					신우현	관악구 봉천동 산81					"
					이상수	종로구 홍지동 30-13					"
					윤순혁	은평구 불광동 280-394					"
					김목삼	은평구 대조동 15-137					"
					송찬옥	은평구 불광동 산42					"
					김석만	은평구 불광동 238-79					"
					한수천	은평구 불광동 279-20					"
					노용식	은평구 대조동 14-29					"
					황명휴	은평구 대조동 15-84					"
					김숙영	은평구 녹번동 139-5					"
					박일동	서대문구 창천동 62-37					"
					이희석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마정4리 209					"
					채봉순	은평구 역촌동 27-37					"
					김용안	은평구 대조동 190-39					"
					최병택	은평구 대조동 14					"
					안상선	구로구 구로동 487-41	윤영섭	구로구시흥동 161-28	가등기		1/200
구중희	서대문구 대조동 26-10					1/200					
김청기	은평구 대조동 9-28					1/100					
송명임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219					"					
오정숙	은평구 불광동 369-15					"					
김상운	은평구 대조동 12-28					"					
맹순옥	마포구 아현동 654-20					"					
진교영	은평구 녹번동 105-23					"					

소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지권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대조동 14-352	도로	15	15	도로	유수지	은평구 역촌동 7-1				1/100
					안은찬	은평구 불광동 238-66				"
					조향숙	은평구 대조동 8-21				"
					이용분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3단지 308동 202호				1/14
					최중하	은평구 녹번동 118-16				2/100
					김영희	은평구 대조동 28-5				1/200
					권순이	은평구 대조동 9-11				1/100
					송춘자	은평구 응암동 39-52				1/200중 1/1400
					박인기	은평구 응암동 39-52				1/200중 3/1400
					박도순	인천시 서구 가좌동 206-9 청솔빌라 10동 304호				1/200중 1/1400
					박은영	은평구 응암동 39-52				1/200중 1/1400
					박은주	은평구 응암동 39-52				1/200중 1/1400
					박대식	서대문구 홍제동 174-1				1/100
					안혜경	서대문구 홍제동 455 현대그린아파트 102동 609호				"
김옥희	은평구 대조동 74-7 서안맨션 403호				"					
안낙한	은평구 대조동 74-7 서안맨션 403호				"					
대조동 14-31	잡종지	13	13	도로	임홍근	은평구 대조동 15-139				지분 1/10
				"	임경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2				"
				"	김대회	은평구 불광동 280-97				"
				"	이원복	은평구 녹번동 132-9				"
				"	전전일	은평구 불광동 산42-99	서대문세무서	압류	"	
				"	안수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47-74				"
				"	박영천	은평구 대조동 14-22				"
				"	(주)태완디앤시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 12층				지분 3/10
대조동 14-351	대	3	3	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14-23에서분할
대조동 14-353	대	3	3	"	"	"				14-216에서분할
대조동 14-358	대	1	1	"	"	"				14-221에서분할
대조동 14-359	대	1	1	"	"	"				14-222에서분할
대조동 14-360	대	1	1	"	"	"				14-261에서분할
대조동 14-361	대	2	2	"	"	"				14-262에서분할

소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지권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대조동 14-32	도	7	7	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14-159	대	13	13	도로	"	"				
14-207	대	7	7	점포	"	"				
14-208	대	7	7	"	"	"				
14-209	대	13	13	"	"	"				
14-212	대	7	7	"	"	"				
14-213	대	7	7	"	"	"				
14-214	대	20	20	"	"	"				
14-215	대	13	13	"	"	"				
14-354	대	6	6	"	"	"				14-217 에서관할
14-355	대	4	4	"	"	"				14-218 에서관할
14-356	대	1	1	"	"	"				14-219 에서관할
14-357	대	2	2	"	"	"				14-220 에서관할
14-362	대	2	2	"	"	"				14-346 에서관할
14-363	대	242	242	"	"	"				"
14-364	대	1	1	"	"	"				"
14-365	대	1	1	"	"	"				"
대조동 14-347	대	55	55	점포	조계현	은평구 불광동 230-20				지분 1/7
				점포	이용분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3단지 308-202				지분 1/7
				점포	김유성	은평구 대조동 29-18				지분 1/7
				점포	김영춘	송파구 가락동 11-15	조흥은행 (화정지점)	중구남대문로 1가14	근저당	지분 1/7
				점포	홍관현	은평구 대조동 14-24				지분 1/7
				점포	박봉석	은평구 대조동 14-24				지분 1/7
				점포	김종미	충남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52-6				지분 1/21
				점포	김종양	은평구 녹번동 142-86				지분 1/21
				점포	김장남	은평구 녹번동 152-76 신우빌라102호				지분 1/21
14-348	대	16	16	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14-349	대	19	19	도로	"	"				
15-3	임야	41	41	도로	"	"				

물 건 조 서

○ 공사명 : 대조동 14의22 ~ 대조동 15의3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1	대조동14-22(2호)	단층점포	목조 스레이트지붕	5.365		강금석	은평구 대조동 14-68
	대조동14-22(3호)			-			
2	대조동14-22(2호)	"	"	5.365		고복순	은평구 대조동 89-251
	대조동14-22(3호)			3.669			
3	대조동14-22(2호)	"	"	5.365		한몽실	은평구 대조동 64-7
	대조동14-22(3호)			3.669			
4	대조동14-22(2호)	"	"	5.365		박영천	은평구 대조동 14-320
	대조동14-22(3호)			3.669			
5	대조동14-22(2호)	"	"	5.365		이중열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162-6 한솔 1차아파트 103-1007
	대조동14-22(3호)			3.669			
6	대조동14-22(2호)	"	"	-		전전일	은평구 불광동 산42-99
	대조동14-22(3호)			3.669			
7	대조동14-22(2호)	"	"	5.365		정성욱	은평구 대조동 64-7
	대조동14-22(3호)			3.669			
8	대조동14-22(2호)	"	"	5.365		(주)태완디앤시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12층
	대조동14-22(3호)			3.669			
9	대조동14-22(2호)	"	"	16.095		(주)태완디앤시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12층
	대조동14-22(3호)			11.007			
10	대조동14-347	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분1/7		조계현	은평구 불광동 230-20
11				지분1/7		이용분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3단지 308-202
12				지분1/7		김유성	은평구 대조동 29-18
13				지분1/7		김영춘	송파구 가락동 11-15
				지분1/7		(주)조흥은행 근저당권	중구 남대문로2가 14 (화정지점)
14				지분1/7		홍관현	은평구 대조동 14-24
15				지분1/7		박봉석	은평구 대조동 14-24
16				지분1/21		김종미	충남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52-6
17				지분1/21		김종양	은평구 녹번동 142-86
18				지분1/21		김정남	은평구 녹번동 152-76 신우빌라102호

영업권 조서(변경없음)

○ 공사명 : 대조동 14의22 ~ 대조동 15의3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상호	용도(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대조동 14-22	영업권	-	식당업	17.69㎡	하순덕	은평구 녹번동 98-9	
2	대조동 14-22	"	-	어물전	3.43㎡	안수환	은평구 대조동 14-22	
3	대조동 14-22	"	시골 닭집	닭집	6.4㎡	박정순	은평구 대조동 3-62	
4	대조동 14-22	"	-	죽밭집	7.2㎡	신영순	은평구 불광1동 259-1	
				웃집	7.2㎡	김평자	은평구 진관외동 294-2	
5	대조동 14-22	"	-	액서사리점	5.75㎡	강금석	은평구 대조동 14-68	
6	대조동 14-22	"	-	분식점	2.57㎡	문복순	은평구 녹번동 34-14	
7	대조동 14-22	"	-	찻집	2.57㎡	박옥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7 삼환APT 306동 703호	

◎은평구공고 제2003-504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대해 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갱신) 처리 내역
 - 등록업종(등록번호)
 - 토공사업(양천-99-02-7)
 - 철근콘크리트(양천-99-10-9)
 - 상호(법인)명 : 대연토건(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64798
 - 성명 : 이준형
 - 소재지 : 은평구 신사동 336-21
 - 신고처리일 : 2003. 8.27

- 다음신고일 : 2006. 8.27부터 30일 이내)

◎마포구공고 제2003-346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03년 8월 30일
마 포 구 청 장

- 신고수리 내역
 - 상호명 : 제이엠건설산업(주)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6
 - 대표자 : 김성주
 - 신고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등록번호 : 광진-00-07-02
 - 수리일자 : 2003.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명 : 명산건설(주)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4-23 - 대표자 : 김성호 - 신고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등록번호 : 용인2000-10-0030 - 수리일자 : 2003. 8.25 - 상호명 : 백화건설(주)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288 - 대표자 : 최춘자 - 신고업종(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사업(은평-00-02-1) • 도장공사업(은평-00-05-2)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평-00-07-2) - 수리일자 : 2003. 8.25 <p>◎마포구공고 제2003-347호 전문건설업등록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처리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8월 30일 마 포 구 청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처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번호 : 마포03-01-11 - 상호 : (주)가일디자인그룹 - 대표자 : 오세일 - 소재지 : 마포구 합정동 444-11 - 법인등록번호 : 110111-2813990 - 전화번호 : 3141-4785 - 등록년월일 : 2003. 8.21 <p>◎양천구공고 제2003-339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건설업의 등록 등)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수리내역을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8월 30일 양 천 구 청 장</p> <p>○ 건설업등록 사항 주기적 신고 수리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번</th> <th style="text-align: center;">상호 (대표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유업종</th> <th style="text-align: center;">등록번호</th> <th style="text-align: center;">처리일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새복건설(주) 이나미</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월동 994-2 양천빌딩302</td> <td style="text-align: center;">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td> <td style="text-align: center;">92-서울-02-416 94-서울-10-102</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3.8.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달천산업 이진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정동 938-1</td> <td style="text-align: center;">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td> <td style="text-align: center;">동대문-99-02-12 동대문-99-10-9</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3.8.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호토건(주) 이재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월동1015-5 동래빌딩308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td> <td style="text-align: center;">송파-00-02-47 송파-00-10-5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3.8.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복설비 정연복</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2동 506-9</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양천-00-27-3-1 양천-95-28-2-44</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3.8.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일가스 이미숙</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월2동 610-10</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스시공업제2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양천-98-27-2-1</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3.8.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낙원종합설비 김종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월3동 193-14</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양천-99-28-2-9 양천-01-27-3-11</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3.8.20</td> </tr> </tbody> </table>						연번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보유업종	등록번호	처리일자	1	새복건설(주) 이나미	신월동 994-2 양천빌딩302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92-서울-02-416 94-서울-10-102	2003.8.20	2	(주)달천산업 이진성	신정동 938-1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동대문-99-02-12 동대문-99-10-9	2003.8.20	3	청호토건(주) 이재수	신월동1015-5 동래빌딩308호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송파-00-02-47 송파-00-10-50	2003.8.20	4	장복설비 정연복	목2동 506-9	가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양천-00-27-3-1 양천-95-28-2-44	2003.8.20	5	원일가스 이미숙	신월2동 610-10	가스시공업제2종	양천-98-27-2-1	2003.8.20	6	낙원종합설비 김종철	신월3동 193-14	가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양천-99-28-2-9 양천-01-27-3-11	2003.8.20
연번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보유업종	등록번호	처리일자																																										
1	새복건설(주) 이나미	신월동 994-2 양천빌딩302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92-서울-02-416 94-서울-10-102	2003.8.20																																										
2	(주)달천산업 이진성	신정동 938-1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동대문-99-02-12 동대문-99-10-9	2003.8.20																																										
3	청호토건(주) 이재수	신월동1015-5 동래빌딩308호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송파-00-02-47 송파-00-10-50	2003.8.20																																										
4	장복설비 정연복	목2동 506-9	가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양천-00-27-3-1 양천-95-28-2-44	2003.8.20																																										
5	원일가스 이미숙	신월2동 610-10	가스시공업제2종	양천-98-27-2-1	2003.8.20																																										
6	낙원종합설비 김종철	신월3동 193-14	가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양천-99-28-2-9 양천-01-27-3-11	2003.8.20																																										

◎양천구공고 제2003-343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등록 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양 천 구 청 장

○ 전문건설업 등록처리 내역

- 업체명 : 명진설비
- 업종(등록번호)
 - 난방시공업제1종(양천-03-28-1-3)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양천-03-27-3-12)
- 대표자 : 하태동
- 법인등록번호 : 560617-*****
- 영업소소재지 : 양천구 신월동 556-9
- 등록일자 : 2003. 8.22

◎양천구공고 제2003-344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등록 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양 천 구 청 장

○ 전문건설업 등록처리 내역

- 업체명 : 오림원건설조경(주)
- 업종 : 조경시설물설치
- 등록번호 : 양천-03-19-1
- 대표자 : 장무연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23181
- 영업소소재지 : 양천구 목동 625-28
- 등록일자 : 2003. 8.22

◎강서구공고 제2003-295호

건설산업기본법등위반업체에대한청문통지서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에 의거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청문기한내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1. 청문대상업체 및 청문내용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근거법령	예정된 처분
승강기공사업 강서-01-26-04	(주)진흥엘렉트릭 김재학	등촌동 696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미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2호	영업정지 6월
			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 (‘00하반기 및 ‘01 상, 하반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제1항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미장방수공사업 송파-01-03-16	(주)이림건설 소이문	화곡동 894-18	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 (‘00하반기 및 ‘01 상, 하반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제1항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2. 청문일시 : 2003. 9. 5(금) 14:00~17:00
- 3. 청문장소 : 강서구청 토목과(본관 6층 ☎ 2600-6749)

◎강서구공고 제2003-299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내역
 -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번호 : 강서-03-01-05
 - 상호 : 한국아치스판(주)
 - 대표자 : 최삼동
 - 소재지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6(☎ 3663-7161)
 - 법인등록번호 : 110111-1176571
 - 등록일 : 2003. 8.25
 - 자본금 : 340,000천원

◎강서구공고 제2003-303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를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2(2002.11. 5)호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21(2003. 7.30)호로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강서구고시 제2003-84(2003.8.11)호로 지형도면이 승인. 고시된 서남체육공원의 도시계획사업(공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서류 열람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2600-6912)에 비치하여 공

고 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원)
- 나. 사업 시행지 : 강서구 마곡동 56-1외 27필지
- 다. 사업의 규모 : 20,000㎡(약6,060.6평)
- 라. 사업의 내용 : 서남체육공원 조성
 - 문화. 체육 센터 1동(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3,914.55㎡
 - 실내 배드민턴 장 1동(12면), 연면적 2,853.59㎡
 - 기타 X-게임 장, 조깅코스, 롤러스케이팅장, 녹지 등
- 마. 시설 결정. 고시
 - 최초 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2(2002.11.5)호
 - 조성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21(2003. 7.30)호
 - 지형도면 승인 : 강서구고시 제2003-84(2003.8.11)호
- 바.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강서구 화곡동 980-16호)
- 사. 사업 기간 : 인가 일로부터 2006.12.31
- 아. 열람 기간 : 공고 일로부터 20일간
- 자.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2600-6912)
-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 붙임
- 카. 관계 도서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2600-6912)로 문의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 시행자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980-16호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서남체육공원 조성)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28필지			20,000					
1	마곡동 56-1	제방	5,455	4,804	이기철	양천구 목동 912 목동APT 525-102			
2	마곡동 55-8	답	2	2	국유지	건설교통부			
3	마곡동 56-2	유지	96	96	유용담	송파구 문정동 150 헤밀리APT 204-702			
4	마곡동 56-5	답	489	112	이기철	양천구 목동 912 목동APT 525-102			
5	마곡동 56-16	유지	873	873	업수자외1인	마포구 망원동 313-30			
6	마곡동 56-17	답	1,676	1,676	이풍선	강서구 방화동 247-198			
7	마곡동 56-18	답	1,941	1,937	유용담	송파구 문정동 150 헤밀리APT 204-702			
8	마곡동 57-1	답	856	856	강지홍	은평구 역촌동 25-112			
9	마곡동 66-2	답	5,098	730	국유지	건설교통부			
10	마곡동 67-1	답	5,049	1,610	이양순외2인	강서구 방화동 333			
11	마곡동 68-1	답	996	996	국유지	건설교통부			
12	마곡동 68-5	답	2,273	1,360	국유지	건설교통부			
13	마곡동 68-6	답	1,323	1,323	국유지	건설교통부			
14	마곡동 68-7	답	659	659	국유지	건설교통부			
15	마곡동 68-8	답	662	662	국유지	건설교통부			
16	마곡동 69-2	유지	119	119	시유지	서울특별시			
17	마곡동 69-14	답	1,507	817	시유지	서울특별시			
18	마곡동 71-3	도로	2,876	86	김동석외 19인	성동구 성수2가 532-44			
19	마곡동 407	유지	39,760	490	국유지	건설교통부			
20	마곡동 69-11	도로	148	148	시유지	서울특별시			
21	마곡동 69-4	제방	7	7	국유지	건설교통부			
22	마곡동 55-11	잡종	15	15	국유지	건설교통부			
23	마곡동 69-13	잡종	6	6	국유지	건설교통부			
24	마곡동 69-18	잡종	50	50	박원덕	강동구 고덕동 670 시영APT 3-205			
25	마곡동 69-19	잡종	33	33	박원덕	강동구 고덕동 670 시영APT 3-205			
26	마곡동 69-17	답	14	14	시유지	서울특별시			
27	마곡동 69-12	답	492	492	시유지	서울특별시			
28	마곡동 55-3	제방	366	27	국유지	건설교통부			

◎강서구공고 제2003-306호

전문건설업반납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거 전문건설업등록을 반납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 전문건설업등록 반납수리 내역
 - 상호 : 현대설비
 - 주민등록번호 : 520827-*****
 - 소재지 : 강서구 화곡동 900-25
 - 대표자 : 구자옥
 - 업종(등록번호)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강서98-27-3-88)
 - 난방시공업제1종(강서99-28-1-87)
 - 반납사유 : 자진반납(영업부진)
 - 반납수리일자 : 2003. 8.26

◎강서구공고 제2003-307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수리내역
 - 업종 : 난방시공업 제1종
 - 등록번호 : 강서99-28-1-96
 - 상호 : 대림설비공사
 - 대표자 : 김종억
 - 영업소재지 : 화곡동 376-18
 - 신고수리일 : '03. 8.25
 - 업종(등록번호)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강서98-27-3-77)
 - 난방시공업 제1종(강서99-28-1-83)
 - 상호 : 삼익건설설비
 - 대표자 : 윤성준
 - 영업소재지 : 화곡동 895-7

- 신고수리일 : '03. 8.25

◎구로구공고 제2003-62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인가를위한 공람

1. 서울시고시 제2003-244(2003. 8.25)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된 『개봉본동136번지일대 주차장조성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860-2453) 및 건설관리과(☎ 860-3109)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 구로구 개봉본동 134-8호외 14필지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사업명 : 개봉본동136번지일대 주차장 조성공사
- 다. 사업 규모 : A = 1,789㎡ → 3,790㎡ (증2,001㎡)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이해관계인의주소,성명포함) : 따로붙임

사. 공람장소 :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통행정
 (☎ 860-2453), 건설관리과(☎ 860-3109)
 로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주차장)개봉본동136번지일대 주차장 조성공사

연번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	개봉동 134-8	대	163	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34-8	이병관				
2	개봉동 134-9	대	142	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33-12	제민철	서울중구 을지로2가50	중소기업은행 (구로지점)	근저당권	
3	개봉동 134-10	대	136	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134-9	최정식		구로구 세무관리과	압류	
4	개봉동 134-11	답	96	도로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61-54 연희빌라 401	박성발	서울동대문구 신설동 76-29	성아산업 주식회사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5	개봉동 134-12	대	142	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134-12	우동찬	대구 중구 삼덕동2가5	(주)대백 상호저축은행	가압류	
							서울구로구 개봉동 131-28	개봉1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채무자 납성교 개봉동134-12
6	개봉동 134-13	대	132	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134-13	이성환	서울 구로구 개봉동 131-28	개봉1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7	개봉동 134-14	대	165	대	구로구 개봉동 134-14 강동구성내동 460-6강동주백101	권화순 (105.6/165) 오유근 (59.4/165)	강남구 역삼동 792-28 401	이용익	근저당권	권화순 지분토지

토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8	개봉동 134-15 (1층101)	대	136	대	송파구 석촌동235-6	정경일 (13.155/136)				
	(1층102)				송파구 송파동91-24 미성빌라A-301	조춘희 (32.995/136)				
	(2층201)				송파구 가락동123-24	김지훈 (46.150/136)				
	(지층비01)				은평구 역촌동 51-75	이재엽 (10.311/136)				
	(지층비02)				용산구보광동3-102	김현자 (10.521/136)				
	(지층비03)				마포구 용강동494-116	김성한 (12.014/136)				
	(지층비04)				서울시 도봉구도봉동644도봉 파크빌(아)303-1204	이옥준 (10.854/136)				
	9				개봉동 134-16	대	136	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134-16	김진선
10	개봉동 137-10 (1층101)	대	214	대	마포구 공덕동 132-3	양을배 (51.588/214)				
	(2층201)				양천구신정동 326복동신시가지 아파트 1220-1201	정재량 (54.887/214)				
	(3층3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9 302호	한해일 (54.887/214)				
	(지층101)				양천구 신월동 60-5	김용남 (27.958/214)				
	(지층102)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404-5	신봉순 (24.68/214)				

토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1	개봉동 137-11 (1층101)	대	162	대	강동구 고덕동670 시영(아)21-310	박병승 21.5/162				
	(1층102)				서초구 방배동935-6	박정기 20.3/162				
	(2층201)				경남 통영시 미수동 547-4	박원주 19.53/162				
	(2층202)				도봉구방학동735 성원(아)101-704	정금자 22.72/162				
	(3층301)				구로동 1259 구일우성(아)210-501	안현주 36.15/162				
	(지층101)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37-11 지층101	삼규환 21.5/162				
	(지층102)				관악구 봉천동1712 관악드림타운131-1703	이옥윤 20.3/162				
12	개봉동 137-12	도로	53	도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161-5	이경오				
13	개봉동 137-13 (1층101)	대	119	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1-81	장진봉 25.31/119				
	(1층102)				서울 구로구 오류동156-15 현대연립 13-202	김태선 14.35/119				
	(2층201)				서울 양천 신월동 489-10	김수경 39.68/119				
	(지층1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아)108-1201	권한금 25.31/119				
	(지층2호)				구로구 고척동164-10 문영르네상스빌라 404	전영근 14.35/119				
14	개봉동 137-14	대	60	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329 목동신시가지 (아)1408-1105	백남중				
15	개봉동 139-140	대	145	대	서울 구로구 개봉동139-140	이상숙(3/9) 윤근혜(2/9) 윤근영(2/9) 윤영웅(2/9)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면적㎡)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	개봉본동 134-8	창고	연와조평옥개위 기와지층	19.83	창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34-8	이병관				
		점포및주택	연와조평옥개위 기와1층	122	점포및주택						
		점포및주택	연와조평옥개위 기와2층	158	점포및주택						
		담장	세멘블럭 (H:1.0, L:11.7)	1식	담장						
		담장	세멘블럭 (H:1.0, L:11.7)	1식	담장						
		정화조	FRP	1식	정화조						
		대문	철재	2식	대문						
		감나무	5년생	2주	감나무						
		대추나무	10년생	1주	대추나무						
2	개봉본동 134-9	주택	연와조평 스라브지층	97	주택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33-12	제민철	서울중구 을지로2가50	중소기업은행 (구로지점)	근저당권	
		주택	연와조평 스라브1층	91	주택						
		주택	연와조평 스라브2층	91	주택						
		담장	적벽돌 (H:2.0, L:2.6)	1식	담장						
		담장	세멘블럭 (H:1.0, L:12.4)	1식	담장						
		정화조	F R P	1식	정화조						
		대문	스텐	1식	대문						
		대문	철재	1식	대문						
		포도나무	10년생	2주	포도나무						
		대추나무	10년생	1주	대추나무						
		옥탑	스라브,벽돌	16	옥탑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면적㎡)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3	개봉본동 134-10	담 장	세면블럭 (H:1.3, L:22.0)	1식	담 장	구로구 개봉동 134-9	최정식				
		담 장	적벽돌 (H:1.67, L:11.7)	1식	담 장						
		담 장	세면블럭 (H:1.0, L:9.5)	1식	담 장						
		감나무	30년 생	4주	감나무						
		사과나무	20년 생	1주	사과나무						
		단풍나무	10년 생	1주	단풍나무						
		모과나무	20년 생	1주	모과나무						
		목단	10년 생	2주	목단						
		대추나무	15년 생	2주	대추나무						
		주목	10년 생	2주	주목						
		회양목	10년 생	13주	회양목						
		사철나무	10년 생	2주	사철나무						
		연산홍	5년 생	5주	연산홍						
		목백일홍	15년 생	1주	목백일홍						
구기자	10년 생	1주	구기자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면적㎡)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4	개봉본동 134-12	점포 및 주택	연외조평 스라브지층	100	점포 및 주택	구로구 개봉동 134-12	우동찬	대구 중구 삼덕동2가5	(주)대백 상호저축은행	가압류	
		주 택	연외조평 스라브1층	88	주 택			서울구로구 개봉동131-28	개봉1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채무자 남성교 개봉동 134-12
		주 택	연외조평 스라브2층	88	주 택						
		담 장	적 벽 돌 (H:1.5, L:7)	1식	담 장						
		담 장	세멘블럭 (H:0.74, L:8.0)	1식	담 장						
		담 장	세멘블럭 (H:1.1, L:3.4)	1식	담 장						
		담 장	세멘블럭 (H:1.1, L:12.9)	1식	담 장						
		계 단	콘크리트조	2식	계 단						
		정화조	F R P	2식	정화조						
		대 문	철 재	2식	대 문						
		장독대	스 라 브	1식	장독대						
		감나무	30 년 생	1주	감나무						
		살구나무	30 년 생	1주	살구나무						
		모과나무	30 년 생	1주	모과나무						
		포도나무	10 년 생	1주	포도나무						
옥 탑	스라브,벽돌	13	옥 탑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면적㎡)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5	개봉본동 134-13	주 택	연와조평 스라브지층	87	주 택	구로구개봉동 134-13	이성환	서울 구로구 개봉동131-28	개봉1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주 택	연와조평 스라브1층	73	주 택						
		주 택	연와조평 스라브2층	73	주 택						
		담 장	적벽돌 (H:2.7, L:7.2)	1식	담 장						
		담 장	세멘블럭 (H:1.3, L:12.5)	1식	담 장						
		담 장	세멘블럭 (H:1.3, L:12.5)	1식	담 장						
		담 장	세멘블럭 (H:1.3, L:10.6)	1식	담 장						
		계 단	철근콘크리트조	2식	계 단						
		정화조	FRP	1식	정화조						
		대 문	철재	2식	대 문						
		감나무	10년생	1주	감나무						
옥 탑	스라브,벽돌	16	옥 탑								
6	개봉본동 134-14	주 택	연와조 스라브지층	64	주 택	서울시구로구 134-14	권화순	강남구역삼동 792-28 401	이용익	근저당권	
		주 택	연와조 스라브1층	64	주 택						
		주 택	연와조 스라브2층	64	주 택						
		담장	세멘블럭및연와조 (H:1.7, L:27)	1식	담장						
		계단	철근콘크리트조	1식	계 단						
		정화조	F R P	1식	정화조						
		대문	스텐새시	2식	대 문						
		대문	철 재	1식	대 문						
		화장실	스레트/벽돌	2	화장실						
		창 고	스레트/벽돌	5	창 고						
		옥 탑	스라브,벽돌	6	옥 탑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면적㎡)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개봉본동 134-14	주 택	연와조스라비층	41	주 택	서울시구로구 134-14	업체형										
		담 장	적벽돌조 (H:1.7, L:7.2)	1식	담 장												
		담 장	세멘블럭 (H:1.5, L:11.5)	1식	담 장												
		담 장	세멘블럭 (H:1.5, L:12.5)	1식	담 장												
		담 장	세멘블럭 (H:1.3, L:12.5)	1식	담 장												
		정화조	F R P	1식	정화조												
		대 문	철 재	1식	대 문												
화장실겸창고	스레트/벽돌	3	화장실겸창고														
7	개봉본동 134-15	주 택	연와조평 스라비지층 (지층비01)	70	주 택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51-75	이재엽 (16.52)	서울 노원구 하계동274 청솔(아)708-102	이충식	근저당권	채무자황수동(마포성산동450시영아24-1308)						
			연와조평 스라비지층 (지층비02)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102	김현자 (16.85)	서울 노원구 하계동274 청솔(아)708-102	이충식	근저당권	채무자황수동(마포성산동450시영아24-1308)
			연와조평 스라비지층 (지층비03)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4-116	김성환 (19.24)	서울 노원구 하계동274 청솔(아)708-102	이충식	근저당권	채무자황수동(마포성산동450시영아24-1308)
			연와조평 스라비지층 (지층비04)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44 도봉파크빌(아)303-1204	이우준 (17.39)	서울 노원구 하계동274 청솔(아)708-102	이충식	근저당권	채무자황수동(마포성산동450시영아24-1308)
		주 택	연와조평 스라비층 (1층101)	70	주 택	송파구 석촌동235-	정경일 (19.95)	서울 노원구 하계동274 청솔(아)708-102	이충식	근저당권	채무자황수동(마포성산동450시영아24-1308)						
			연와조평 스라비층 (1층102)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91-24 미성빌A301						조춘희 (50.05)	서울 노원구 하계동274 청솔(아)708-102	이충식	근저당권	채무자황수동(마포성산동450시영아24-1308)	
		주 택	연와조평 스라비2층 (2층201)	70	주 택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3-24	김지훈 (70)	서울 노원구 하계동274 청솔(아)708-102	이충식	근저당권	채무자황수동(마포성산동450시영아24-1308)						
		담 장	적 벽 돌 (H:1.5, L:9.0)	1식	담 장	공유											
		담 장	세멘벽돌 (H:1.9, L:12.0)	1식	담 장												
		담 장	세멘벽돌 (H:1.5, L:11.5)	1식	담 장												
		담 장	세멘벽돌 (H:1.5, L:12.0)	1식	담 장												
		계 단	철근콘크리트조	2식	계 단												
		정화조	F R P	1식	정화조												
대 문	철 재	2식	대 문														
화장실	스 라 브	4	화장실														
옥 탑	스라브,벽돌	14	옥 탑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면적㎡)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8	개봉본동 134-16	주 택	연외조평 스티브 지층	74	주 택	구로구 개봉동 134-16	김진선	구로구 개봉동 131-28	개봉1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건)	
		주 택	연외조평 스티브 1층	69	주 택						
		주 택	연외조평 스티브 2층	69	주 택						
		담 장	적 벽 돌 (H:1.4, L:7.7)	1식	담 장						
		담 장	세 멘 벽 돌 (H:1.6, L:12)	1식	담 장						
		담 장	세 멘 벽 돌 (H:1.57, L:10.5)	1식	담 장						
		담 장	세 멘 벽 돌 (H:1.57, L:12)	1식	담 장						
		계 단	철근 콘크리트조	2식	계 단						
		정화조	F R P	1식	정화조						
		대 문	철 재	2식	대 문						
		화장실	세멘벽돌조 스티브 계단실 아래 화장실 포함	2	화장실						
		감나무	3 년생	1주	감나무						
		줄장미	10 년생	1주	줄장미						
옥 탑	스티브 벽돌	17	옥 탑								
9	개봉본동 137-10	주 택	철근콘크리트조 평스티브 지하층101호	136	주 택	양천구 신월동 60-5	김용남 (72.24)				
			철근콘크리트조 평스티브 지하층102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04-5	신봉순 (63.76)				
		주 택	철근콘크리트조 평스티브 1층101호	142	주 택	마포구 공덕동 132-3	양을배 (142)	개봉동137-10 101호	조미경	전세권	
		주 택	철근콘크리트조 평스티브 2층201호	142	주 택	양천구신정동 326 목동신사가지 아파트 1220-1201	정재량 (142)				
		주 택	철근콘크리트조 스티브 3층301호	142	주 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9 302호	한해일 (142)				
		담 장	적 벽 돌 (H:1.1, L:10.0)	1식	담 장						
		담 장	적 벽 돌 (H:1.45, L:9.2)	1식	담 장						
		담 장	세멘벽돌 (H:1.68, L:3.7)	1식	담 장		공유				
		담 장	세멘벽돌 (H:1.35, L:11)	1식	담 장						
		정화조	F R P	4식	정화조						
		옥 탑	스티브 벽돌	23	옥 탑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면적㎡)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0	개봉본동 137-11	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사라브 지하층101호	97	주택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37-11 지하층101	심규환 (49.89)				
			철근콘크리트조평사라브 지하층102호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드림 타운131-1703	이옥윤 (47.11)				
		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사라브 1층101호	96	주택	강동구 고덕동 670 시영아파트 21-310	박병승 (49.38)				
			철근콘크리트조평사라브 1층102호			서초구 방배동 935-6	박정기 (46.62)				
		주택	연와조평사라브 2층201호	96	주택	경남 통영시 미수동 547-4	박원주 (44.35)				
			연와조평사라브 2층202호			도봉구 방학동735 성원아파트 101-704	정금자 (51.65)				
		주택	연와조평사라브 3층301호	96	주택	구로동 1259 구일우성(아) 210-501	안현주 (96)				
		담장	적벽돌 (H:1.5, L:8.0)	1식	담장	공유					
		담장	적벽돌 (H:1.54, L:2.56)	1식	담장						
		담장	세멘벽돌 (H:1.68, L:11.1)	1식	담장						
		담장	세멘벽돌 (H:1.68, L:3.7)	1식	담장						
		대문	철재	3식	대문						
		정화조	F R P	2식	정화조						
		대추나무	8년생	2주	대추나무						
포도나무	5년생	1주	포도나무								
옥탑	스라브벽돌	33	옥탑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면적㎡)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1	개봉본동 137-13	주택	연와조평 스라브지층1호	97	주택	성북구 돈암동 609-1한신(아) 108-1201	권한금 (61.89)				
			연와조평 스라브지층2호			구로구고척동164-10 문영르네상스빌라404	전영근 (35.11)				
		주택	연와조평 스라브 1층101	78	주택	서울 관악구 봉천동 41-81	장진봉 (49.77)				
			연와조평 스라브 1층102			서울 구로구 오류동156-15 현대연립13-202	김태선 (28.23)				
		주택	연와조평 스라브 2층201	78	주택	서울 양천 신월동 489-10	김수경 (78)				
		담장	적벽동 (H:1.38, L:10.0)	1식	담장	공유					
		담장	세멘벽돌 (H:1.5, L:7.5)	1식	담장						
		담장	세멘벽돌 (H:1.9, L:13.0)	1식	담장						
		담장	세멘벽돌 (H:1.46, L:7.9)	1식	담장						
		계단	콘크리트조	3식	계단						
		정화조	F R P	1식	정화조						
대문	철재	3식	대문								
옥탑	스라브,벽돌	19	옥탑								
12	개봉본동 137-14	주택	연와조 스라브지층	41	주택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신시가지 아파트1408-1105	백남중			
		주택	연와조 스라브층	41	주택						
		주택	연와조 스라브 2층	41	주택						
		담장	적벽돌 (H:0.74, L:10.0)	1식	담장						
		담장	세멘벽돌 (H:1.45, L:2.65)	1식	담장						
		담장	세멘벽돌 (H:1.45, L:12.8)	1식	담장						
		담장	세멘벽돌 (H:1.5, L:7.5)	1식	담장						
		계단	콘크리트조	1식	계단						
		정화조	F R P	1식	정화조						
		대문	철재	2식	대문						
		옥탑	스라브,벽돌	10	옥탑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면적㎡)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13	개봉동 139-140	주 택	연와조 스타브지층	16	주 택	개봉동 139-140	이상숙 윤근혜 윤근영 윤영웅				
		주 택	연와조 스타브 1층	98	주 택						
		주 택	연와조 스타브 2층	87	주 택						
		담 장	세멘벽돌 (H:1.65, L:6.85)	1식	담 장						
		담 장	세멘벽돌 (H:1.0, L:11.0)	1식	담 장						
		담 장	세멘벽돌 (H:1.57, L:12)	1식	담 장						
		계 단	철근 콘크리트조	1식	계 단						
		정화조	F R P	1식	정화조						
		대 문	철 재	1식	대 문						
		대 문	새 시	1식	대 문						
		은 행 나 무	5 년 생	1주	은 행 나 무						
		주 목		1주	주 목						
		화장실	스타브벽돌	3	화장실						

영 업 권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상호명	물건의 종 류	수량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물건지)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개봉동 134-8	그린세탁소	영업권	1식	김판석	개봉동 134-8				
2	개봉동 134-8	마에호프	영업권	1식	허영숙	개봉동 134-8				
3	개봉동 134-8	윤성분식	영업권	1식	인하순	개봉동 134-8				
4	개봉동 134-8	계룡철학관	영업권	1식	양영하	개봉동 134-8				
5	개봉동 134-12	진홍설비	영업권	1식	이재연	개봉동 134-12				

◎금천구공고 제2003-210호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금 천 구 청 장

-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수리의 연월일 : 2003. 8.26
- 등록번호 : 금천-00-29-3
- 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금천구 가산동 143-6
- 상호 : (주)한강산업개발
- 성명 : 최노성
-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수리의 연월일 : 2003. 8.26
- 등록번호 : 금천-99-12-3
- 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금천구 시흥동 984 시흥유통상가 24동 201호
- 상호 : 두성엔지니어링
- 성명 : 이용봉

◎동작구공고 제2003-376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신규등록 처리내역

- 업종(등록번호)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동작-03-27-3-69)
 - 난방시공업 제1종(동작-03-28-1-33)

- 상호 : 유진인테리어
- 대표자 : 유삼준
- 주민등록번호 : 660310-*****
- 소재지 : 신대방2동 342-10
- 등록일 : 2003. 8.26.
-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등록번호 : 동작-03-27-2-05
- 상호 : 서울도시가스고객센터 남부제 3지역관리소
- 대표자 : 마순희
- 주민등록번호 : 571204-*****
- 소재지 : 흑석1동 258-3
- 등록일 : 2003. 8.26.

◎관악구공고 제2003-356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신고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수리내역
 - 등록업종(등록번호)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관악02-27-3-3호)
 - 등록일자 : '02. 2. 7
 - 등록업종(등록번호)
 - 난방시공업제1종(관악99-28-2-91호)
 - 등록일자 : '99.12.17
 - 수리일자 : 2003. 8.19
 - 상호 : 제일기업
 - 대표자 : 이석원
 - 소재지 : 신림8동 539-17
 - 등록업종(등록번호)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관악00-27-3-111호)
 - 등록일자 : '00.10.30

- 등록업종(등록번호)
 - 난방시공업제2종(관악00-28-2-136호)
- 등록일자 : '00. 7.29
- 수리일자 : 2003. 8.19
- 상호 : 신림
- 대표자 : 한상현
- 소재지 : 봉천4동 1565-16

◎관악구공고 제2003-365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 공시송달기간 : 2003. 9. 3 ~ 2003. 9.17
까지(15일간)

○ 공시송달대상업체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위반 내용	예정된 행정처분	비고
1	(주)정우 기계	이규택	관악구 신림1동 1587-10	철물 (89-서울-11-02) 기계설비 (경기-95-12-27)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2	미성산업 토건(주)	방기영	관악구 신림본동 86-1	토공 (송파-99-02-52) 철근콘크리트 (송파-99-10-49)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3	상명 산업(주)	고광승	관악구 신림8동 518-17	철물 (관악-97-11-01)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4	원남 설비(주)	김규택	관악구 봉천7동 1660-11 풍산빌딩6층	기계설비 (97-서울-12-54)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5	쥬신 건설(주)	성세기	관악구 신림11동 1485-1	실내건축 (95-서울-01-51) 창호 (96-서울-08-25)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6	태훈 건설(주)	오종성 박유희	관악구 신림8동 538-39	토공 (송파-99-02-118) 철근콘크리트 (송파-99-10-121) 상하수도설비 (송파-99-13-30) 도장 (송파-00-05-02)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위반 내용	예정된 행정처분	비고
7	정도 건설(주)	박승만	관악구 신림5동 1417-49	기계설비 (관악-99-12-04)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8	건국 개발(주)	김영례	관악구 봉천본동 957-46	철근콘크리트 (강남-99-10-56)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9	(주)한승설비 엔지니어링	이필희 김석길	관악구 봉천10동 464-8	기계설비 (94-서울-12-114)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10	(주)스닥산업 개발	김성철	관악구 봉천4동 1572-1 진성빌딩3층	미장방수 (관악-00-03-04)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11	유창 설비(주)	김기덕	관악구 신림12동 1665-12	기계설비 (92-서울-12-293)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12	정원주택건설 (주)	이병일	관악구 봉천1동 724-8	토공 (관악-00-02-01) 철근콘크리트 (관악-00-10-02)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13	송환 건설(주)	라상호	관악구 봉천11동 1656-1	철근콘크리트 (94-서울-10-171)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14	(주)선평 건설	김영석 최옥순	관악구 남현동 1056-7	토공 (강남-99-02-87) 철근콘크리트 (강남-99-10-98)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15	청청 건설(주)	조종운	관악구 봉천1동 963-35	토공 (충북-94-02-06) 철근콘크리트 (충북-94-10-11) 비계구조물해체 (관악-98-07-04)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16	풍년 토건(주)	김종진	관악구 남현동 1056-1	토공 (강동-98-02-25) 철근콘크리트 (강동-98-10-23)	등록기준미 신고	등록말소	
17	재운 건설(주)	김태현	관악구 신림4동 463-81	토공 (92-서울-02-263) 철근콘크리트 (92-서울-10-329) 철물 (마포-98-11-07) 강구조물 (마포-98-21-01)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말소	

○ 청문일시 : 2003. 9.30(화) 10:00 관악구청
건설관리과(본관 4층)

○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지정된 청문일시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석하여도 위반사항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및제36조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담당
박은영(☎ 880-3917).

◎강남구공고 제2003-373호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수리 년월일
1	(주)아테그디자인	박윤일	강남구 청담동 132-1	실내건축공사업	강남-03-01-60	03.8.7
2	(주)에스터씨티이씨	김위섭	강남구 역삼동 809-10	기계설비공사업	강남-03-12-09	03.08.11
3	인정이엔지(주)	김임생	강남구 일원동 639-2	시설물유지관리업	강남-03-29-06	03.8.12
4	(주)루선트엔지니어링	김진오	강남구 수서동 71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강남-03-13-05 강남-03-12-10	03.8.18
5	민인테리어	황문기	강남구 삼성동 119-13	난방시공업제2종	강남03-28-02-06	03.8.18
6	주안씨앤씨(주)	인철환	강남구 일원동 666-5	도장공사업	강남-03-05-04	03.8.20
7	서강주택건설(주)	송기형	강남구 삼성동 109-18	시설물유지관리업	강남-03-29-07	“
8	토용건설(주)	윤좌중	강남구 대치동 966-5	철물공사업	강남-03-11-09	“
9	토성컨스트(주)	윤강욱	강남구 역삼동 775-17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강남-03-07-05	“
10	(주)동우이앤비	최병달	강남구 대치동 911-5	난방시공업제1종	강남03-28-01-04	“
11	(주)마야이앤씨	김정주	강남구 수서동 716	석공사업	강남-03-04-11	03.8.21
12	(주)틀스아이	권혁춘	강남구 역삼동 725-34	실내건축공사업	강남-03-01-61	“
13	(주)세형건설	윤남진	강남구 대치동 978-14	실내건축공사업	강남-03-01-62	“
14	(주)청문건설	장수년	강남구 삼성동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남-03-10-25	“
15	(주)혜영건설	이 훈	강남구 역삼동 786-20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강남-03-14-08	“

◎송파구공고 제2003-285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전문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하였기에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가. 등록일자 : 2003. 8.20

나. 전문건설업 등록발급내역

- 업종 : 창호
- 등록번호 : 송파-03-08-04
- 업체명 : (주)비디리오삼민
- 대표자 : 최영분
- 소재지 : 송파구 방이동 131-12
- 법인등록번호 : 110111-2828204

- 업종 : 실내건축
- 등록번호 : 송파-03-01-12
- 업체명 : (주)공공디자인
- 대표자 : 강홍단
- 소재지 : 송파구 가락동 17-6
- 법인등록번호 : 110111-2813718

사업소 고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3-1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허가년월일 : 2003. 8. .
-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48(여의교 북단 하류)
- 지목 : 하천
- 점용면적 : 1100㎡
- 점용목적 : 철근 조립 등 자재 야적장
- 허가기간 : 2003. 8.21 ~ 2003.10.30
- 허가받은자
 - 주소 : 영등포구 대림3동 711
 - 성명 :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3-1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허가년월일 : 2003. 8. .
- 위치 : 강서구 개화동 156-6번지
- 지목 : 하천
- 점용면적 : 15.6㎡
- 점용목적 : 가스배관망 매관에 대한 피복 보수 공사
- 허가기간 : 2003. 8.25 ~ 2003. 8.26

○ 허가받은자

- 주소 : 강서구 내발산동 119번지
- 성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

사업소 공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공고

제2003-가-18호

월드컵공원 『역새축제』 행사주관업체모집

가을철 역새의 물결로 장관을 이루는 월드컵공원의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에게 도심 가까이에서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월드컵공원 『역새축제』를 추진할 주관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 행사개요
 - 가. 행사명 : 월드컵공원 『역새축제』
 - 나. 행사일시 : 2003.10.10(금)~10.19(일), 10일간
 - 다. 행사장소 : 월드컵공원내(하늘공원 등)
2. 사업내용
 - 가. 축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연출
 - 나. 출연자 섭외, 야간개장에 따른 안전 대책
 - 다. 무대 ,하늘공원 야간조명(역새군락, 청사초롱), 전시대 등 시설물 설치 및 각종 장비 확보
 - 라. 기타 행사의 진행, 홍보(제작 및 배포)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
3. 참가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공원·문화행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역새축제 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
4. 사업설명회 개최
 - 가. 일시 : 2003. 9. 5(금) 14:00
 - 나. 장소 : 서울시특별시 월드컵공원관

리사무소 2층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49번지)

5. 제안서 제출
 - 가. 기한 : 2003. 9.15(월) 18:00까지
 - 나. 장소 : 서울특별시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2층 회의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회 시 알려드립니다.
6. 주관업체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가. 제안서 제출업체의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비교하여 기획의 우수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우수업체 선정
 - 나.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 300-553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03-33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행정처분

소방법 제65조의4 동법 제65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97조[별표16] 제2호 바목 (10)(다) 규정에 의거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

- 상호 : (주)하영건축 사사무소
- 영업소재지 : 동대문구 장안동 415-10
- 대표자 : 설진섭
- 주민등록번호 : 391226-*****
- 등록의 종류 : 소방공사감리업 2급 기계, 전기
-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 제 서울 동대문 '99-2호 (1999. 7.14)

- 행정처분 종류 및 기간 : 영업정지 3월 (2003. 9. 5 ~ 2003.12. 3)
- 사유 : 소방시설감리소홀
- 적용법규 : 소방법 제65조의 4 동법 제65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97조[별표16] 제2호 바목(10) (다)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03-34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행정처분

소방법 제65조의4 동법 제65조의9 동법시행규칙 제97조[별표16] 제2호 바목 (10) (다) 규정에 의거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

- 상호 : 현대소방감리공사
- 영업소재지 : 동대문구 용두동 144-60
- 대표자 : 이상호
- 주민등록번호 : 771127-*****
- 등록의 종류 : 소방공사감리업 2급 기계, 전기
-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 제 서울 동대문 '95-269호 (1995.12.27)
- 행정처분 종류 및 기간 : 영업정지 3월 (2003. 9. 5 ~ 2003.12. 3)
- 사유 : 소방시설 감리소홀
- 적용법규 : 소방법 제65조의 4 동법 제65조의9 동법시행규칙 제97조[별표16] 제2호 바목(10) (다)

⊙노원소방서공고 제2003-2호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신규등록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을 신규 등록하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바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노 원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서울노원 2003-1호
- 업종 : 소방시설설계업
- 등급 및 분야 : 2급
- 상호 : 월드기술단
- 대표자 : 송순호
- 주민등록번호 : 750522-*****
- 영업소재지 : 노원구 공릉동653-5
- 등록일자 : 2003. 8.26.
- 등록번호 : 제서울노원 2003-2호
- 업종 : 소방공사감리업
- 등급 및 분야 : 2급
- 상호 : 월드기술단
- 대표자 : 송순호
- 주민등록번호 : 750522-*****
- 영업소재지 : 노원구 공릉동653-5
- 등록일자 : 2003. 8.26.

⊙강남소방서공고 제2003-31호

소방시설설계업신규등록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바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남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서울강남 2003-19호
- 업종(등급및분야) : 소방시설설계업(2급전기)
- 상호 : (주)기술사사무소세부엔지니어링
- 대표자 : 박종운

- 주민등록번호 : 481020-*****
- 영업소재지 : 강남구 대치동 910-15
- 등록일자 : 2003. 8.26.

◎송파소방서공고 제2003-51호

소방시설설계업체행정처분

소방법 제65조의4제1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송 파 소 방 서 장

- 상호 : (주)선화기술단사무소
- 영업소재지 : 송파구 잠실동 185-5
- 대표자 : 전임수
- 업종 : 소방시설설계업2급(전기·기계)
- 등록번호 : 제서울송파 1995-182호
- 등록일자 : 1995. 7. 5
- 처분의종류 : 영업정지 3월
- 처분기한 : 2003. 8.30 ~ 2003.11.29
- 행정처분사유 : 소방시설설계 부적정
- 적용법규 : 소방법 제65조의4제1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별표16]제2호바목10(다)

◎송파소방서공고 제2003-52호

소방공사감리업체행정처분

소방법 제65조의4제1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송 파 소 방 서 장

- 상호 : (주)무림설계기술단
- 영업소재지 : 송파구 석촌동 183-3
- 대표자 : 이진복
- 업종 : 감리업 2급(전기) 및 감리업 2급(기계)

- 등록번호 : 제서울송파 제95-5 및 95-183호
- 등록일자 : (1995. 1.14) / (1995. 7. 5)
- 처분의종류(처분기한) : 영업정지 3월 (2003. 8.30 ~2003.11.29)
- 행정처분사유 : 소방공사감리 부적정
- 적용법규 : 소방법 제65조의4제1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별표16]제2호바목10(다)

◎강동소방서공고 제2003-8호

소방시설설계업(영업정지)

소방법 제65조의 4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 [별표16] 제2호바목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61조 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30일

강 동 소 방 서 장

- 상호 : 엘림컨설팅트
- 소재지 : 성내동 556-4
- 대표자 : 어우년(661222-*****)
- 업종 : 소방시설설계업(기계2급)
- 등록현황 : 제서울강동 2000-2호(2000. 4. 7)
- 위반사유 : 명일동 48-5 유흥주점(위커힐) 【설계부적정】
- 조치 : 영업정지 1.5월(2003. 9. 1~10.15)
- 관련법규 : 소방법 제65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 [별표16] 2-바-(10)-(다)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 문서번호 : 자재58442-3864
- 제 목 :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 1. 우리사업소에서 보유중인 굴삭기 부속 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하오니 희망하는 관서에서는 2003.9.05일까지 관리전환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 2. 위 기일내에 관리전환 신청이 없을 시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하겠습니다.
2003년 8월 30일
수도자재사업소장
- 관리전환소요조회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취득금액(원)	물품상태	취득년월일	비 고
브레카	굴삭기MX8W용	1대	13,090,000	중고품	99.08.03	
클램프(링크)	굴삭기MX8W용	1대	2,090,000	중고품	99.08.03	
버게트	굴삭기MX8W용	1대	1,540,000	중고품	99.08.03	

기 타

◎2003년도 상반기 공무원제안 · 시민창안 심사결과

2003년도 상반기 공무원제안 · 시민창안 심사결과 채택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0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제안제목 및 내용	제안자			채택등급 (상금)
	소속	직급	성명	
건설공사 자료작성 기준설정 제안 - 공사관련 작성하는 자료중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할 항목을 세분화·표준화하여 기준설정	건설안전본부 건설1부	토목6급	이덕기 (주제안자)	동상 (200만원)
		토목5급	이용대 (부제안자)	

※ 시민창안 채택내역 없음.